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김윤영**

##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1. 연구의 범위 .....	11
2. 연구의 방법 .....	14
제2장 북한 수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	19
제1절 북한 법의 본질과 기능 .....	19
1. 북한 법의 본질 .....	19
2. 북한 법의 기능 .....	20
제2절 수사의 개념과 형사절차상의 원칙 .....	21
1. 북한 수사의 개념 및 성격 .....	21
가. 수사의 개념 .....	21
나. 수사의 성격 .....	24
2. 북한의 형사절차상의 원칙 .....	29
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관철 .....	29
나. 과학성·객관성·신중성·공정성의 보장원칙 .....	31
다. 인권보장과 범죄예방 원칙 .....	31
라. 조선어 사용과 법 준수의 원칙 .....	32
제3절 수사제도의 유형 .....	33
1.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수사제도 .....	33
가. 대륙법계 .....	33
나. 영미법계 .....	36
다. 혼합형 .....	39
2. 사회주의 법계의 수사제도 .....	40
가. 러시아 연방 .....	41

나. 중국 .....	44
다. 북한 .....	47
제3장 북한의 수사기관과 형사사건 관할 .....	49
제1절 수사기관 .....	49
1. 수사기관의 의의 .....	49
2. 수사기관의 종류 .....	50
가. 인민보안성 .....	50
나. 국가안전보위부 .....	56
다.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	58
라. 검찰소 .....	61
제2절 형사사건의 관할 .....	63
1. 수사의 관할 .....	65
가. 일반수사 .....	65
나. 특별수사 .....	66
2. 예심의 관할 .....	66
가. 일반예심 .....	66
나. 특별예심 .....	67
제4장 북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절차 .....	68
제1절 수사원의 임무와 수사절차 .....	70
1. 수사원의 임무 .....	70
2. 수사의 절차 .....	71
가. 수사의 시작 .....	71
나. 수사의 실행 .....	76
다. 수사의 종결 .....	83
라. 검사의 수사감시 .....	84
제2절 예심원의 임무와 예심절차 .....	85
1. 예심원의 임무 .....	85
2. 예심의 절차 .....	86
가. 예심의 시작 .....	86
나. 예심의 실행 .....	91

다. 예심종결 .....	116
라. 검사의 예심감시 .....	118
제5장 북한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 .....	119
제1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 .....	119
1. 수령 교시와 당 정책 관철 .....	119
가. 수령교시에 기초한 노동당의 최고 법규성 .....	119
나. 검찰의 사법감시를 통한 당 정책 관철 .....	120
2. 형사처리의 모호성 .....	122
가. 수사기관 및 심판기관과의 관계 불분명 .....	122
나. 사회적 교양처분 처리 담당 기능의 불분명 .....	123
제2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	124
1. 수사예심의 절차상 문제 .....	124
가. 자백위주의 수사 .....	125
나. 구속체포의 용이성 .....	126
다. 구속체포의 장기화 .....	127
라. 구금시설 .....	128
마.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미채택 .....	131
2. 기타 형사사법제도상 문제 .....	133
가.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	133
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법률가 참여 .....	140
다. 형식적인 변호인 제도 .....	140
제6장 결 론 .....	145
1. 요약 .....	145
2. 정책적 과제 .....	148
<b>【참고 문헌】</b> .....	154
<b>【부    록】</b> .....	161

## 표 목차

<표 3-1> 인민보안성 형사처리 관련부서의 업무와 편제 .....	52
<표 3-2> 보안서의 부서별 담당 업무 .....	53
<표 3-3> 북한경찰의 계급구조 .....	54
<표 3-4> 북한경찰의 인원규모 .....	54
<표 3-5>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	55
<표 3-6> 시·군·구역 보안서 편제 .....	55
<표 3-7> 북한의 사법기관 .....	61
<표 3-8> 형사처리 담당 관할 .....	64
<표 3-9> 수사 및 예심 기관과 관할 사건 .....	64
<표 4-1> 신·구 형사소송법상 예심기간 .....	90
<표 4-2> 감정과 검증의 비교 .....	104
<표 4-3> 형사사법처리 중 구류 기간 .....	108
<표 5-1> 수사 받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습니까? .....	126
<표 5-2> 수사를 받았다면 누가 수사를 받았습니까? .....	127
<표 5-3> 체포, 구속 수사하였습니까? .....	127
<표 5-4>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	130
<표 5-5>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쳤습니까? .....	131
<표 5-6> 체포·구속될 때 구속결정서(영장) 등을 제시받았습니까? .....	132
<표 5-7> 체포, 구속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통지해 주었습니까? .....	132
<표 5-8> 귀하는 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습니까? .....	134
<표 5-9> 현지공개재판(공개처형이 아니라 재판부가 현장에 나와 주민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	134
<표 5-10> 현지공개재판은 1회적으로 종결되었습니까? .....	135
<표 5-11> 범죄자가 공개처형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35
<표 5-12> 공개처형이 있을 때,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을 처형장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	136

<표 5-13>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143

<표 5-14> 귀하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까? ..... 143

<표 5-15> 재판소가 귀하를 위해 무료변호사를 선정해주었습니까? ..... 143

<표 5-16> 변호사는 귀를 직접 면담하였습니까? ..... 144

<표 5-17> 재판시 변호사는 귀하의 편에서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귀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까? ..... 144

## 그림 목차

<그림 1-1> 북한 형사소송 체계 및 미국 여기자들의 혐의 ..... 5

<그림 1-2> 북한의 법전과 해설서 ..... 13

<그림 4-1> 신고서 예문 ..... 73

<그림 4-2> 신고조서 예문 ..... 74

<그림 4-3> 범죄혐의자체포통지서 예문 ..... 83

<그림 4-4> 신고조사결과를 알림에 대하여 예문 ..... 83

<그림 4-5> 예심시작결정서 예문 ..... 87

<그림 4-6> 형사책임추궁결정서예문 ..... 88

<그림 4-7> 형사사건 제기결정서 예문 ..... 88

<그림 4-8> 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 예문 ..... 109

<그림 4-9> 수색결정서 예문 ..... 112

<그림 4-10> 수색결정서(증거물) 예문 ..... 113

<그림 4-11> 수색조서 예문 ..... 114

<그림 4-12> 예심종결조서 예문 ..... 118

<그림 5-1> 북한의 공개재판 판결문 ..... 137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 1. 연구의 목적

제2차 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베트남, 예멘, 독일 등은 통일되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이념적 대립 하에 각기 다른 체제가 지향하는 제도와 이질문화를 형성하여 왔다.<sup>1)</sup>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이은 체제전환으로 냉전이 종식되자, 남북한 관계의 흐름 역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등의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동반자<sup>2)</sup> 관계로 발전하여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으나, 긴장과 전쟁의 상처를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라는 긴장 국면에 놓여 있기도 하다. 즉, 그동안 남북한 관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제정,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9.17), 남북정상회담(2000),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지구의 개발 등 남북한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위기관리<sup>3)</sup> 작동과정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 김윤영: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문학박사)

1)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 1면.

2)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공동선언'은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공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북한은 동서간의 냉전구조 틀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상호 지원과 의존으로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왔으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1994) 그리고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아사자(餓死者) 발생 등으로 위기국면이 조성되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면).

(1993.3.12)과 핵사찰 거부, 핵동결 해제와 핵시설의 재가동 선언(2002.12),<sup>4)</sup>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선언(2005)<sup>5)</sup>과 미사일 발사(2006.7.5), 핵실험 공식선언(2006.10.3)<sup>6)</sup>과 핵실험(2006.10.9)을 강행하였으며, 지난해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대남비방의 강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출입 제재, 탄도미사일 발사(광명성 2호, 2009.4.5)에 따른 6자회담 불응과 핵 프로그램 재가동 선언,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 선언(2009.5.15),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sup>7)</sup> 등의 일련의 조치로 긴장국면을 조성시키고 있다.<sup>8)</sup> 이러한 상태에서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즉, 오늘날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자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sup>9)</sup>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서로간의 이질성 감소와 동질성 확대라는 노력과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남북통합에 대비한 연구는 사회·문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함께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sup>10)</sup> 이 같은 연구는 향후 남북통합 전후 과정에서 발

- 
- 4)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배제한 가운데 북미간의 포괄적인 제네바 ‘핵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 5)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005년 2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를 전면 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전제하에 ① “미국이 핵 위협을 통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 ②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다.” ③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과방지구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 6) 북한 외무성은 2006년 10월 3일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 7)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오전 9시 54분께 풍계리 실험장에서 최대 20kt(1kt는 TNT 폭약 1천t의 폭발력) 규모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25일 오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1kt)의 20배로 추정되고 있다.
- 8)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착수한 김정일은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적 압력에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위기국면을 조성시키고 있다.
- 9) 김정일은 권력을 승계한 후 나름대로 북한사회를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대내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주체사상학습 강화’ 등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토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난과 국제적인 고립을 해결하고자 부분적인 개혁·개방과 전 방위 외교정책 등을 추진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면).

생활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통합의 최종인 완성도가 법률과 제도의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수사기관과 관련한 연구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북한사회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수사기관의 운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건이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자료접근이 어렵고, 수사제도와 관련한 형사법 운용 역시 남한과 상이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남한은 최고 법 규범인 헌법을 중심으로 하위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교시와 노동당 규약과 명령이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어 형사법을 비롯한 일반 법률들은 하위규범으로 작동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4차 개정(1992)을 통하여 전근대적인 요소를 많이 삭제하는 등 외형상 인권보장을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8차 개정(1999.9.2)에서는 예심원이 작성하던 기소장을 검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2심 재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심제도, 재판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법의 특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따른 당의 형사법정책이 설정된 후, 수사제도는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에 머물고 있다.<sup>11)</sup> 즉, 북한 수사기관의 주된 역할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10) 북한의 법·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서울: 박영사, 1975); 법무부, 『북한법연구(II)』(서울: 법무부, 1985); 법제처, 『북한법개요』(서울: 법제처, 1991);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형사관계법-』(서울: 법무부, 1993);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법무부, 『개정 북한형법 해설자료』(서울: 법무부, 2002);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서울: 법무부, 2004);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서울: 법무부, 2005);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서울: 집문당, 2004); 김수암, 『북한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장명봉(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통일부, 『북한법을 보는 방법』(서울: 통일부, 2006) 등이 있다.

11) 북한 형법학자 김근식은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적 근로자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데, 이것을 전복하려는 계급적 원수들의 반혁명적 책동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파탄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혁명적 요소들을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진압함으로써 형법은 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김근식, 『형법학(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면)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형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

에 해를 끼치는 온갖 범죄적 현상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고, 조사 확정한 범죄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다스리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이며 선차적 과업인 김정일체제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당 정책을 법적으로 옹호하는데 있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형사법을 ‘당의 선군정치 실현을 담보해주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sup>13)</sup>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위력한 수단’으로 설명한다.<sup>14)</sup>

최근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1999년 금강산관광객 민 모씨의 강제 억류된 사건,<sup>15)</sup> 2001년 금강산 관광객 한 모씨에 대한 북측당국의 조사사건,<sup>16)</sup> 2005년 금강산관광지구 내 음주운전 사건,<sup>17)</sup>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2008.7.11)에 이어서, 지난 3월 현대아산

과 반국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전자는 엄중한 형벌을 통한 진압, 후자는 법적체제를 통한 교양개조하는 형사처분을 한다.

12)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371면

13)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마감한 김정일 체제는 군사우선주의인 선군정치라는 통치방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기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다.

14)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학보)』 제52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60면.

15) 1999년 6월 20일 금강산관광객 민모씨가 북측 환경감시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남한에서 귀순자를 바로 잡아서 죽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용씨, 전철우씨, 신영희씨 등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자들이 모두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이 나면 당신도 한번 내려와 보면 알 것 아니냐”고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달러를 지불한 후, 다시 강제 억류되어 5일간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민모씨는 5일간 억류되었다가 당국의 노력으로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귀순공작을 했다”는 내용의 북측이 제시한 사죄문 초안을 베껴서 제출한 후 남한으로 신병이 인계되었다(<동아일보>, 1999년 6월 22일자).

16) 2001년 1월 4일 금강산 관광객 한모씨가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핸드폰을 내보이며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북한이 못하는 것은 김정일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하여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전향 안내소에 끌려가 10시간가량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사죄문을 쓴 뒤 풀려난 사건이다(<한국경제>, 2001년 1월 6일자).

17) 2005년 12월 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인 정모씨가 강원도 고성군 운정리 해금강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치는 사고를 내 이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후 정씨의 신병은 북한 당국에 45일간 억류되었으며, 손해배상 협력 대상자인 현대아산 측이 북측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요구한 100만 달러보다 적은 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 남측으로 인계되었다(<동아닷컴>, 2006년 1월 17일자).

직원(유성진)과<sup>18)</sup>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sup>19)</sup>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그림 1-1> 북한 형사소송 체계 및 미국 여기자들의 혐의



이후 2008년 8월 말까 지 북한지역에서 모두 22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산업재해가 179건(80%), 교통사고 32건(14.3%), 형사사건 11건(4.9%)의 순으로 나타났다.<sup>20)</sup> 이러한 사건. 사고가 북한 체제와 사상의 특수성과 형사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이 사소한 잘못된 빌미를 제공하여 북한의 수사당

18) 유성진 억류사태와 관련하여 북한 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유OO은 개성공업 지구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있다. ... (중략) ... 우리의 법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 인민이 생명으로 여기는 존엄과 주권을 유린 하는데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중앙통신》, 2009.5.1). 그리고 북한당국이 지난 3월 30일 통지문으로 주장한데로 현대아산 직원의 혐의가 ‘체제 비방과 함께 북한 여성 근로자를 유인해 탈북을 기도한 것’이 사실일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동아일보》, 2009년 3월 31일).

19)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커런트 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2009년 3월 북·중 국경지역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중 북한군에 체포된 뒤 5월 30일 현재까지 억류상태에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8일 북한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2명에게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하여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 <동아일보>, 2009년 3월 31일자; 대검찰청公安부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생한 폭력,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은 2004년 2건, 2005년 4건, 2006년 6월 현재 2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국민일보》, 2006년 7월 3일자).

국에 체포되어 억류된 사건이라고 할 때,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가 증가하면 할수록 유사한 사건·사고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북자 스스로의 신변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북한의 형사법과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는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북한 수사제도의 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 배경은 향후 남북통합시 형사법 분야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제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고찰하는데도 있지만,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방북자들의 잘못된 사소한 언행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간 수사기관의 공조는 물론 통일단계에서 수사기관 통합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 운용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의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분단국가들의 통일,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와 전문가들의 관심부족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러한 연구조차도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형사법을 중심으로 형법상 범죄와 형벌절차 및 남북한의 법제도를 비교·고찰하거나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법제도의 특징과 허구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유일체제의 안정을 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체를 위한 희생’, ‘끝없는 혁명적 투쟁심’을 공산주의의 ‘덕목’으로 강조하며, 외형상 아무런 모순 없는 사회모습을 부각시키면서,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사회주의 체제’로 선전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sup>21)</sup>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폐쇄적인 통제사회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할 할 수 없어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운용이나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다양한 직업을 보유했던 탈북자들의<sup>22)</sup> 국내입국이 급증하자, 그들의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여 출판하는 등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연구 성과를 대체적으로 북한 형법상 범죄와 형벌절차, 형사법제도, 수사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형법상 범죄와 형벌절차와 관련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운영의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sup>23)</sup>와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sup>24)</sup> 김수암의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sup>25)</sup> 등이 있다. 김운영은 북한의 범죄양상과 북한의 범죄대책을 고찰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북한의 각종 문헌자료 및 탈북자수기와 탈북자 실태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수사기관인 인민보안성(경찰), 검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성 등을 고찰하면서 수사제도를 비롯하여 인민보안기관(경찰)의 범죄대응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김수암은 북

21) 북한의 종래 주장에 따르면 사회일탈행위는 소수의 반동계급이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미풍’이 꽃피어 나고 ‘혁명적 의리’로 일심단결된 ‘사회주의 대가정’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361-362면).

22)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이주한 자들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들의 호칭에 대해 정부당국은 ‘새터민’이나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하고 있고, 또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탈북자’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탈북자라는 의미는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하였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자들을 통칭한 광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주민에 한정하고자 한다.

23) 김운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24) 김운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 제15호, 용인: 경찰대학, 2007).

25)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한의 범죄자 형사처리 실태에 대한 탈북자들의 심층적인 인터뷰자료와 수기, 실태보고서 등 각종 문헌자료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연구가 법학자들에 의한 법제도 분석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익수의 “북한형법의 반혁명적 범죄와 남한의 국가 보안법상의 규정과의 비교고찰”,<sup>26)</sup> 이덕구의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sup>27)</sup> 전현준의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sup>28)</sup> 등이 있는데, 전현준은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기능을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일탈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형법상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다.

둘째, 북한의 형사법 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법무부의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북한법연구(VII)』-신형법-,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sup>29)</sup> 법원행정처의 『북한사법제도 개관』 및 『북한의 형사법』,<sup>30)</sup> 북한연구소의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sup>31)</sup> 장명봉의 『북한법연구』,<sup>32)</sup> 북한법연구회의 『북한법연구』<sup>33)</sup>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단행본이나 학술지 등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성과물로 출간되고 있으나, 북한의 수사제도 실태를 직접 다루고 있기 보다는 형법이나 형사소

26) 尹益洙, “北韓刑法의 反革命的 犯罪와 南韓의 國家 保安法상의 規定과의 比較考察”(『東北亞研究論叢』, 강릉: 關東大學校 東北亞平和研究所, 1995).

27) 이덕구,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인천: 仁川大學校 平和統一研究所, 2001).

28)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29) 법무부의 연구서로는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서울: 법무부, 2004.7),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서울: 법무부, 1996), 『북한법연구(VII)』-신형법- (법무자료 제128집, 서울: 법무부, 1990),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서울: 법무부, 1993) 등이 있다.

30) 법원행정처의 연구서로는 『북한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과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등이 있다.

31)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서울: 북한연구소, 1992).

32) 장명봉, 『북한법연구』 제11호(서울: 북한법연구회, 2007.11).

33)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송법을 중심으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북한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을 보면 김일수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sup>34)</sup> 김태석의 “북한법의 본질과 역할”,<sup>35)</sup> 정찬성의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sup>36)</sup> 박세진의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sup>37)</sup> 장명봉의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sup>38)</sup> 김재윤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sup>39)</sup> 한인섭의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sup>40)</sup>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 역시 북한의 북한 형사법의 개정과정 평가와 전망 등을 기술한 가운데, 정치범의 위법행위 처리절차와 실태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처리 절차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의 수사기관의 수사제도 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형사법상 수사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김윤영의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김수암의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법원행정처의 『북한의 형사법』,<sup>41)</sup> 송영조의 “북한 수사제도 연구”<sup>42)</sup> 등이 있다.

김윤영은 북한의 범죄실상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와 관련하여 비교적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수암 역시 형법상 위법행위 처리 절차를 분석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처벌실태를 탈북자의 인터뷰를 통해 보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34) 김일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1989).

35) 김태석, “북한법의 본질과 역할”(『법학연구』 제17집, 서울: 정문사, 2004).

36) 정찬성,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논문, 1999.

37) 박세진,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2004.

38)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39)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제4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형법을 중심으로-”(『비교형사법연구』, 서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40) 韓寅燮,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41)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42) 송영조, “북한 수사제도 연구”, 북한대학원대학 석사논문, 2006.12.

한 연구들은 북한의 수사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보다는 위법행위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이나 수사제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제도의 운용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북한의 형사법』 제3편 “북한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관계자”에서 수사 및 예심 담당기관과 역할, 기소담당관, ‘피심자(피의자)’<sup>43)</sup>와 ‘피소자(피고인)’<sup>44)</sup>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망라하여 비교적 세부적으로 다루었고, 송영조는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인터뷰와 필자의 인지된 경험 등을 기초로 북한의 수사제도를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기존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 나름대로 가용한 자료를 수집하고 탈북자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연구서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북한의 수사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북한의 형사법제상 위법행위 처리 절차 및 실태 등과 탈북자들의 인터뷰,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성과와 더불어 북한의 수사기관의 수사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료접

43) 피심자는 공소제기 전에 예심단계에서 예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즉,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한다. 한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예심절차가 없다. 피심자란 개념은 북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용어사전(Ⅱ) -형사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9, 155면).

44) 피소자는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공소가 제기된 자로서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해당한다. 즉, 피소자는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수사관의 수사대상인 ‘혐의자’ 및 예심단계에 있는 피심자와 구별된다. 북한에서의 피소자는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증거방법 및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피소자는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의 객체가 된다(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393-394면). 북한 형사소송법은 피소자에 대하여 재판준비절차에서 당해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3일전에 기소장등본을 피소자에게 송부하며 재판심리 날짜를 통보해야 하고, 피소자는 재판 조서상 누락된 부분이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서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때에는 관정으로 조서를 고치도록 하고, 피소자는 재판소 구성원 중 배제의 사유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심리가 끝나기 전에 증인이 퇴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심리가 끝난 후 재판소 심리에 더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심리 종료 후 변론을 하고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Ⅰ) -기초 및 헌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12, 255면).

근의 한계성이라는 이유로 초기 연구자의 자료를 재인용하고, 탈북자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 대상에 대한 범위나 성과들 역시 서로 중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통합의 완성도가 법·제도의 통합이 완성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북중인 남한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운운하며 수사당국에서 체포하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할 때,<sup>45)</sup>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수사공조는 물론 통일단계에서 수사기관 통합문제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미시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물론, 연구진행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는 한편, 그 한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남북분단 이후 북한당국은 인민보안성(경찰), 검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등 정권 보위기관과 관련된 자료들은 보안유지 측면에서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한다 하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차원에서 비밀로<sup>46)</sup> 분류하여

45) 북한은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북중인 우리국민을 납치·억류하는 사태를 빈발하게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46) 북한문서의 비밀등급은 ‘극비’(Ⅰ급), ‘절대비밀’(Ⅱ급), ‘비밀’(Ⅲ급), ‘기관내에 한함’(대외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극비는 국장급이상, 절대비밀·비밀·기관내 한함은 부원급 이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각의 성·위원회·중앙기관 등은 통상 기밀문건의 내용에 따라 정책국과 행정국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정책국은 주로 김일성교시나 김정일 말씀 및 당의 방침·지시·결정문 등 정책적 기밀문건을 보관·관리하고, 행정국은 교시·말씀 및 당의 방침·결정·지시에 따라 생산한 문서 등 행정기밀 문건을 보관·관리한다. 기밀문서의 보관·관리에 대한 검열은 주로 휴일 직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관리 소홀의 경우는 총화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북한 내각인민

극단적인 보안조치를 유지하는데, 심지어 북한 법전이나 그와 관련된 해설서조차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북한의 수사기관에 대한 연구는 특정 기관들이 첩보나 정보차원에서 일일이 입수한 개별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왔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sup>47)</sup>을 공식적으로 출판하여 공개함으로써, 이 법전은 국내 연구자들의 주요 텍스트로 자리매김 되었다.

북한의 수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형사 기본법에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있다. 이외에 북한의 노동당규약, 헌법, 사회안전단속법, 기밀법, 재판소구성법, 판결·판정집행법, 검찰감시법, 형민사감정법, 변호사법도 형사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는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정령·결정·명령·지시 등 다양한 형태의 법규가 있는데, 이중 수사제도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가운데 형사법제와 관련된 내용, 행형(行刑)이나 형사정책도 형사법제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sup>48)</sup>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수사절차에 대한 연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고찰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들의 입국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 직종에 종사했던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첩보나 정황 수준의 자료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형사 기본법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sup>49)</sup>,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학보)』<sup>50)</sup>, 『김정일 선집』 등을 주요 텍스트(text)로 사용할 것이다. 이외에 형사법과 관련된 개별법들인 「조선민주주의

위원회 등은 기밀문건 수발기구인 ‘2부’를 두고 국가기관간 기밀문건 수신과 발신, 공적, 사적 출장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수행한다.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4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5면.

49) 미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출판사 미상, 2004.6.29).

50)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학보)』 제52권 제2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lt;그림 1-2&gt; 북한의 법전과 해설서



에 다른 자료들을 충분히 입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단순한 추론에 거치는 경우도 있고, 북한 원전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다소 생소하거나 어색한 어구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남한의 형사절차에서 ‘혐의자(피내사자)⇒피의자⇒피고인’이 북한에서는 ‘혐의자⇒피심자⇒피소자’<sup>51)</sup>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형사법은 1950년 채택된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형사법과 관련된 수사기관인 인민보안성, 검찰소, 국가안전보위부는 창설된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서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가운데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이렇게 북한정권과 함께 개정되고 변천되어 온 형사법과 수사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시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자료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자료접근이 가능한 2000년 이후 형사법과 관련한 수사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접근이 가능하거나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의 자료도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51)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 184면.

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 속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변호사법」, 탈북자들의 인터뷰 자료 등을 보조 텍스트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북한의 법전이나 일부 원전 외

## 2. 연구의 방법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의 한계성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연구자가 북한지역에 들어가서 보고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현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경직된 통제 하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기란 불가능하다.<sup>52)</sup> 이러한 연구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sup>53)</sup>

그동안 학자들은 북한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대체로 외재적 혹은 내재적 접근방법을<sup>54)</sup> 사용하여 왔다. 전자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북한체제의 실상을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부정적 측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후자의 경

52) 류길재, “김일성·김정일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46-47면.

53)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8면.

54) ‘내재적비판적 접근방법’은 독일의 루츠(P.C. Ludz), 비이메(하이델베르크대학 정치학교수 Klaus von Beyme), 송두율 등에 의해서 연구 적용되었다.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방법’(internal approach)은 송두율에 의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서울: 한길사, 104-116면). 이 이론은 서구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이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해 내려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송두율은 이러한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 비판하여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 비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4-25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접근’ 방법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옹호하거나 현재 북한사회의 비민주적 현상 등은 접어둔 채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즉,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송두율의 ‘내재적’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강정인은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역사비평』, 1994년 가을호, 318-342면)라는 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송두율은 “분단현실의 인식론적 접근”(『창작과 비평』, 1995년 봄호)과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역사비평』, 1995년) 등으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송두율,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도서출판 당대, 1995, 251-262면 참조);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연구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수원대학사학위논문, 2003, 13면.

우는 전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방법으로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사회의 각종 현상을 북한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의 북한 연구자들 중에는 내외 재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양태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sup>55)</sup>

따라서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의 형사법에 기술된 수사절차에 대한 해석학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사제도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형사법에 반영된 수사절차에 대한 북한적인 요소나 현상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기 보다는 북한을 이해하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객관적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을<sup>56)</sup>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수사·예심절차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더불어 수령체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형사법의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의 수사절차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북한사회의 모든 것이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해답 역시 북한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5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8-9면 참조.

56) 역사적 접근방법이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사건·기관·제도·정책 등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파악·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김윤영, 『통일 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9면).

실정에 놓여 있다.<sup>57)</sup> 실제적으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재판소구성법과 함께 채택된<sup>58)</sup> 이후 2005년 7월 26일 현재까지 형법은 8차,<sup>59)</sup> 형사소송법 10차에<sup>60)</sup> 걸쳐 각각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작업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와 노동당의 독재를 제도적으로 고착<sup>61)</sup>하여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역사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국가의 관리 수단이고, 특히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sup>62)</sup>

둘째, 문헌연구(文獻研究)<sup>63)</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수사기관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문헌자료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

57)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239-240면 참조.

58) 북한은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다시 ‘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1948년 4월 18일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동년 9월 7일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북한헌법으로 결의·통과되었다. 북한 형사법 역시 ‘법전초안작성위원회’가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48년 3월 9일 초안을 완성하여 동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 초안은 그동안의 단편적인 형사법령을 통합하는 한편 소련의 1926년 스탈린형법을 모방한 것으로서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어 195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오세인, “북한 형법체제의 특수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4, 42-43면 참조).

59) 북한 형법은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 제정된 이후, 2004. 4. 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제6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어서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7차 개정)되었고, 동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225호로 수정·보충(8차 개정)되었다.

60)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형법은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 제정된 이후,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되면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61) 고착(固着)의 사전적 의미는 성과나 경험을 일반화하고 변동이 없도록 굳건히 하는 것을 말한다(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31면)

62) 이백규, “북한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북한법연구』 제8호,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183면.

63)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4면).

헌 중심의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유로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헌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sup>64)</sup> 따라서 이 논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북한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문헌과 함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부, 정보기관,<sup>65)</sup> 통일연구원,<sup>66)</sup> 대한변호사협회,<sup>67)</sup> 외국문헌<sup>68)</sup> 등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수사제도와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를 보강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는 작업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셋째, 탈북자들의 인터뷰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 중에서 수사기관 관련 종사자들과의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한 수사기관의 운용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sup>69)</sup> 과거의 경우 탈북자들의 회소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정보가치를 높이고자 북한사회 전반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보의 한계성이 내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그들에 대한 접근 통로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화되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있다. 현실적으로 탈북자들 중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보안(경찰)기관의 출신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인터뷰과정을 통해 획득한 선행연구 자료를

64)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9면.

65) 정보기관에서는 인민보안성 전직요원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의 수사(경찰)기관의 수사제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다.

66)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연구서이다.

67)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6년과 2008년 『북한인권백서』를 출판한 바 있다. 이 연구서들의 집필진들은 북한인권 실태를 탈북자의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형사소송법상에 나타난 수사절차와 적용실태, 정치범 및 탈북자의 처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

68) 데이빗 호크/ 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서울: 시대정신, 2003)는 필자가 탈북자들의 면접조사 등을 기초로 집필한 책자이다.

69)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들의 거주지나 직업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방법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활용하여 자료접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각 장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사 검토,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밝히고, 이 글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북한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기본 인식과 더불어 수사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형사처리의 원칙을 고찰한 후, 수사제도 유형으로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 영미법계인 영국과 프랑스 및 혼합계인 일본, 사회주의법계의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의 수사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수사기관인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검찰소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북한 수사제도 운용의 핵심인 수사·예심기관의 형사사건 관할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 수사기관의 중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수사원과 예심원의 임무와 수사 및 예심 절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수사절차인 수사시작 ⇒ 수사실행 ⇒ 수사종결과 더불어 예심절차인 예심시작 ⇒ 예심실행 ⇒ 예심종결 그리고 검사의 수사·예심에 대한 감시에 대해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3·4장에서 분석한 기초자료를 통해 북한 수사제도의 운용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북한 수사제도에 반영된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수령교시와 당 정책관철, 형사처리의 모호성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수사·예심 절차상 문제와 기타 형사사법제도상의 문제 즉,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법률가의 참여와 형식적인 변호인 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 평가하고,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수사제도의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 제2장 북한 수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북한 법의 본질과 기능

#### 1. 북한 법의 본질

북한 법을 지도하는 기본요인은 주체사상과 수령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의 일원적 지도 내지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북한은 당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없고, 당의 지도성과 수령론이 일체화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사실은 북한헌법 제11조에서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은 당 정책 한 표현방식이고 실현수단이라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명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 정책은 수령의 혁명 사상을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법에 대한 정치의 주동적인 역할이란 수령과 당의 정책적 지도에 의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처럼 법이 전체 국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은 당 정책과 연관된 불과분의 결합을 이루고 있지만 당 정책 내지 정치와 법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 정책이 근원적 요인이라면 법은 파생적으로 규정되는 의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sup>2)</sup>

결국 북한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로서 당의

1) 최달곤, 신영호 공저, 『북한법 입문』(서울: 세창출판사, 1998), 13-14면.

2) 최영택, “북한법이론과 지배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검토 -92년의 개정헌법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논문집』, 제20권, 1992), 4-5면; 북한 헌법(1998년 개정) 제1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을 ‘준칙화’, ‘규범화’하여 사람들의 행동준칙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은 정권을 쥔 계급의 계급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정치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지배계급의 조직적 의사의 표현’이다. 법이 정권을 쥔 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계급적 의사의 가장 집중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인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sup>3)</sup>

## 2. 북한 법의 기능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법은 대체적으로 규제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법이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준칙화한 것이다. 즉, 법은 행동준칙으로서 사회성원들의 일정한 행동을 금지, 허용, 지시 등을 제시하여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후자는 사람들이 법의 기준적인 요구에 반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아직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낡은 사상(자본주의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기에 그에 대한 국가의 법적통제가 요구된다고 한다. 규제적 기능은 통제적 기능의 전제이며, 통제적 기능은 규제적 기능의 실현을 보증한다.<sup>4)</sup>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 법은 ①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힘 있는 무기인 진압기능(규제기능), ②사회주의국가를 옹기 관리 운영해나가기 위한 통제수단인 통제기능, ③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는 힘 있는 수단인 경제조직자적 기능 ④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고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문화교양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sup>5)</sup>

둘째, 북한의 수령론은 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에 대해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 영도자이고,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3) 심형일,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근로자』, 1985년 제11호(통권 523호), 평양: 근로자사, 1985), 참조.

4) 최달곤, 신영호 공저, 앞의 책, 22면.

5) 김태석, “북한법의 본질과 역할”(『법학연구』 제17집, 서울: 정문사, 2004), 276-277면.

창건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영도하는 최고 뇌수이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론은 1980년 후반부터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수령의 지위와 관계로부터 수령이 법 건설 영역에 달성한 바는 첫째,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 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 법의식으로 무장시켰으며, 둘째, 수령은 자각된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고, 혁명투쟁에 조직 동원하여 그 역사적 투쟁과정에서 혁명적 법 전통을 형성하였고, 셋째, 혁명정권수립 후에도 수령은 법률체도를 정비하고, 법 기관을 창설하여 이들을 혁명과 건설의 발전에 따라서 개선·완성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하였으며, 넷째, 수령은 국가의 기본법과 중요 부문 법을 몸소 준비하고 국가기관의 전반적 입법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 하였다는 것이다.<sup>6)</sup>

## 제2절 수사의 개념과 형사절차상의 원칙

### 1. 북한 수사의 개념 및 성격

#### 가. 수사의 개념

수사(搜查)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sup>7)</sup> 일반적으로 범죄 혐

6) 최달곤, 신영호 공저, 앞의 책, 23-24면.

7) 수사의 개념은 일치되지 않고 동기설, 목적설, 제한설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申東雲, 『刑事訴訟法 I (제2판)』(서울: 法文社, 1997, 41-42면)을 참고할 것. 그리고 수사의 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대륙법계의 전통적 시각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를 규명하는 행위” 내지는 “범죄의 정황 또는 이와 관련된 사

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과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수사란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sup>8)</sup>을 말한다. 그리고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수사는 공소의 제기과 유지 또는 공소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우리의 형사사법절차가 수사⇒기소⇒재판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치는 반면, 북한의 형사사법절차는 수사⇒예심⇒기소⇒재판이라는 4단계를 거치고 있다. 북한의 수사와 예심은 우리의 수사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 예심제도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라 할 수 있다.<sup>10)</sup>

첫째, 2004년 북한의 개정 형사소송법은<sup>11)</sup> 수사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형사소송법상 제134조)로 규정하고<sup>12)</sup> 있으며, 활동범위는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의 기초가 될 증거로서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을 제때 수집·보존하는데 한정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일반적 의미

---

람이나 사물에 대한 합법적인 탐색(Search)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륙법계의 수사 개념 정의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수사의 주된 목적으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수사를 재판에 선행하는 기소 전 절차의 일부, 즉 공소의 제기여부나 유지에 수반되는 부수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공소와의 관련성을 기초로 한 목적론적 개념 정의를 지양하고, 통상 수사의 개념을 가치중립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Michael J. Palmiotto, *Criminal Investigation*, Nelson-Hall Publishers, 1994, p.2; Paul B. Weston & Kenneth M. Wells, *Criminal Investigation*,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6, p.1; 김재민 외, 『경찰수사론』(용인: 경찰대학, 2008), 5면 참조).

8) 신동운, 『형사소송법(제4판)』(서울: 법문사, 2007), 31면.

9) 李在祥, 『新刑事訴訟法(제2판)』(서울: 博英社, 2008), 179면

10) 이에 대해서는 신동운, “일제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法學』 제27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형사법사학논총』, 서울: 박영사, 1991) 참조.

11)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 형사소송법”은 2005년 7월 26일(제10차 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로 수정·보충되었다.

12) 197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이며 사건해결의 기초로 될 긴급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제49조)으로 규정한 바 있다.

13)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33-34면; 다만 “범죄의 흔적이 없어 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증거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

에서 수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증거수집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한 수사기관의 내사단계<sup>14)</sup>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사는 범죄와 그 흔적을 수집 고착하여 범죄자를 적발하고 체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범죄자를 적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수집 등 수사 활동을 할 수 없고(동법 제141조), 예심에 이첩(移牒)되기 때문에 수사는 범죄사실을 완전하게 규명하기 보다는 범죄자의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리고 북한의 수사는 해당 기관의 수사원이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10조)함으로써 수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찰에 해당되는 보안원(사회안전원)의 주된 임무라 할 수 있다.<sup>16)</sup>

둘째, 북한의 형사처리 절차는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sup>17)</sup>를 확정하고 연루자를 적발하는 등<sup>18)</sup>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형사소송 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다(동법 제148조). 그리고 “예심원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예심에서 밝

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41조).

14) 한국경찰에서 “내사는 수사의 전단계로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소문 등에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고 입건의 필요와 가치가 있을 때에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므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내사 종결한다.”(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2003, 291면).

15)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76-77면.

16) 수사원과 검사의 관계를 보면 검사는 수사기관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구금결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형사소송법 제144조)을 가짐으로써 수사원의 수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데, 검사는 수사관으로서 수사에 참여하는 권한보다 수사 통제적 권한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수사의 주체는 ‘해당 기관의 수사원’이 되고, 필요에 따라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17) 북한은 예심에 회부된 자를 피심자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의 피의자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8) 북한의 구 ‘형사소송법(1992) 제70조’는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연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혀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동법 제 149 조). 따라서 예심이라 함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예심이란 별도의 예심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통하여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와 책임정도를 밝혀내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결정하는 절차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예심이 재판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의 예심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구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 공판전에 예심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예심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예심제도는 프랑스의 형사소송법에서 비롯되어 소련의 형사재판절차기본법에 계수된 후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이와 같이 북한의 수사와 예심은 일반적 의미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수사는 주로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발견을 주로 하는 활동이고, 예심은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즉,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발견과 증거의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수사·예심 활동이 일반적 의미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되는 북한의 수사기관 또는 수사 제도는 수사·예심 활동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 나. 수사의 성격

수사는 범죄자나 범죄 혐의자의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사절차의 합목적 성과 인권보장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사관의 자의적 활동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 절차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는 기술적, 절차적, 법률적, 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사는 범죄자 혹은 범죄 혐의자의 진상<sup>21)</sup>

19) 1976년 개정 형사소송법(제58조)는 “공화국법에 따라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며 피심자 심문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확정하고 런루자들을 모조리 적발하는 등으로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히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20)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81면.

을 규명하고자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을 찾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즉, 범인·범죄사실·증거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과 범인을 검거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기술이다.

북한의 수사 역시 기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형사사건 제기 요건으로 ‘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단호하게 투쟁을 시작하는 것과 범죄사건취급처리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에 따라 과학적론거들, 확실하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sup>22)</sup>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1992년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온갖 범죄와 위법 현상을 없애기 위한 사회안전 사업은 정치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기술실무적 방법을 옹계 결합하여 진행’<sup>23)</sup>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군중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군중을 사회안전사업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과 사회안전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평가사업을 잘하여 군중이 범죄와 위법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갖 범죄와 위법현상을 없애기 위한 사회안전사업은 정치적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기술실무적방법을 옹계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강조체 필자)<sup>24)</sup>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이 선입견과 추측에 의하여 사건을 취급하거나 사건취급에서 강압적방법을 써서는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똑똑히 밝혀낼수 없습니다.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똑똑히 밝혀내자면

21) 여기서 진상이란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2)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2판(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31면.

23)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 -창립 45돐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46면.

24) 위의 책, 246-247면.

과학적인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사건취급처리에서 증거자료를 찾아내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며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서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것이 정확한가 하는것을 철저히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그 정확성이 철저히 검토확인되기전에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자백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그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강조체 필자)<sup>25)</sup>

“범죄자를 잡으면 수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손가락무늬도 똑똑히 수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적극 벌려야 합니다.”<sup>26)</sup>

둘째, 절차적 성격을 띠고 있다. 수사는 형사사법 절차의 제1단계로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공소제기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수사는 수사⇒예심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를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sup>27)</sup>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피심자나 피소자에 대한 강압에 의한 진술강요 금지와 자백의 보강법칙 규정(형사소송법 제98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검사는 사법적 억제를 위해 보안기관(사회안전기관)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sup>28)</sup>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예심에 대한 감시를 검사의 임무로 규정(동법 제147조, 제156조)<sup>29)</sup>하고 있다. 검찰소의 법적 감시와 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5)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20-321면.

26) 미상, 『형사소송법학』(출판사, 출판년도 미상), 202면.

27) 우리의 경우 수사를 하나의 법적 절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와 법원의 관여를 통한 사법적 억제를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차에 위배한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8) 북한의 ‘검찰감시법’ “제11조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북한의 ‘검찰감시법’ “제10조 검사는 수사, 예심 기관이 수사, 예심 활동을 바로하는가를 감시하여 야 한다”(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려면 검찰기관들에서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검찰기관들에서는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제기된 모든 사건이 당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강조체 필자)<sup>30)</sup>

셋째, 법률적 성격을 지닌다. 수사는 법률이 정한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사법적 적정절차 준수는 범죄수사의 수단이나 방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인권 침해 요소가 가장 많은 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명문화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북한의 수사 역시 법적수속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한다는 법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률적 성격은 ‘당 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sup>31)</sup>하기 위해 범죄사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사법검찰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sup>32)</sup> …(중략)…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려면 법적수속절차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법적수속절차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단순한 형식상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정확히 수집하고 검토확인하며 범죄사실을 옳게 밝히기 위한 원칙적인 요구입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사건취급처리에서 법적수속절차를 지키는것을 시끄럽게 여기지 말고 제정된 수속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강조체 필자)<sup>33)</sup>

넷째, 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사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유지와 국민의

30) 김정일, 『김정일선집 (7)』(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322면.

31) 위의 책, 312면.

32) 위의 책, 312면.

33) 위의 책, 321면.

기본권 보장이라는 형사정책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수사제도 역시 당의 정책을 반영해야하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수사가 기술적·절차적·법률적 하자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해도 당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바람직한 수사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수사기관은 당 정책과 수령 옹호 보위를 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형사 정책적 고려 하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취급처리에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입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발생한 사건을 로동계급적립장,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는 립장에서 심의하고 처리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지키는것은 사법검찰기관활동의 근본원칙입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법집행에서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할수 있으며 원수와 우리 편을 정확히 갈라내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습니다.”(강조체 필자)<sup>34)</sup>

다섯째, 북한의 수사제도는 기술적, 절차적, 법률적, 정책적 성격 외에도 사건 처리에 있어 ‘집체적 협조’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사건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체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의 힘과 지혜에 의해서만이 개별적 사법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을 방지하여 제기된 사건을 원만히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집체적협의를 개인책임제를 약화시키는것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는 반드시 개인책임제를 강화하고 사건을 담당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사건을 직접 맡아

34) 위의 책, 318-319면.

취급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는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일군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제기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수 없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사건에 대한 집체적협의체계를 바로세우고 집체적협의를 실속있게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문제가 개별적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sup>35)</sup>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수사제도는 기술적, 절차적, 법률적, 정책적, 집체적 성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제약통합되어 작동하는 입체적인 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사절차의 소송구조화 경향과 적법절차의 요구와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sup>36)</sup>

## 2. 북한의 형사절차상의 원칙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리의 일반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의 관철, 과학성·객관성·신중성·공정성의 원칙, 인권보장의 원칙, 범죄의 예방(미연방지)원칙, 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 사용의 원칙, 법에 규정된 절차방법의 준수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가.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의 관철

#### 1) 계급노선의 원칙

우리의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북한 형사소송법은 계급노선의 관철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는 계급노선의 관철원칙으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

35) 위의 책, 321면.

36) 송영조, 앞의 논문, 2006, 20면.

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예심)에 있어 계급노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범죄 취급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물현상을 고찰하고 판단함에 있어 노동자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의 역사적 위업수행을 취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당의 계급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이익도 옹호관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의 투쟁에서 당의 계급노선을 관철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혁명 위업을 보장하는 필수적 담보라고 한다.<sup>37)</sup>

## 2) 균중노선의 관철

형사소송법은 균중노선의 관철원칙으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형사 사건을 취급 처리’해야 할 것(동법 제3조)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켜 범죄사건을 적발, 조사확정,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8)</sup> 이러한 균중노선의 관철은 반범죄 투쟁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문제이며 형사소송의 사명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범죄자들을 제때에 남김없이 들추어내고 그의 죄상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으며, 균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역사적 위업수행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9)</sup> 이러한 균중노선을 구현한 결과 현지확증, 현지예심, 재판소의 현지요해, 인민대표의 현지참가 등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건을 밝히고 처리하는 새로운 소송활동 형식들이 창조되었다고 한다.<sup>40)</sup>

3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2판, 50-51면.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출판사 미상, 2004.6.29), 6면.

39) 리재도, 앞의 책, 54면.

40) 위의 책, 56면.

## 나. 과학성 · 객관성 · 신중성 · 공정성의 보장원칙

북한 형사소송법 제4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1)</sup> 이러한 원칙을 형사사건 취급처리 과정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하고, 둘째, 실체적 정의를 강화하여 하며, 셋째, 법적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고, 넷째, 특권과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2)</sup>

## 다. 인권보장과 범죄예방 원칙

### 1) 인권보장의 원칙

북한 형사소송법 제5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와 소송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사소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sup>43)</sup>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죄는 물론 일반범죄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범죄예방의 원칙

북한 형사소송법 제6조는 “국가는 국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취급처리에서 준법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적발한 범죄자를 법에 따라 엄

41) 1999년 형사소송법은 제6조는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6면.

43) 위의 책, 7면.

격히 처리해야<sup>44)</sup> 하는 한편, 범죄를 범한 일반범죄자들과 범죄자들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으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sup>45)</sup>는 것이다.

## 라. 조선어 사용과 법 준수의 원칙

### 1) 조선어 사용의 원칙

북한 형사소송법 제7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말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건취급 시작부터 판결까지 피심자, 피소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에 대한 심문과 답변은 조선말로 하며, 모든 소송문건도 조선말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46)</sup>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이며, 외국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국의 글로 써낼 수 있다.

### 2) 법 준수의 원칙

북한 형사소송법 제8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수사원·예심원·검사·재판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및 방법에 철저히 준하여 소송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7)</sup> 이러한 원칙을 제시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 또는 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示唆)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4) 위의 책, 7면.

45) 리재도, 앞의 책, 60면.

46) 조선사람이 알 수 있는 말과 글로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것은 사실의 인식과 의사의 전달, 이해 및 증거의 고찰 등을 정확하게 하여 일꾼들이 그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함에 있어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8면).

47) 위의 책, 8면.

## 제3절 수사제도의 유형

일반적으로 법은 서로 다른 법제도의 계통으로 구별되는 유사성과 상이성의 인식에 근거하여 법계를 나누어 설명한다. 법계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지만<sup>48)</sup> 크게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와 사회주의 법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법은 사회주의법계 또는 법문화에 속하면서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법문화와 법이론을 형성하고 있다.<sup>49)</sup> 이러한 법계의 구분 관점에서 수사제도를 구별할 수 있다.

### 1.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수사제도

수사제도는 각국의 사회체제와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다. 즉, 법제도의 유형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그리고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대륙법계

##### 1) 프랑스

프랑스의 수사제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와 판사가 이를 지휘하는 체계를 갖는다. 중요범죄의 대부분은 수사판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직접 수사에 관여한다. 판사가 직접 기소 전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프랑스만이 가

48) 미국의 위그모어(J. Wigmore)는 이집트법, 메소포타미아법, 히브류법, 중국법, 힌두법, 그리스법, 로마법, 해법(Marine Law), 일본법, 이슬람법, 켈트법, 게르만법, 슬라브법, 교회법, 라틴법, 영국법의 16법계로 나누고, 독일의 쾰바이게르트(K. Zweigert)와 쾰츠(H. Kötz)는 라틴법권, 독일법권, 북구법권, 영미법권, 사회주의법권, 동아시아법권, 이슬람법권, 힌두법권의 8법권으로 나누며, 프랑스의 데이비드(R. David)는 로마-게르만법 가족, 보통법 가족, 사회주의법 가족, 철학적·종교적 제도의 법질서(이슬람법, 힌두법, 동아시아법, 아프리카법)의 넷으로 구분하고, 버틀러(W. E. Butler)는 로마-게르만법, 영미법, 사회주의법으로 분류하고 있다(김태석,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박사학위논문, 1999.12, 6-7면).

49)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9면.

진 독특한 사법제도로써 수사단계에서의 판사에 의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대응을 위한 신속한 수사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프랑스의 경찰은 체계상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되고 있으며,<sup>51)</sup>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sup>52)</sup> 사법경찰리,<sup>53)</sup> 사법경찰보조원,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되어 경찰의 수사 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sup>54)</sup>에 의하여 관리된다. 사법경찰리와 사법경찰보조원은 직무의 권한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수사판사의 위임에 의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의 예심에 관한 사무집행, 임시구금처분결정,<sup>55)</sup> 공권력의

50) 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서울: 법문사, 2007), 460.

51) 경찰관 임용 3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수사경찰은 행정경찰과 구분되며, 지방수사조직도 일반지방청 조직과 다른 별도의 관할 구역을 갖는 등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은 구분되고 있다(위의 책, 473면).

52)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시장과 시장 보좌관'(프랑스 형소법 제16조 1항 1호), '군인경찰의 장교와 하사관'(동법 제16조 1항 2호), '경정급 이상, 경감, 경위'(동법 제16조 1항 3호), 1998년 11월 18일 법률에 의하여 순경에서 경사급 중 최소한 3년 이상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내무부와 법무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부처간 명령에 의해 지명된다. 이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험과 내부교육을 통해 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도록 한다(위의 책, 461면 참조).

53)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 자격이 없는 군인경찰 사병,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못한 정식 경위·경장·순경 등이다.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배치 받는 경우에만 그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현행범을 조서작성을 통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법경찰관의 지휘 아래 현행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진술을 청취하고 불심검문을 행할 수 있다. 프랑스 형소법 제21조는 사법경찰 보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이 이외의 자를 말한다. 즉, 군인경찰 중 의무복무인 자와 자치경찰관이 이에 해당된다(위의 책, 462면).

54) 프랑스의 경우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위경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이의 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를 수행한다. 미성년자사건의 경우는 예심을 항상 거친다. 수사판사가 예심을 담당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 결정을 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법원에 사건을 회부한다. 다만 중죄사건의 경우는 다시 제2단계 예심법원인 고등법원 합의체 중죄소추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의 경우 예심법원 판사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계없이 예심행위를 할 수 있다(위의 책, 461면).

55) 임시구금처분은 현행범인수사 또는 예비적 수사에서 모두 인정되며, 임시구금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사법경찰요원이 아닌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임시구금의 기간은 24시간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24시간 연장될 수 있는데 반드시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현행범인의 경우 검

직접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지나 사법경찰보조원은 이러한 권한이 없고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보조할 뿐이다.<sup>56)</sup>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초 사법관과 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소수의 사법관으로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행위를 수사의 보조적 지위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사법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 법률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상호간의 수평적인 협조관계로 변화였다. 경찰노조가 있어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시 즉각적인 반론을 가하거나 대응을 하여 사법관에 의한 월권적인 지휘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실정이다.<sup>57)</sup>

## 2) 독일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사 주재형 수사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고, 경찰은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은 있으나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수사 및 공소에 대한 모든 책임도 검찰이 진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권을 가진다. 경찰은 단지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즉, 경찰은 검찰의 확장된 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현실은 이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오히려 수사의 현실은 오랫동안 수사의 개시와 실행이 경찰의 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바, 경찰은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경찰에게는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심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는바, 수사개시와 수사진행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경찰에게 보장하고 있다. 이처

사가 피의자를 반드시 소환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3조), 예비조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면접한 후 하가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77조).

56) 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론』, 460-461면.

57) 위의 책, 464면.

럼 독일의 수사실무에서는 대부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 후, 관련수사서류를 검찰청에 송부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업무가 대체로 종결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수사절차에 있어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검찰의 개입 없이 담당전문경찰관에 의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를 한다. 그리고 대체로 검사의 지시권 또는 지휘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살인이나 강도대형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 중요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며, 검사는 현장에 직접 임장(臨場)하면서 수사절차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소수의 검사가 수많은 범죄사건에 대해 지시와 지휘한다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단지 수사절차를 정지시킬 것인가, 혹은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한다. 오늘날 독일경찰은 소극적 의미의 사전예방적 경찰활동뿐만 아니라 사후 진압적 경찰활동, 형사범의 소추, 예방적 범죄투쟁과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역할이 강조되고 있다.<sup>58)</sup>

## 나. 영미법계

영미법계의 수사제도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경찰독자수사권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 수사권을 행사하며 주로 공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검사는 소추를 담당하는 외에 경찰에 대한 법률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양자 간에 밀접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sup>59)</sup>

### 1) 영국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높다. 즉, 1985년 국가가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기소와 공소유지까지도 경찰이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1962년 ‘왕립경찰문제 조사단’에서 “같은 경찰관이

58)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서울: 박영사, 2004), 326-327면.

59) 이영란, “한국의 수사권체제”(『형사정책』 제7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5.8), 190-191면.

동일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각 경찰청은 변호사로 구성된 별도의 기소과를 두도록” 권고하게 되었고, 이에 일부 지방경찰청은 기소과를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지역 변호사에게 기소관련 조연을 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연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권은 경찰관이 계속 행사하였다. 1978년 ‘왕립 사법절차 조사단’이 다시 사법절차의 3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①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동일사건의 기소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고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경찰관의 수사와 기소업무를 병행, ②전국의 경찰청들이 사건의 기소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③경찰이 너무 많은 부당한 사건들을 기소하여 판사의 기각률이 높음이었다. 1981년 조사단은 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 독립된 기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입법을 권고하였고, 1983년 내무부에서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의 창설과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을 위해 그 기구의 지역 사무소에서 대부분 사건의 기소업무를 처리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발표하게 된다. 1985년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률’(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내무부 기소국과 지방경찰청 기소과를 통합·확대한 국립기소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이<sup>60)</sup> 창설되었다. 국립기소청은 광범위한 경찰의 업무로부터 기소기능만을 분리해 내어 전반적인 형사사법제도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고, “경찰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정부부처로 경찰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sup>61)</sup>를 행한다. 이는 기소청이 경찰을 지휘한다든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주체인 경찰이 기소업무까지 수행하는 데 따른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어 기소를 전담함으로써, 경찰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승소율로 평가되는 영국의 국립기소청은 국민과 경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소유 법률회사의 성격이 짙고 승소의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 대상

60) 우리나라의 검찰청과 유사하나 수사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오직 기소업무만 수행한다.

61) 영국국립기소청을 소개하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국립기소청을 소개하는 표현임([http://www.cps.gov.uk/cps\\_a/what\\_is.htm](http://www.cps.gov.uk/cps_a/what_is.htm), p.1 참조).

으로 삼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찰과 피해자들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sup>62)</sup>

그리고 영국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은 정지 및 수색, 영장에 의한 수색, 영장 없이 행하는 수색, 압수 등의 강제수사 방법과 참고인 진술청취 등 임의수사 및 감시, 정보원, 감청, 비밀잠입수사와 기타 과학수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혐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관은 기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영장 없이 24시간, 경정급 간부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36시간, 치안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96시간까지 피의자를 구금·조사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에서 기소, 경고처분, 무혐의 처리 또는 정액 벌금 부과결정을 하며, 기소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구속할 것인지 또는 불구속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사건일체를 국립기소청으로 이첩한다. 특히 1984년 이후에는 거의 무제한적이었던 경찰의 권한에 대한 법규화가 이루어지고<sup>63)</sup> 보다 광범위한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찰’을 지키려는 영국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sup>64)</sup>

## 2) 미국

미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 초기에는 영국의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사인소추주의’를 수용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주정부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자 주정부는 각기 검사를 임명하여 소추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연방 국가인 미국은 다양한 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사제도를 규정하기 어렵다.<sup>65)</sup>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방의 경우 법무성 수사국 내

62) 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 245-246면.

63) 실정법의 명문규정 없이 관례와 관행으로 인정되던 검문, 압수, 수색, 체포, 구금 등 경찰관의 수사권을 명문화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한 “경찰과 범죄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이 그 대표적 예이다.

64) 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 248면.

65)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 각 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40,000여 개의 경찰기구가 다양한

에 검사와 경찰이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 있는 각 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기능을 담당한다. 즉, 큰 틀에서 보면 경찰은 수사의 주재자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소추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sup>66)</sup>

따라서 미국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67)</sup> 특히, 미국 범죄수사구조상의 제도적·기구적 특징은 50여개 주의 독특한 법제도에 따라 역할, 지위, 권한 관계 등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주에서나 수사의 주재와 수사의 개시 및 수행은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공통성을 가지며,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 보완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sup>68)</sup>

결국, 미국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지방자치 제도가 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을 지휘·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며, 임의 수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 영장의 발부에도 엄격한 사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있다.

## 다. 혼합형

일본은 혼합형 수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대륙법계 수사제도 즉,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미국 등 연합국군총사령부(CHQ)의 영향을 받

---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국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제도는 없고 기관 상호간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응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6) 송영조, 앞의 논문, 23면.

67) 미국의 경우 사법경찰의 독립된 수사주체자로서 개개인의 사건에 관한 수사의 주재·주체가 되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하도록 이들의 지위를 설정하여 수사활동과 소송활동을 전문화의 원리를 토대로 이들 각각에게 고유한 직무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업무집행이 검사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위, 권한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찰에 의해 담당됨을 의미한다(이운주, 앞의 책, 305면).

68) 신현호, “경찰수사권 독립의 범위”(『수사연구』, 1992.11), 9-11면 참조.

아 영미법계형 수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공안위원회제도의 시행과 함께 혼합형 수사제도로 전환되었다.<sup>69)</sup>

일본의 사법경찰은<sup>70)</sup>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증거수집, 피의자 검거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형사소송법 제189조 제1항)할 수 있다’는 2차적·보충(보정)적 수사권을 가진다.<sup>71)</sup> 결국, 일본의 수사제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는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그 때부터 공소의 제기과 유지를 위한 2차 보정수사나 공소제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경찰의 수사는 ‘본래적’이고,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보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72)</sup>

## 2. 사회주의 법계의 수사제도

소련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련과 중국의 법체계는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대륙법계 제도와는 다른 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짜르시대, 중국은 청나라 시대에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형사소송절차에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법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련과 중국의 수사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69) 송영조, 앞의 논문, 27면.

70) 일본의 사법경찰이란 범죄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상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의 총칭이다(형사소송법 제39조 제3항).

71) 검사의 수사가 2차적이라는 것은 기소불기고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직원의 수사내용을 보충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사법경찰직원보다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72) 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 165면.

## 가. 러시아 연방<sup>73)</sup>

제정 러시아는 사회주의혁명(10월 혁명)을 거치면서 예심절차가 경찰(공안)의 수사기능으로 옮겨져 영미법계 국가의 특징인 경찰독자 수사권체제의 수사제도를 마련하였다. 예심제도는 범죄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증거자료의 수집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전자의 경우 범죄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심리하여 범죄성립의 확신을 얻은 경우에만 공판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범죄혐의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sup>74)</sup> 반면, 후자는 공판법원이 범죄확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sup>75)</sup> 이러한 예심의 목적에 의해 프랑스의 예심절차는 사법부 판사의 임무와 역할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계수한 소련의 형사소송절차도 예심이 사법부의 기능으로 분류되었으나, 1920년대 소비에트연방 형성 이후 1928년 이래 예심관의 재판소 종속이 폐지되고 검사국에 종속되었다.<sup>76)</sup>

소련이 개혁·개방으로 현재의 러시아 연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치, 경제, 민사 등과 관련된 법제는 새롭게 바뀌었으나, 범죄행위 등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절차 특히, 수사제도는 그 성격의 특성상 체제전환 전후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1995년 7월 ‘적극적 수사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사기관이 늘어났다.<sup>77)</sup> 그리고 소련의 형사소송법상

73) 러시아 연방의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자료는 한중섭의 「러시아연방헌법」과 「러시아연방 경찰법」(모스크바국립대학 법학부 형사법전공, 2005)을 사용하였다.

74) 법무부, 『소련법연구(V) -형법·형사소송법-』, 법무자료 제146집(서울: 법무부, 1991), 152면.

75) 공판절차에 이르러 조사하게 되면 멸실, 상태의 변경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충분히 이용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하게 하는데 있다(위의 책, 153면).

76) 위의 책, 154-155면.

77) 1995년 이전 러시아공화국 형사소송법상 예비조사 기구는 검찰 수사관, 국내문제 수사관(경찰), 국가안보위원회(KGB) 수사관 등이 있었으나, 1995년 이후부터 내무행정관청(경찰), KGB, 대외정보기관, 국경수비대, 세관, 대통령 경호실, 국가보호국 및 세무서 등 수사기관이 늘어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법무부,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서울: 법무부, 1996, 793면).

기소 전 사건처리절차인 예비심문과 예비조사의 구분과 예비조사(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단계에서의 수사와 예심<sup>78)</sup>은 러시아연방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예심기관의 사건관할의 범위는 시대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련과 러시아 연방의 수사제도는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사·예심에 대한 사건관할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의 형사사건 제기 절차는 사건<sup>79)</sup>을 접수한 수사·예심기관이 사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제기 결정서와 관련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sup>80)</sup> 결정함으로써 성립된다. 러시아연방 형법은 범죄를 경죄(輕罪), 약간 중(重)한 죄, 중죄(重罪), 매우 중(重)한 죄로 분류하고 있다.<sup>81)</sup> 경죄와 약간 중한 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형소소송법 제150조 제3항 1호)하고, 그 외 중죄, 매우 중한 죄, 사회적 위험성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에 해당되는 범죄는 예심기관에서 담당한다(동법 제151조 제2항 1호).

수사기관과<sup>82)</sup> 예심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78) 형사소송법 제150조(예비조사의 형식(форма)) 1항은 “예비조사는 예심(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следствие) 또는 수사(дознание)의 형식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9) 범죄의 신고(고소 또는 고발)나 자수, 인지, 기타 제보(익명의 제보는 제외) 등을 의미한다.

80) 동의, 거부, 보충조사를 위한 반송 조치를 의미한다.

81) 러시아연방 형법전(刑法典,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1996.07.13. 제정, 연방법률 제64호) “제15조는 범죄의 분류(категории преступлений) 1. 본 법전에 규정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① 경죄 ② 약간 중한 죄 ③ 중죄 ④ 매우 중한 죄로 나누어진다. 2. 본 법전에 규정된 최고 법정형이 징역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의 및 과실 행위는 ‘경죄’로 본다. 3. 본 법전에 규정된 최고 법정형이 징역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의범, 그리고 본 법전에 규정된 최고 법정형이 징역 2년을 초과하는 과실범은 ‘약간 중한 죄’로 본다. 4. 본 법전에 규정된 최고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의범은 ‘중죄’로 본다. 5. 본 법전에서 법정형으로 징역 10년 초과하거나 그 보다 더 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고의범은 ‘매우 중한 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2) 형사소송법 제41조(수사관 дознаватель) 제4항은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검사 및 수사기관 책임자의 지시는(указания) 수사관에게 구속력이 있다(즉,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때 수사관은 수사기관 책임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검사의 지시는 상급기관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지시의 이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 수사관(дознаватель)은 독자적으로(самостоятельно) 수사처분과 기타 소송행위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소송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처분이나 결정에 수사기관 책임자의 동의, 검사<sup>83)</sup>의 승인, 법원의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1조 제3항의 1).<sup>84)</sup> 이에 비해 예심관은 형사절차상 상당한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심관은 법원의 결정 및 검사의 재가(동의·승인, санкции прокурора)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독자적으로 수사처분 및 기타 소송행위의 집행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동법 제38조 제2항의 3),<sup>85)</sup> 사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 처분·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38조 제3항).<sup>86)</sup> 즉,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동의·승인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찰독자수사체제의 수사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유지를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수사활동을 감독·통제하는 법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승인·동의·거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sup>87)</sup>

83) 러시아연방 검찰청법 제1조에 의하면 “검사는 헌법과 법률의 준수 및 그 집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제1조 제1항) 일반법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기관의 법집행에 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마는 일반적인 법집행 감독 외에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상사사건을 재판하는 일반법원의 심리에도 관여하여 그 법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더욱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1조 제2항).

84)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 제41조(수사관, дознаватель) 제3항의 1: 독자적으로(самостоятельно) 수사처분 기타 소송행위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소송상의 결정을 내린다. 단, 본법에 의거 이러한 처분이나 결정에 수사기관 책임자의 동의, 검사의 승인, 법원의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 제38조(예심관, следователь) 제2항의 3: 본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 및(또는) 검사의 재가(동의/승인, санкции прокурора)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독자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독자적으로 수사처분 및 기타 소송행위의 집행에 관하여 결정한다.

86) 형사소송법 제38조(예심관) 제3항은 “예심관이 검사의 처분(부작위)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반론을 서면으로 기술하여 상급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형사소송법 제5조(본법에서 사용되는 주요개념,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제39항은 “승인(санция): 수사관/예심관에 의해서 집행되는 수사처분 기타 소송행위의 수행에 대한, 그리고 수사관/예심관에 의해서 내려진 소송적 결정에 대한 검사의 허가(разрешение) 또는 동의(согласие)”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중국

중국의 형사소송법상<sup>88)</sup> 소송주체는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공안기관과 검찰)<sup>89)</sup>과 공소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과 자소(自訴)사건<sup>90)</sup>의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기능을 담당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을 소송기능의 하나로 분류할 만큼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기능을 중요시한 것이다.<sup>91)</sup> 이러한 점을 넓게 본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적법절차준수와 당사자주의보다 중시하는 형사소송이념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92)</sup>

88) 중국공산당은 1979년 7월 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보증규정 및 결정 등 특별법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등 사법기관들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수많은 세칙과 규정 및 대량의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세칙과 규정 및 사법해석들은 각 사법기관의 내부규정에 속했던 것이므로 상호 충돌하는데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제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듬어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수정안이 1996년 3월 17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수정안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각 사법기관의 형사소송 진행환경에 중대한 수정과 보충을 했으며, 형사소송법의 조문도 164조에서 225조로 늘어났다(朴永喆, 海外研修報告書 “中國의 刑事訴訟節次와 檢察制度”, 울산: 蔚山地方檢察廳, 2006.7.5 참고).

89) 중국의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공안기관(경찰)과 검찰, 국가안전기관(우리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국가안전보장기관), 군대내의 보위부문(軍수사당국), 감옥 내 발생 범죄에 있어서 감옥 등 5개 부문으로 크게 나뉘고 이를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공안기관(경찰)’로 통칭하거나 ‘수사기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90)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소추할 수 있는데 이를 ‘자소(自訴)제도’라 한다. 자소제도에서 자소를 한 자를 자소인이라 하고 소추된 자를 피자소인 또는 피고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소의 절차에 있어 자소사건을 제기 받은 법원은 사안이 합리적으로 소추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를 거쳐 공판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진정과 민원사건 절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소하는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91)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절차를 법원의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소기능, 변호기능, 심판기능의 3대 기능보다는 실질적인 형사소송절차로서 수사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검찰의 공소기능이 약한 특징을 지닌다. 이는 중국의 형사소송원칙에 따른 결과로 중국의 형소법 제7조에는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 검찰기관과 공안기관(경찰)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지고 상호견제하고 협력하여 유효한 법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찬원, “중국경찰의 수사제도”, 『치안정책연구』, 제 16호,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2.12, 181면).

중국의 공안(경찰)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있다. 공안기관은 수사(偵査), 긴급체포(拘留), 구속(逮捕)의 집행, 예심을 책임지고, 인민검찰원은 구속의 승인(批准)과 법률상 직접 수사할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한다. 공소사건 또는 자소사건에 대한 재판(審判)은 인민법원이 책임지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조 1항). 이들 기관들은 형사절차에 있어 각 부여된 권한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할 뿐<sup>93)</sup>, 다른 기관에 대한 배타적 우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sup>94)</sup>

중국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경찰)의 전문업무<sup>95)</sup>로 크게 수사와 예심<sup>96)</sup>이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는 범죄의 실마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입건(立案)절차, 증거와 자료의 수집, 범인의 확정과 주요 범죄사실의 조사와 확인 또는 범죄혐의 근거확인, 중요범인의 확보, 법에 의한 구속허가의 신청과 범인체포, 그리고 최종적인 수사완료(破案)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사과정을 거친 사건은 예심단계로 넘어간다. 예심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구속과 체포의 단계에서 시작된다.<sup>97)</sup> 예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구인, 보석, 거주감시, 체포와 구속 등 강제조치와 체포된 범인에 대한 재조사,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심사·신문, 검증, 감정·검사 및 증거의 사실대조 등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sup>98)</sup> 예심이란 ‘법정의 정식재판이전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

92) 위의 글, 181-182면.

93) 중국헌법 제135조 및 형소법 제7조 人民法院、人民檢察院和公安機關辦理刑事案件，應當分工負責，互相配合，互相制約，以保證準確有效地執行法律。

94) 구 소련은 각급 검찰장에게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였으나, 중국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국무원의 공안부 산하 각급 공안기관은 일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의 한 주체이다.

95) 公安教材編審委員會〈刑事案件偵察〉編寫組 편저, 『刑事案件偵察』(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5.7), 4면(중국인민공안대학 형사사건수사에 대한 교재에서 밝힌 형사사건 수사의 의의와 정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6) 예심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와 증거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예심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심에 관련된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97) 김찬원, 앞의 논문, 198면.

98) 예심은 이후 신문과 조사, 사실의 대조확인, 수집증거의 보충, 사건의 전부 사실진상에 대한

어지는 예비적인 심리활동<sup>99)</sup>으로 정의되는데, 예심절차는 중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유지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sup>100)</sup>

중국의 수사제도는 경찰(공안)이 수사종결권<sup>101)</sup>을 행사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사후 통보하는 형식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즉, 중국 경찰은 형사소송과정에 있어서 보조자나 부수적 기능의 수행자가 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실제적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독자수사권 체제의 수사제도를 가지고 있다.<sup>102)</sup> 검찰은 이러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유효적절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sup>103)</sup> 다만,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 감독’(동법 제8조) 차원에서 경찰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해 감독한다. 구속 비준에 대한 심사결정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법률감독을 수행한다.<sup>104)</sup>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인민검찰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규명, 법에 의한 유죄여부 판단, 해당범죄의 구성요건, 형사책임여부,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제출할지 또는 기소면제, 사건안됨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종결을 함으로 완성된다.

99) 嚴勵 외 2인 편저, 『中國公安業務全書』(북경: 인민공안대학출판사, 1996), 556면(예심업무 편); 公安大學教材編審委 編著, 『豫審業務教程』(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4.7), 1면.

100) 김찬원, 앞의 논문, 197-198면.

101) 중국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의 확보가 충분하면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자료 및 증거 일체를 동급 검찰기관에 심사결정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0조에서는 “수사과정중 범죄혐의자에 형사책임이 없음을 발견시 사건은 마땅히 파기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즉각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속을 허가한 검찰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독자적인 사건 수사종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102) 중국의 경찰은 형사소송과정에서 ‘검찰, 법원과 함께 정확하고 적시에 범죄사실을 밝히고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과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상호 협조하며, 객관적인 사실의 규명을 위해 상호 권한의 남용을 견제하여 유효적절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조 및 제7조)고 명시하고 있다.

103) 중국의 형소법 제7조에는 “법원, 검찰기관과 공안기관(경찰)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지고 상호견제하고 협력하여 유효한 법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4)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편역,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 법무자료 제257집(서울: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3), 73면.

## 다. 북한

북한의 수사제도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들 국가의 수사제도와 유사하다. 북한의 형사법절차는 수사⇒예심⇒기소⇒재판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수사제도는 수사와 예심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구성에 있어 중국은 수사 과정에 관한 규정을 예심과정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대부분의 절차규정을 예심과정에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수사제도는 중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수사나 예심의 각 단계마다 당의 관여와 감독·지시가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사제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보안서(경찰서)의 경우 수사개시의 결정 단계에서는 보안서장과 정치부장이 관여하며, 예심의 시작단계에서는 당 보안위원회의 비준을 받아(결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는<sup>105)</sup> 일반감시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예심 및 재판을 감시하는 사법감시,<sup>106)</sup> 공소권의 임무와 권한이 있다.<sup>107)</sup> 그러나 검사는 수사나 예심을 주도적으로 지휘·감독하기 보다는 기소장에 대해 승인여부만 결정하는 사후 통제자<sup>108)</sup>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sup>109)</sup>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sup>110)</sup> 따라서 북한의 수사제도는 러시아나 중국과 비슷한 경찰독자수권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제1조,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106) 검찰감시법 제10조-제12조.

1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5 조(피심자의 기소): 검사는 예심을 충분하고 옹계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

108)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시와 종결(예심으로 송부), 예심의 개시와 종결에 대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수사와 예심에 대한 검사의 감독권 행사는 체포·구속 등 강제조치에 대한 영장 승인 등 수사와 예심의 각 단계별로 그 적법성 여부를 사후 감독·지시하고 있다.

109) 통일교육원, 『2001 북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01), 56면;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 형사소송법 개요』(서울: 북한연구소, 1992), 85-86면.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에 투영되어 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각 단계마다 당의 관여와 결정에 기속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의 수사제도는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1)</sup>

결국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는 소련과 중국의 법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 → 예심 → 기소 → 재판이라는 대륙법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사제도는 수사(예심)기관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영미법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수사(예심)기관의 예심종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찰의 준법감시를 통해 통제받고 있는 사회주의법계의 수사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2)</sup>

110) 남궁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박사학위논문, 2003, 81면.

111) 손영조, 앞의 논문, 34면.

112) 위의 논문, 35면.

## 제3장 북한의 수사기관과 형사사건 관할

### 제1절 수사기관

#### 1. 수사기관의 의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남한의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sup>1)</sup>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sup>2)</sup>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다. 즉, 수사관(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동법 제196조 2항).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동법 196조 3항). 다시 말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이지만,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

- 1)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법률 제8717호 일부개정 2007.12.21).
-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써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예를 들어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소년감별소장, 삼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세법상의 세관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지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같다(李在祥, 『新刑事訴訟法(제2판)』, 181면).

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사와 예심은 우리나라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수사기관이라 함은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인민무력부 등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 이들 수사기관은 각 기관별로 관할 사건을 달리하고 있으나, 기관간의 일부 중복된 영역도 있다. 즉, 인민보안성은 일반범죄 사건을,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죄(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인민무력부는 군(軍)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을 각기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경제부문과 법기관의 법준수 여부와 관련된 일반범죄는 검찰소에서 담당한다.

## 2. 수사기관의 종류

### 가. 인민보안성<sup>3)</sup>

일반범죄 사건의 수사·예심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인민보안기관이다. 즉, 일반범죄 수사·예심은 인민보안성<sup>4)</sup> 산하 시·군·구역 보안서(경찰서)의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에서 주로 담당한다. 이러한 담당부서의 구성원을 ‘수사원(수사일군)’으로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수사원증이 별도로 지급된다. 수사원은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임무를 담당하고, 범죄자 적발 후의 수사

3) 이하 인민보안성은 유동열의 “북한의 경찰체제 분석”(『공안논총』 제13집,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1, 37-65면), “남북통일대비 경찰통합방안”(『민주사회연구』 제17권 제3호, 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5, 100-103면), 전현준의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17-29면. “북한 인민보안성 실체(1)~(12)”(『주간대공정보』, 국정원, 2006)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전현준은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출신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면담한 탈북자들의 가명은 황정수(1997년 탈북), 김영수(1999년 탈북), 김정호(1988년 탈북), 이상호(1998년 탈북), 심상영(1999년 탈북) 등이다.

4) 인민보안성은 ‘혁명의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수령 옹호보위,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보위,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의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보안성은 보편적인 경찰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지기능보다는 수령과 당을 ‘결사옹위보위’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권력의 핵심체계인 ‘수령-당(국가기관)-인민대중’의 ‘혁명적 수령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활동은 예심원이 담당하는데, 예심원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어 예심을 종결한 후 검사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기는데 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북한경찰의 최상위 중앙조직인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며, 사회안전성(1962.10.23), 사회안전부(1972.12.27), 사회안전성(1998.9.5), 인민보안성(2000.4.4) 순으로 개칭되어 왔다. 인민보안성은 정치국(당 조직)과 행정조직(인민보안성 고유업무)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성은 부대부문(경비대 군인)과 보안부문(보안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sup>

북한 경찰의 조직은 중앙의 인민보안성을 비롯하여 각도·지할시 보안국, 시·군·구역의 보안서, 리·동 단위의 보안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민보안성 철도안전국 소속의 각 시도 보안부와 국토총국 산하 각 시도 사업소, 관리소 등이 있다. 중앙조직인 인민보안성은 2008년 12월 현재 인민보안상(相),<sup>6)</sup> 참모장, 12명의 부상(副相)<sup>7)</sup>을 비롯하여, 독립적인 당 조직인 정치국과 보위부, 참모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의 수사제도로는 수사와 예심이 있는데,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성 내에 범죄자들의 형사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사업 1부 소속의 감찰지도국(1국), 수사국(4국), 예심국(6국)이, 안전사업 2부 산하의 교화국(3국)이, 과학기술부문 산하의 형사감정국(9국)이 있다. 그리고 도·직할시 보안국에는 감찰처, 수사처, 예심처가, 시·군·구역의 보안서에는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 반탐과가 있다. 보안기관은 일반범죄를 처리하는데, 인민보안기관의 경제감찰 업무와 검찰소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 업무는 서로 중복될 여지가 있다.

5) “북한 인민보안성 실체(3)”(『주간대공정보』, 국정원, 2006) 재정리.

6) 인민보안상은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상성 대장이 임명되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상성(1933) 인민군대장은 4군단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8년 현재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2009. 3. 8; 제383호선거구)으로 선출되었고, 국방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활동 중에 있다.

7)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치사회분석과, 『2009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서울: 통일부, 2008.12), 49-52면을 참조할 것.

<표 3-1> 인민보안성 형사처리 관련부서의 업무와 편제⑧

부서	담당 업무	편제	
안 전 사 업 1 부	감찰 지도 국 (1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보안성 본부 국·처 및 각 도·직할시 보안국 지도·통제와 업무 종합(前 종합지휘국 업무)</li> <li>* 2004년 4월 인민보안성 개편시 참모부서인 '종합지휘국'(1국)을 해편하면서, 동 업무를 이관</li> <li>· 범죄정보 수집·적발, 사건조사 후 예심국에 인계, 각종 포고령 등 지시내용 전파 및 이행실태 감독</li> <li>· 각종 '그루빠' 지도·감독,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에 감찰지도원 파견 등 감찰업무 지도·감독</li> <li>·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기획수사 및 감시·감독</li> <li>· 각종 사건·사고 발생건수, 구류장 구속인원, 체포건수 등 산하기관의 일일상황 종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제는 국장(중장), 부국장 2명(소장), 부장(대좌), 부부장(상좌), 책임부원(상좌), 부원(중좌) 등 대부분 김일성대학교 법학부 출신으로 구성</li> <li>· 산하 부서는 경제감찰부, 일반감찰부, 과학기술 감찰부(1999년 신설) 등이 있음</li> </ul>
	수사 국 (4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일반범죄 사건 수사(범죄자 체포, 현장검증, 혈액·필적감정)와 도·직할시 보안국의 과학수사활동의 지도·감독</li> <li>* 인민보안성 수사국은 중앙당에서 하달하는 '김정일 방침사건' 수사로 일반범죄사건에 투입할 인력부족으로 수사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제는 국장(소장), 부국장(대좌), 부장(상좌), 책임부원(상좌), 부원(중좌) 등으로 구성</li> </ul>
	예심 국 (6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 예심업무 지도·감독</li> <li>·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범죄자 체포</li> <li>· 감찰·수사 부서에서 인계된 범죄 혐의자에 대해 심문을 통한 여죄 추궁, 범증 확보, 사건 검찰소 송치, 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까지 구류장 설치운영·감독</li> <li>* 예심은 보안국 감찰 및 수사 부서들의 유죄확정 증거자료와 물적 증거들에 대해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건처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제는 국장(중장), 부국장(소장), 부장(대좌), 책임부원과 상급예심원(상좌), 예심원과 부원(중좌) 등으로 구성</li> </ul>
안 전 사 업 2 부	교화 국 (3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자 수용 관리</li> <li>· 북한 전지역의 교화소·노동교양소(노동단련대)·인민보안성 담당 관리소에 대한 업무 지도·통제·감독</li> <li>· 사면·감형·기한전 출소 등 행형(行刑) 업무 수행</li> <li>* 정치범·반국가사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일명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제는 국장(중장), 부국장(소장), 부장(대좌), 교화소장(상좌), 교양소장(상좌), 부소장(중좌), 관리지도원(대위편제), 계호원(하사관) 등으로 구성, 산하에 외화별이 전담과인 원천동원과 운영</li> </ul>
과 학 기 술 부 문	형사 감정 국 (9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보안성 수사국 및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에서 의뢰한 사건 증거자료(지문·혈액·정액·모발 등) 및 토지·기계·전기 등 각종 기술분야 감정업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제는 국장(소장), 부국장(대좌), 부장(상좌), 부원(중좌) 등으로 구성, 안전기술국 지문관리부가 최근 형사감정국에 흡수된다는 설(說)이 있으나 그 결과는 미확인</li> </ul>

8) 이철성,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82-87면 참조; “북한 인민보안성 실체 (5)~(6) (『주간대공정보』, 국정원, 2006) 재경리.

<표 3-2> 보안서의 부서별 담당 업무<sup>9)</sup>

부서	담당 업무
감찰과	· 각종 범죄정보(경제정보 포함) 수집·예방·적발 및 범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담당
수사과	· 사건발생시 지문감식 등 현장조사·수사 및 구류장 관리
예심과	· 수사과 및 감찰과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여죄추궁과 심문
교통과	· 교통질서 유지 등 교통관련 업무 담당
주민등록과	· 공민증 발급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담당
호안과	· 화재, 폭발 등 사고 예방 관련 업무 담당 * 교통과가 없는 보안서는 교통과의 업무까지 관할
2부	· 여행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
경리과	· 노임 지급 등 재정업무 담당
통신과	· 유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관련업무 담당
후방과	· 각종 보급품 및 자재 공급 담당
총무과	· 기밀문서(기요문건) 수발 등 행정업무 담당
작전과	· 반항공업무 및 작전 업무 담당
국토과	· 도로, 강·하천 등 관리업무 담당
반탐과	· 탈북자 적발, 조사 및 반간첩투쟁 선전사업 담당 * 주로 국경지역 보안서에 편제되어 있음

북한경찰의 계급, 인원, 지방조직 및 보안서의 편제와 임무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40면.

<표 3-3> 북한경찰의 계급구조<sup>10)</sup>

원수	차수	장령	군관		하전사		
					사관		병·전사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초기특무상사 초기상사 초기중사 초기하사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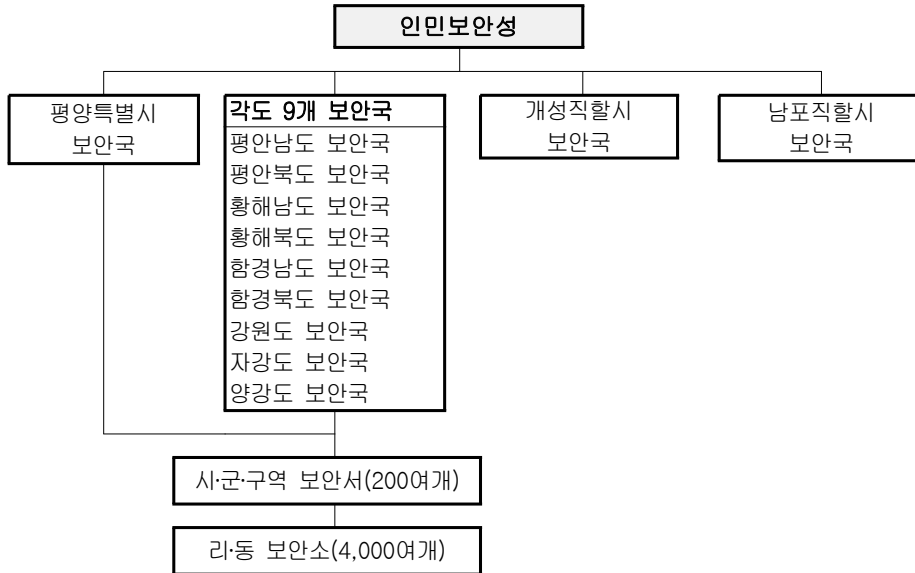
<표 3-4> 북한경찰의 인원규모<sup>11)</sup>

구분		인원
일반 보안원		8만명
조선인민경비대	7총국	8만명
	8총국	4만명
	경비훈련국 및 기타부서	1만명
소계		21만명
일반노동자(사민)		10만명
총계		31만명

10)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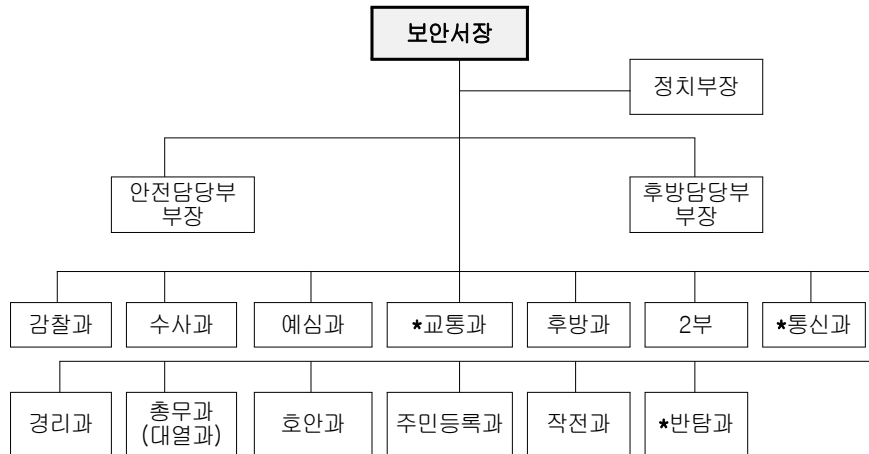
11) 위의 글, 41면. 여성보안원은 통신원, 부기원(경리업무), 주민등록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표 3-5>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 출처: 이상 심익섭·신현기 외 공저, 『북한정부론』(서울: 도서출판 백산자료원, 2002), 186면 참조.

<표 3-6> 시·군·구역 보안서 편제



\* 산하 각과 중 \*표시는 시·군·구역 보안서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음.  
\* 출처: 심익섭·신현기 외 공저, 『북한정부론』, 58면.

## 나. 국가안전보위부<sup>12)</sup>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에 해당, 약칭 보위부)의 창설에 대한 공식 문건이나 기록을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만, 1945년 11월 19일 김일성이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의 보안간부훈련소를 시찰했다고 하여 이날을 보위부창설일로 정하고 있다. 해방공간의 혼란스런 시기에서 ‘친일주구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사회질서를 정비할 목적으로 북한이 조직했던 보안간부 훈련소들이 재관소·검찰소·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의 전신이 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8.15해방 이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안전국의 정보담당 부서로 출발하여 주로 ‘친일주구와 반동세력’을 숙청·진압하고 사회치안 유지를 담당하였다.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이 창설된 직후, 내무성(현 인민보안성)의 정보국으로 북한 내의 반동세력 진압 및 체제안정에 주력하였다. 1962년부터 1973년 4월까지의 내무성의 후신인 사회안전부의 정치보위국으로 존재하면서 간첩과 반체제인사 색출을 담당하는 동시에 대남공작을 주도하였다. 1973년 2월 1일 김일성이 “사회안전부는 치안사업·질서유지만 담당하고 간첩잡이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치보위부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당의 1개 부서입니다”라고 지시함에 따라서 1973년 5월 ‘정치보위국’을 분리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승격시켰다.

1980년대 초 김정일이 “국가정치보위부가 당의 영도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위에 군림한다.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왜곡집행하여 애매한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여 중앙당의 집중검열을 받고 국가정치보위부를 국가보위부로 개칭했다. 1984년 11월 24일경 김정일이 국가보위부에 “당의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지시한 후 주민들의 일반 사상동향을 당기관에서 장악하고 국가보위부는 반탐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그 역할을 제한하기도 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에 따라 남한을 견제하고 국가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12)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49-52면.

등 일련의 변화를 보였다. 이 시기 국경봉쇄 부서와 해외 반탐정국의 모략 부서가 신설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 직속으로 25국<sup>13)</sup> 1실 1총국과 본부요원 8천여 명을 포함하여 시도 지도부 요원 등 5만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 체계로는 부장아래 수명의 부부장이 있고 산하의 행정체계에 따라 도(직할시)·시(군·구역) 각 기관기업소별로 보위기관이 조직되어 있으며, 지방의 리(동), 군부대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보안성과 더불어 대주민 사찰기관으로 김부자 비방사건 수사 및 정치범수용소 관리, 반국가 행위자 및 대간첩수사, 공항·항만 등의 출입 통제 및 수출입품 검사와 밀수 단속, 해외정보 수집·공작, 호위사령부의 협조아래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간부 호위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9국 인민보안성 담당국은 인민보안성 요원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진수의 사망(1987.8) 이후 김영룡이 대행하다 1998년 3월 외화별이 관련 수뢰혐의로 숙청된 후, 후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9년 4월 14일 김일성 97회 생일(4.15)을 앞두고 최고사령관(김정일) 명령으로 금번에 국방위원장이 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종합(수석)부부장도 우리나라의 소장에 해당하는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하였다.<sup>14)</sup>

평양기술대학(국가안전보위부 정치대학)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보위부장이 대학장을 겸임하고 있다.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가 사회안전성에서 독립하던 시기 사회안정부 정치대학에서 보위부 정치대학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학은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1996년경 평양시 형제산구역으로 이전한 후 1998년경 청사건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과정은 6개월에서 5년 과정까지 있다. 6개월 과정은 현직 요원들에 대한

13) 2002년 탈북한 최일성(가칭)은 국가보위부 본부청사는 평양시 서성구역 와산동에 있으며, 산하에 1국부터 22국이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간첩이나 반정부활동 적발은 1국에서 담당한다. 3국 해외반탐국으로 해외정보 수집하고 6국이 정치법관리소 관리국이다(최일성(가명),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태와 북한을 움직이는 사조직 ‘김일성고급당학교’ 동기모임”, 『북한』, 2008년 8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154-166면).

14) <조선중앙방송>, 2009년 4월 14일자.

재교육과정으로 시·군보위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2년 과정은 일반 사회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3년 과정은 35세 이하의 현직 지도원급 요원들과 신입 지도원을 대상으로 한다. 5년 과정은 해외에 파견할 요원들과 대외사업 분야에서 종사할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10-15명 단위로 3개월간 함북 회령에서 종합실습을 한다. 실습내용은 탈북자 색출과 송환활동 지원, 위장 탈북자 양성 및 한국인 대상 정보 수집과 포섭 등의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정보사업, 수사의 전문교육, 정치·사회·과학·외국어 등 기초교육과 사격·운전·무술 등으로 되어 있다. 졸업 요원들은 3개월간의 현지 실습기간을 거친 후 보위부간부부에서 간부 선발·배치 원칙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출신 지역이 아닌 타지방으로 배치된다.

‘1개월 강습소’는 평양시 삼석구역 성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 목적은 현직 보위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실무 학습, 시기별 국가정책 방향 하달 등을 하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강습기간을 1개월로 진행하였으나, 그 후 여러 사정으로 현재는 강습기간을 13일로 하고 있으며, 현직요원들은 무조건 1년에 1회 ‘1개월 강습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소집교육은 평양 또는 지역별로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있다. 평양 소집교육은 1998년 이후 전무하나 간부들이 교육 관련 해외출장을 선호하는 관계로 지역회의는 지속되고 있다. 해외파 소집교육시에는 해외반탐정국장, 정치일꾼 1명, 담당부서 관계자 1명이 출장을 간다. 지역회의는 유럽(불가리아), 아프리카(카이로), 아시아(말레이시아), 중국(북경, 심양, 단둥, 연길),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등에서 개최된다.

## 다.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sup>15)</sup>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군의 반혁명음모를 감시하는 부대이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이라면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군

15)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52-54면.

정보기관이다. 다시 말해 보위사령부는 군을 대상으로 반체제 인물들을 색출, 제거하는 활동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계급적 토대가 나쁘고 사상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인민군을 감시하고 숙청한다.

보위사령부는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하는 일도 담당한다. 군관(장교)과 장령(장군)들이 사용하는 전화를 도청하고 이들의 자녀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주민등록 문건을 발급한다. 군사보안을 위해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민등록업무는 인민보안성에서 관할하지 않고 보위사령부에서 담당한다. 중·러 국경지역 및 휴전선과 인접한 전연지역(전방지역)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상황을 점검하며 군 복무 기피자를 색출하는 일도 한다.

김일성은 1948년 인민군을 창설할 때부터 반탐(反探)기관인 안전기관을 군에 조직하였다. 6.25 이후 안전기관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1956년과 1968년 군사쿠데타를 적발하고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총책 허봉학과 같은 ‘반체제 분자들을 숙청’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주도했다. 1968년 국가안전보위부(당시 국가보위부)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던 인민군 보위기관에서 분리하여 ‘인민군정치안전국’으로 독립되었다. 인민군정치안전국은 1970년대 중반 ‘인민군보위국’으로 개칭되고, 1995년 12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국경경비대를 흡수하면서 1996년 보위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보위사령부 최고 책임자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혁명 1세대인 태병렬 중장(1997년 2월 사망)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는 한영옥 소장(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1988년 사망)이, 198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는 이남선 중장(전 5군단 보위부장)이,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원응희 대장(전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14일 김일성 97회 생일(4.15)을 앞두고 최고사령관(김정일) 명령으로 인민군 보위사령관인 김원홍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되었다.<sup>16)</sup>

보위사령부의 조직은 11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부 조직

16) <조선중앙방송>, 2009년 4월 14일자.

계획부는 전체업무의 통제와 군단과 사단 이하 각 보위부대로 하달하는 지휘 문건 발송, 2부 수사부는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 색출, 3부 예심부는 2부가 색출한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심문, 4부 감찰부는 탈영과 군사 물자 절취·횡령 등 군 관련 범죄 담당, 5부 사건종합부는 2·3·4·6부가 다루는 사건을 분석·평가, 6부 미행부는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한 범죄자 추적, 7부 기술부는 장령들의 집과 자택 그리고 주요 호텔의 전화도청, 8·9·10부는 군수공장과 인민무력부 내의 특수기관을 담당하고 군관들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 관장, 11부 국경검열초소는 외국에 파견되는 무관과 인민무력부 산하 외화별이 일꾼의 감시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간부부는 보위 군관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일을 맡는다. 정치부는 인민군 보위사령부원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곳으로, 보위사령부 속의 보위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다. 인민군보위사령부 직할 기관으로는 과거 국가안전보위부 휘하에 있던 3개 국경 경비 여단과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를 맡는 경호대가 있다. 이외의 직속기관에는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 검열 초소 60여 개와 군인들의 편지를 검열하는 검열대(1개 대대의 여군으로 구성) 그리고 보위부대원을 양성하는 보위대학 등이 있다. 모든 북한군 부대에는 보위군관과 비밀 정보원이 있다. 군단과 사단에는 군단 보위부와 사단 보위부가 있어,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연대와 대대에는 보위 군관이 1~3명씩 파견된다. 군사분계선 내에 근무하는 민경중대원들의 월남을 막기 위해 소대와 중대 내에도 보위군관을 배치하고 있다.

보위부 위·군관 선발은 비밀정보원 출신 사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들은 인민군 보위대학(남포직할시 강서구역)에서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중위나 상위 계급으로 보위군관에 임명된다. 보위군관과 비밀정보원들은 6하 원칙에 따라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요주인물의 일거수일투족과 접촉자를 감시해 사건화 한다. 보위대학은 보위부원들에 대한 보수 교육도 담당하게 되는데, 대대를 담당하는 보위군관은 보위대학 재직반에서 2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연대

이상 부대의 보위군관이 될 수 있다. 보위사령부와 각 군단 보위부 책임자(중장·소장)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위대학의 2년제 연구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라. 검찰소<sup>17)</sup>

북한헌법에는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과거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재판소를 검찰소 앞에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앞서 나열하여 검찰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은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와 더불어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sup>18)</sup>

<표 3-7> 북한의 사법기관



\* 자료: 『2009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141면.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동일하게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1998년 개정된

17)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54-56면.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제2조에는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147조). 중앙검찰소는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제’이다(헌법 제151조). 검찰 동일체제는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당의 사업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그리고 당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그 산하에 일반감시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부서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고(헌법 제148조),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헌법 제91조 11항).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149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2조). 도(지할시)검찰소에는 일반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가 있고, 그밖에 기요과와 경리과가 있다.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3명 내외의 검사와 서기를 두고 있다.

검찰소의 임무(헌법 제150조)는 첫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둘째,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셋째,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1998)이라는 단행법령을 제정하여 헌법상의 감시 임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검찰감시법 제1조)으로,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

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동법 제2조)하는데 있다. 결국 검찰감시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국 곳곳에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하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북한의 검찰은 우리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같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 검사는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sup>20)</sup>하고,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동법 제7조)로서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 기능<sup>21)</sup>과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sup>22)</sup>(동법 제9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제2절 형사사건의 관할

북한의 형사사법처리 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4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형사절차에 따라 담당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는 보안원이나 검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기관의 해당기관 수사원이나 필요시 검사가 담당한다. 예심은 보안원이나 검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한다. 그리고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이외 검사는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검찰감시법 10-12조). 북한은 일반범죄와 정치범죄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담당 형사처리 기관도 다르다.

19)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55면 재인용.

20) ‘검찰감시법’(1998년) 제4조에서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균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21) ‘검찰감시법’(1998년) 제12조에서 “검사는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체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22) ‘검찰감시법’(1998년) 제9조에서는 “검사는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일반수사·일반예심과 특별수사·특별예심으로 구분하여 담당 수사원이 수사한다.

<표 3-8> 형사처리 담당 관할

구분	관할 기관	1999년과의 비교
수사	· 해당기관의 수사원 · 필요시 검사	·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기관의 수사일군 · 필요시 검사
예심	· 인민보안성, 검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	· 사회안전성·검찰·국가안전보위부 기관의 예심원
기소	· 검사	· 검사
감시	· 검사는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	

<표 3-9> 수사 및 예심 기관과 관할 사건

구분	범죄 사건	담당 기관	
수사 (수사원)	일반수사 (형사소송법 제122조)	· 일반범죄 사건	· 인민보안기관
		·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 안전보위기관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 사건	· 검찰기관
	특별수사 (형사소송법 제123조)	·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 사건	· 철도인민보안기관
		·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	
		·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 철도 검찰기관
	· 군인, 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 군사검찰기관	
예심 (예심원)	일반예심 (형사소송법 제124조)	· 일반범죄사건	· 인민보안기관
		·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 안전보위기관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 사건	· 검찰기관
	특별예심	· 군사상 범죄사건	· 군사검찰기관

(형사소송법 제125조)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	·철도인민보안기관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철도 검찰기관

\* 자료: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63면.

## 1. 수사의 관할

### 가. 일반수사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정치범죄)의 수사는 국가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담당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담당한다(형사소송법 122조). 특히, 사회범죄자들과 특수기관 종업원들이 공모하여 범한 범죄는 관할지역 특수기관 법 일군들과 사회 법 기관 수사원이 연합지휘부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수사한다.<sup>23)</sup> 여기서 일반 범죄사건이란 특수기관(군인, 군부대) 종업원들이 저지른 일반범죄 사건을 제외한 일반범죄사건을, 행정경제사업이란 행정경제기관들이 국가의 법과 행정관리규범에 따라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들을 조직하고 집행하기 위한 활동을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검사는 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일반범죄사건일 경우 예심원에, 반국가범죄사건은 해당 예심기관에 각각 넘겨야 한다(검찰감시법 제35조).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88면.

## 나. 특별수사

특별수사기관에는 철도인민보안기관 및 철도검찰기관과 군사검찰기관이 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이 담당한다. 군인 및 군사기관 종업원과 보안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이 담당한다(형사소송법 123조).

그러나 군인이나 군부대를 비롯한 특수기관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질러 사회법기관 수사원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수사, 적발되는 경우 그 범죄가 군사 활동이나 군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범죄 사건이면 사회법기관에서 사건의 주모자와 공모자를 정확히 밝혀낸 다음 범죄자와 수사기록을 관할에 따라 해당 군부대나 특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하고, 해당 군부대나 특수기관은 넘겨받은 사건의 처리현황을 사회법기관에 회보하여 주어야 한다.<sup>24)</sup>

## 2. 예심의 관할

### 가. 일반예심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을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검사의 승인 하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 사실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4조).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국가적 및 군사적 비밀을 보장하여 사건의 전모를 신속, 정확하게 밝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 범죄자들이 군인이나 군부대를 비롯한 특수기관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에

24) 위의 책, 388면.

대해서는 연합지휘부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예심하게 한다.<sup>25)</sup>

그리고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은 일반범죄사건을 담당하는데 비해 국가안전보위기관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기관의 예심원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을 담당한다(동법 제124조).

## 나 특별예심

특별예심기관에는 철도인민보안기관 및 철도검찰기관과 군사검찰기관이 있다.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은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을 담당하며,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은 철도부문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예심을 한다. 그리고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은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내의 일반범죄사건, 군인·보안원·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에 대해 예심을 한다. (동법 제125조).

이외에 일반 사회인이 저지른 범죄가 군사비밀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사검찰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하며, 이 경우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 예심원은 범죄자와 범죄사건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군사검찰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철도종업원이 철도운수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범죄를 단독 또는 일반 사회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경우에 사건의 전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거나 사건을 분리할 수 없으면 그것을 적발한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예심을 담당한다.<sup>26)</sup>

25)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387면.

26) 위의 책, 388면.

## 제4장 북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절차

북한의 형사처리 단계에서 수사와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이나 검찰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소속의 수사원과 예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인민보안성)과 검찰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인민보안성 수사부서(감찰 및 수사)는<sup>1)</sup> 각종 일반범죄 사건 수사(범죄자 체포, 현장검증, 혈액·필적감정)와 도·직할시 보안국의 과학수사활동의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민보안성 수사부서는 중앙당에서 하달하는 ‘김정일 방침사건’을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범죄사건에 투입할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 수사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수사원 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따르면 감찰부서와 수사부서 간에 업무관할이 나누어져 있으나 형사사건의 특성상 그 구분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해당기관이나 범죄정보를 입수한 부서에서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sup>2)</sup>

인민보안성 감찰부서는 범죄정보 수집 및 적발, 범죄예방, 각종 범죄사건 조사 후 예심 인계, 각종 포고령 등 지시내용 전파 및 이행실태 감독, 각종 ‘그루빠’<sup>3)</sup> 지도·감독,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에 감찰지도원 파견 등 감찰업무 지도·감독,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기획수사 및 감시·감독 등을 수행한다.

인민보안성 예심부서는<sup>4)</sup>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 예심업무 지도·감독,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범죄자 체포, 감찰·수사 부서에서 인계된 범죄자 및 범죄

1) 북한 경찰의 수사는 남한의 경찰서에 해당되는 인민보안서의 수사과와 검찰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2) 손영조, 앞의 논문, 38면 재인용.

3) 영어의 그룹(group)을 의미하는 용어로 각종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비사회주의 그루빠’, ‘6.4 그루빠’, ‘유동그루빠’(이동단속반) 등이 있다.

4) 북한 경찰의 예심은 남한의 경찰서에 해당되는 인민보안서의 예심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혐의자에 대한 예심수사(여죄 추궁, 범증 확보), 사건기록의 검찰소 송치, 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까지 구류장 설치운영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감찰 및 수사 부서들의 유죄확정 증거자료와 물적 증거들에 대해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건처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형사감정부서는 인민보안성 수사국 및 산하 도·지할시 보안국에서 의뢰한 사건 증거자료(지문·혈액·정액·모발 등) 및 토지·기계·전기 등 각종 기술 분야의 감정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찰기동대와 유사한 기동순찰대는 집단사건의 예방 및 진압, 순찰활동 등 예방치안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사감찰·예심 부서의 범인검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범인의 주거지나 은신처에 잠복하거나 주거수색 등 검거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5)</sup>

북한의 인민보안기관의 범죄자의 위법행위 처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들 형사 관련법이 당의 규약이나 수령의 교시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전문(1998.9.5 개정)과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등에서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채택)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

- 
- 5) 기동순찰대는 승용차, 지프,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보유하고, 무전기, ‘68식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전원은 무도 유단자, 사격 우수자,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외국(중국 등)으로 원정출장 업무도 수행한다(손영조, 앞의 논문, 38면).
- 6)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조(사명)는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 예심, 기소, 재판(판결) 단계를 거쳐 형사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중략) …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1980년 10월 13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개정).

## 제1절 수사원의 임무와 수사절차

### 1. 수사원의 임무

수사원은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7조).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동법 제 138조).

수사원은 예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첫째,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둘째,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셋째,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넷째,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 쫓기고 있을 경우 다섯째,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동법 제 143 조). 그리고 범죄자가 적발되면 바로 그 사건을 예심에 넘겨야 한다. 이는 남한의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대한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동법 제143조). 검사

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범죄혐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동법 제144조).

## 2. 수사의 절차

### 가. 수사의 시작

#### 1) 수사시작결정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한다(형사소송법 제29조). 수사의 시작은 수사원이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고에 기초하거나, 해당 법기관(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이 직접 수집한 범죄 자료(동법 제30조)를 얻었을 때에는 그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동법 제135조). 형사사건 제기절차의 첫 소송문건인 수사시작결정은 수집된 자료가 구체적인 범죄의 표징을 갖추고 재판에 넘겨야 할 정도의 범행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범죄의 이행 또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의 기각사유<sup>7)</sup>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수사원이 아닌 예심원이나 검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확인한 사안과 재판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안 등의 경우는 이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때 수사원은 이첩 받은 예심원의 결정서나 재판소의 판정서 등을 통해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7) 북한 형사소송법 제6절(형사사건의 기각) 제53조는 형사사건의 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제53조(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 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등이다.

보내야 하고(동법 제136조), 검사의 수사취소결정이 없는 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동법 제139조). 특히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 있고,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40조). 이때 검사는 수사시작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법 제53조) 수사시작결정을 취할 수 있다(동법 제136조).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 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여한 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하거나 삭제, 보충한 곳은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동법 제82조).

## 2) 수사의 단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위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법 제30조에서와 같이 신고나 범죄 자료를 통해 시작한다.

### 가) 범죄의 신고 및 조서작성

첫째, 범죄에 대한 신고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고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인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이나 국가안전보위기관, 검찰에 스스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인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 검찰, 안전보위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현장과 사건해결에 의의 있는 물건이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범죄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말)로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둘째, 범죄 신고의 접수는 수사기관(인민보안기관, 검찰, 안전보위기관)의 의무로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 자료는 즉시 해당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동법 제34조).<sup>8)</sup>

셋째,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1개월 안에 신고처리 결과를 구두,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정도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신고자가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제35 조).

### 나) 범죄 신고조서 작성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를 받은 수사원은 신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고조서에는 신고접수 날짜, 신고 받은 자의 직장직위 및 이름, 신고 받은 장소, 소송법의 조항, 신고자의 신분관계(이름, 성별, 생일, 사는 곳, 직장직위),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알려준 형벌,<sup>9)</sup> 신고경위와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33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서면신고에는 공인 또는 명판이 찍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고조서는 필요치 않다. 신고내용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에도 허위신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접수는 우리나라의 경찰서 민원실과 같이 별도의 신고접수 부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 사법일군이 직접 신고를 접수 받는다.

<그림 4-1> 신고서 예문<sup>10)</sup>

#### 신고서

평안북도 스군 일용품수매상점 수매원 백남건의 경제생활과 최근 행동에서 의심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1986년 6월 16일밤 11시경에 수매원 백남건의 집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방안

- 8) 수사원은 접수한 신고자료가 타 관할인 경우는 '신고자료를 넘길데 대하여'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신고조서(신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기관으로 이첩한다. 접수한 신고내용 중 일부가 타 관할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첩시킨다. 신고내용에서 체포와 같은 긴급처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워 해당 기관에 우선 전화로 알려준 다음 신고조서를 이첩시킨다.
- 9) 형법 "제236 조(거짓 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에 불은 켜있었으나 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마당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뒤울안에서 말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니 백남건은 자기의 처와 함께 영소를 잡고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매우 당황해 하면서 내가 묻지도 않는데 <몸이 아파서 약을 써볼까 하고 집에서 기르던 영소를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방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것은 그의 집에서는 영소를 기르지 않은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1986년 6월 28일 18시경에 나는 군문화회관에 불일이 있어 읍농민시장옆을 지나가다가 백남건을 보았는데 그는 낫모를 사람에게(남자 35살정도) 자기의 가방에서 쥐색데트론양복 1벌과 나이론와이싸즈 1점을 꺼내여 그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다가(액수는 정확히 모름) 나를 보고 슬그머니 골목길로 달아나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백남건은 최근에 와서 가구들과 외투 등을 사들였으며 그의 집에서는 술놀이가 종종 벌어지는 등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백남건의 경제생활과 행동이 그 어떤 범죄행위와 연관되어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1986년 6월 30일  
 신고한 사람  
 평안북도 스군 읍 15반 김남천(<형사소송법> 제43~제44조 참조)

<그림 4-2> 신고조서 예문

**신고조서**

1986년 6월 24일 평안북도 스군경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44조의 절차에 따라 김연하의 신고를 받았다.

이름 김연하, 여자  
 생년월일 1942년 7월 8일(44살)  
 사는곳 평안북도 스군 읍 40반  
 직장직위 농기계공장 선반직장 노동자  
 지식정도 중졸

김연하는 예심원으로부터 거짓신고를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오늘 아침 7시 30분경에 저의 집 부엌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직장으로 나갔습니

10)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발간한 『형사소송법학습참고서』에 수사예심과 관계있는 각종 조서나, 수사서류 등을 기재하고 있다(미상, 『형사소송법학습참고서』, 김일성종합대학, 1989). 이하 수사 및 예심과 관련한 각종 예문은 동 책자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들 내용은 1976년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를 수 있다; 이하 예문 내용은 법원 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713-746면에서 재인용.

다. 그런데 오후 5시경 작업반장 이운호가 나에게 집에서 사고가 난것 같은데 빨리 가 보라고 하기에 집에 뛰어가보니 부엌문에 채웠던 자물쇠는 파괴된 상태로 부엌문고리에 걸여있었고 아랫방 옷걸개에 걸어두었던 저의 남편의 옷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복들과 텔레비존을 사려고 보관해 두었던 돈 1,500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옷방에 있는 이불장의 모서리와 한쪽벽채가 불에 타고 끄슬러있었습니다.

문; 당신의 가족들이 아침 몇시에 집에서 나갔으며 출입문들은 어떻게 채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답; 저의 남편 리광하는 아침 7시경 유치원에 다니는 순실이를 데리고 직장에 나갔으며 중학교와 인민학교에 다니는 순선이와 순희는 7시 30분경에 저와 함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옷방과 가운데방의 출입문을 모두 안으로 걸고 부엌문으로 나오면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문; 당신의 집에서 잃어버린 옷들의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답; 저의 집에서 잃어버린 옷들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트론양복 남자용 1벌(제끼형, 연한 쥐색, 릉직, 값150원)
- 모직양복 남자용 1벌(어른용, 흰색, 안은 미색인조공단, 신품, 값160원)
- 나이론와이샤쯔 1점(어른용, 흰색, 왼쪽앞가슴부분에 담뱃불에 의하여 콩알만한 크기의 구멍이 한 개 있는 중고품, 값50원)
- 모세타 1점(연한 풀색, 신품, 값60원)

그밖에 텔레비존을 사려고 책상우에 놓여있는 화장품통밑에 두었던 돈 1,500원이 없어졌습니다. 이 조서를 읽어본 바 내가 한 말이 옳게 씌어졌습니다.

신고한 사람 김연하  
예심원 최광선

## 다) 범죄자료

수사기관의 수사원과 예심원 그리고 재판소가 직접 범죄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방법은 군중과 담화, 검열, 검찰기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정보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수사원들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정보원<sup>11)</sup>을 관리하며, 이들을 통해 범죄 자료를 수집한다. 이외에도 규찰대<sup>12)</sup>나 인민반장을<sup>13)</sup> 통

11) 북한경찰(보안원)은 15-20여명의 정보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식량난 악화로 주민들의 사회범죄가 급증하자, 인민보안성 산하에 주민통제 보조기구로서 '규찰대'를 조직·운영하였다. 규찰대를 조직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식량 구입을 위한 타 지역의 수시 왕래로 유동인구 증가와 주민들간의 접촉 등이 빈번해지자 인민보안성은 "자본주의사상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활동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규찰대는 전국적으로 모든 리 및 1급 기업소 단위에 두고 있는데, 공장·기업소 근무자 등 특수부대 출신의 30대 세대

해 범죄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집한 범죄자료는 형사소송법과 사회안전단속법, 검사감시법과 같은 해당 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형사사건취급시작결정을 위해 고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안원이 야간순찰과정에서 거동 수상자를 단속 조사하여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밝혀서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제된 형식에 따라 고착되었다면, 그 단속문건은 수사시작결정의 단초가 된다.<sup>14)</sup>

## 나. 수사의 실행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규정은 대개 예심부분에 규정하여 예심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예심은 범위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수단이나 권한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1) 현장조사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이나 미해결사건(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일반범죄) 등 중요사건의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탈북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변사자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도보안국의 군의관이 검시를 담당하지만, 경우

---

군인(당원)을 10여명씩 선발하여 규찰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원소속 직장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액 생활비를 지급받고, 배급이나 노임자급 등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다. 군 보안서 감찰과 지도원이 이들을 관리한다(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 대책에 관한 연구』, 149면)

13)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인민반' 조직을 통해 감시·통제하고 있다. 인민반은 가장 기초단위 조직으로 20-4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70세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동(洞) 밑에 반(班)에 해당하는 인민반을 책임진 '인민반장'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제1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반장은 유급일꾼으로 인민반 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활동하며, 2007년 3월 '전국인민반장대회'를 계기로 위상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인민반장은 주민들의 보고·개별 방문 접촉을 등을 통해 인민반 주민들의 동향 파악, 보위부·보안서(경찰서)·당에 일일보고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외에도 행사동원, 강연회, 생활총화(월2회) 등 인민반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당·보위부·보안서·동사무소 등 기관에서 요구하는 돈을 인민반에서 걷어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14) 손영조, 앞의 논문, 43면.

에 따라서는 수사과장이 직접 할 수 있다. 부검은 검사 지휘 하에 실시하나 검사가 부재중일 때는 수사과장이 대신하기도 한다. 타살혐의에 대해서는 도보안국 감식(鑑識)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2) 수사그루빠 설치

범죄사건은 대부분 수사원 1명이 담당하지만, 살인과 같은 중대사건의 경우 해당 시·군 보안서에서 최초 ‘수사그루빠’를 설치하여 합동수사를 한다.

‘수사그루빠’ 요원은 감찰지도원, 수사지도원, 호안과 지도원(화재발생시)으로 구성한다. 즉, 각 부서에서 전문요원을 소집하여 통합·운용하는 합동수사본부라 할 수 있다. 최초 조직된 ‘수사그루빠’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급부서에서 다시 조직한다. 새로 조직된 ‘수사그루빠’는 최초 수사 요원 중 필수요원 1-2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도내 최정예 수사요원을 선발하여 구성하는데, 이 경우는 살인, 은행습격, 중요 대상물 방화, 시·군 보안서부장급 이상의 간부 테러, 수감 중 탈주 사건 등의 주요 사건이 발생할시 해당된다.

‘수사그루빠’는 비상설기구로서 사건발생 당시만 시·군별로 구성하여 해당 시·군 보안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활동한다. 해당 수사원이 수사그루빠에 동원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수사 해결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급 이상 보안서별로 ‘수사그루빠’를 조직 편성할 때마다 호수(號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시·군 보안서 관할내의 대규모 사건 발생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5호 ‘수사그루빠’는 15번째 ‘수사그루빠’를 조직했다는 의미이다.<sup>15)</sup>

## 3) 과학수사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 확인되어야 사건 해결

15) 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153-154면.

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88조). 증거 수집은 균중의 힘에 의거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의 제출과 수색, 압수, 검증, 검진, 심리실험, 식별 같은 형사소송행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94조). 그리고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동법 제96조).

#### 4) 진술 청취와 수색·압수

형사소송법상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37조). 수사원이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자 적발에 필요한 증거물이나 증거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수사원이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에게 보여주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사원이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나 범죄자를 보거나 들은 자들로부터 범죄자 적발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찰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진술자는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동법 제13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원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수색, 압수할 수 있다. 압수와 수색은 증거물과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강제조치로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동법 제100조).<sup>16)</sup> 압수와 수색은 예심에 해당(동법 제3장 예심 7절 수색과 압수)되나, 수사 단계에서 당장 수색이나 압수를 하지 못하면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증거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이 수행할 수 있다(동법 제141조). 특히 형사소송법 제143

16) 입회인은 법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회인 2명이 참여하지 않은 증거물 수집·고착은 증명력이 없다. 다만, 증거물의 발견, 제출받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으로 입회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입회인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손영조, 앞의 논문, 47면).

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수사원은 검사의 사전승인 없이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자의 거처를 수색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sup>17)</sup>

## 5) 수사협조

북한의 수사기관이나 수사원은 원활한 수사 활동을 위해 관할구역 밖에서의 수사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첫째,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동법 제139조). 검사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범인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행위에 대한 결정을 승인 또는 취소하거나 그 소송행위에 대한 검사의 참가를 자기 관할지역의 검사에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검찰감시법 33조).

그러나 자기관할 지역의 검사에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예견할 수 없는 사유나 지리상의 이유 등)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지역 밖의 검사에게 소송상 강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때는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현지 수사원으로부터 지리안내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현지 순찰기동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40조). 이 경우는 제한지역, 위수구역, 지리상 오

17) 형사소송법 제 143 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갈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나 긴급대책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구역 수사기관이나 수사원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는 ‘수사의뢰결정서’에 수사결정일,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소송법 조항, 사건의 내용과 알려야할 구체적인 사실, 수사의뢰 기관명,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공인과 명판을 날인해야 한다. 압수와 수색이 필요할 경우는 압수수색 결정서와 같은 해당 법적근거 문건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수사를 끝낸 즉시 수사의뢰기관에 회보해야 한다.<sup>19)</sup>

## 6) 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자기 관할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사건은 해당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동법 제122조). ‘수사사건이송결정서’에는 날짜,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넘기는 사유, 소송법 조항, 해당 수사기관명과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공인, 명판 날인해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경우는 이송결정을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이송해야하며, 이 경우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 그리고 범죄혐의자나 범죄자가 구금되어 있을 경우의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서’ 작성은 수사사건이송결정서와 같은데,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서’에 구금시킨 이유와 날짜, 이감기관을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사건이송 결정서 등본을 보내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142조).

## 7) 체포 및 구금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만이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예심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종전의 체포에 대한 사전검사승인 절차가 체포영장제도로 바뀌었다. 즉, 체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05면.

19) 손영조, 앞의 논문, 49면.

포에 대한 검사의 사전승인 서류가 체포영장 서류로 대체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사유(동법 제179조)<sup>20)</sup>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동법 제180조)<sup>21)</sup>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사전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만(동법 143조)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수사원이 동법 제143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sup>22)</sup>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44조). 구금결정서는 구금일시, 구금한 수사원의 이름과 직장, 구금 대상자의 신원(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장직위), 구금이유, 해당 소송법 조항, 결정 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공인, 명판 날인해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소의 공인, 명판을 찍어야 한다.

검사의 구금결정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구금은 물론, 체포, 압수·수색 자체를 승인받지 못한 것이 때문에 체포한 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즉시 석방해야 한다(동법 제144조). 이 경우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103조,<sup>23)</sup> 제104조,<sup>24)</sup> 제105조<sup>25)</sup>에

20) 형사소송법 제179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에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21) 형사소송법 제180조(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영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22) 이때 검사는 구금승인 뿐만 아니라 긴급한 체포,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143조)까지 포함한다.

23) 제103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관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관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 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24) 제104조(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동법 제143조)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는 검사가 ‘구금취소결정서’<sup>26)</sup>를 작성하여 수사원에게 보낸다.

구금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동법 제144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수사원이 ‘구금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구금을 취소해야 하는데, 수사원의 구금취소결정은 구금취소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구금된 자에게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의 중지사유’(동법 제43조)<sup>27)</sup>가 있을 경우는 구금을 중지하며 ‘형사소송중지의 해지·취소’(동법 제52조)<sup>28)</sup>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145조).

현행법의 체포와 같이 수사시작결정 전에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할 경우는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의 진술이나 증인진술을 통해 범죄가 있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사시작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수사취소결정(동법 제55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안전단속법과 같은 행정법규에 따라 제재와 처리는 가능하다. 특히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제183조).

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5) 제105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증거물을 몰수하며 그밖의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판결서, 판정서, 사건기각결정서, 사회적교양처분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구금결정서는 일시, 검사의 직장과 이름,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직장 및 이름, 형법조항, 구금사유, 취소사유와 결정내용, 소송법 조항을 게재한 후 검찰소의 공인과 명판을 찍어야 한다.

27) 형사소송법 제43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는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사협의회가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28) 형사소송법 제52조(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는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형사사건 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라 규정하고 있다.

<그림 4-3> 범죄혐의자체포통지서 예문

**범죄혐의자체포통지서**

형사소송법 제54조에 의하여 1986년 10월 20일에 체포한 범죄혐의자를 형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이름 백남건, 남자  
생년월일 1935년 7월 3일(51살)  
주소 평안북도 스군 읍 35반  
직장직위 평안북도 스군 일용품수매상점 수매원  
체포근거

스군안전부 안전원 신창선은 1986년 10월 20일 20시경에 스읍농민시장으로부터 북쪽으로 50m 떨어져있는 골목길에서 백남건이가 ≡탄광로동자 홍진국(무소속 44살)에게 데트론양복 1벌과 나이론와이샤쯔 1점을 200원을 받고 넘겨줄 때 이것을 본 피해자 김연하가 범죄자라고 가리키므로 그를 현장에서 범죄혐의자로 단속하여 체포하였다.

평안북도 스군안전부장 추정룡

<그림 4-4> 신고조사결과를 알림에 대하여 예문

**신고조사결과를 알림에 대하여**

1986년 6월 25일 당신이 제기한 신고의 내용을 조사확증하고 이해 7월 5일 백남건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도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평안북도 스군경찰소 소장 정호남  
1986년 7월 7일

**다. 수사의 종결**

수사원의 수사시작결정으로 시작된 수사는 사건을 예심에 넘김으로써 종결된다. 수사종결은 형사사건취급시작을 알리는 소송행위이라 할 수 있다. 수사원은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서’<sup>29)</sup>를 작성하여 단위 및

29) 범죄사건을 넘기는 결정서는 일시, 담당 수사원의 직장과 이름, 조사확인된 범죄내용과 소송

부서책임자의 비준<sup>30)</sup>을 받은 후 수집한 증거물과 기타 증거자료 등도 사건기록과 함께 해당 예심기관으로 즉시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범죄자가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불명확할 때에는 체포하여 넘기고,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건기록만 넘긴다(동법 제 146 조).<sup>31)</sup>

## 라. 검사의 수사감시

검사는 수사원의 수사에 참가하는 방법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적 감시를 할 수 있다(동법 제 147 조). 즉, 전자는 검사가 수사 활동(현장검증, 수색, 압수, 식별 등)에 참가하여 해당 소송법에 규제된 원칙과 방법, 절차대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sup>32)</sup> 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정서와 진술서 등 소송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sup>33)</sup>

검사는 감시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방향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동법 제 147 조). 수사기관으로부터 결정서 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법 조항과 결정내용, 넘길 예심기관명을 기록한 후 단위 및 부서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0)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길 때 중앙 기관에서는 해당부서의 책임자, 도(직할시) 및 시(구역)·군 기관에서는 기관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급 아래 기관 책임자는 비준할 수 없다.

31)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실무상으로는 시(구역)·군 보안서의 경우, 수사과장과 보안서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보안서장은 이를 시(구역)·군 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예심에 넘긴다고 한다. 안전위원회는 당의 책임비서와 행정부장, 검찰소장, 보안서장, 보위부장, 인민위원회 행정 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되며, 시(구역)·군 안전위원회의 경우 통상 보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만일 안전위원회 비준이 부결되면 사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체포되어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는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의 경우 범죄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이 안전위원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예심원에게 범죄사건이 이관되는 대로 석발조치와 함께 공민권을 박탈당하여 공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고 한다(손영조, 앞의 논문, 54면 재인용).

32) 이때 수사원은 현장검증, 수색, 압수 등과 같은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기 전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33) 이 경우 검사는 수사기관 내부사업 문건이나 행정적인 조사문건(수사시작결정 근거로서 사건 기록에 첨부하는 문건은 제외)은 열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와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의 사유로 신청이나 의견이 제기된 경우는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으나, 검사가 수사에 대한 감시를 이유로 증인이나 범죄혐의자와 범죄자와 같은 소송관계자를 따로 만날 수 없다.

있다(동법 제 136 조). 즉, 검사가 수사원의 결정서 취소나 구금·구류된 자의 석방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밝힌 취소결정서나 지시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찰기관의 공인과 명판을 날인하고, 그 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이때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 147 조). 그러나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동법 제177조), 체포, 구류처분의 사유(동법 제179조), 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동법 제216조)에 어긋나는 검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집행하지 않고 상급 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절 예심원의 임무와 예심절차

북한의 형사소송법 특징 중 하나는 제7장에 예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예심의 임무와 기간’,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 추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 1. 예심원의 임무

예심의 시작은 예심원의 의무이다. 수사원이 이첩한 사건을 배당 받은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부터 예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심은 인민보안기관, 검찰, 국가보위기관,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1조). 이외에 특별 예심기관으로 군검찰기관, 철도인민보안기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제도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에 대해 예심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

심 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국가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하고,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동법 제124조). 그리고 사상 범죄사건과 군대(軍隊)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하고,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철도부문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한다(동법 제125조).

## 2. 예심의 절차

### 가. 예심의 시작

#### 1) 예심시작결정

예심원은 수사원으로부터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다른 범죄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동법 제157조). 예심시작결정서는 예심의 결과에 대하여 예심원이 법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 문건인 동시에 예심을 시작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소송문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예심원이 바뀌거나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마다 각각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심시작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제기된 자료, 소송법 조항, 결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158조).

## &lt;그림 4-5&gt; 예심시작결정서 예문

**예심시작결정서**

1986년 10월 22일 평안북도 사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이해 7월 5일 사군검찰소 소장이 제기한 백남건의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의 예심이 나에게 맡겨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백남건의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을 넘겨받아 예심원을 시작한다.
- ② 이 결정서등본을 사군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광선

**2) 형사책임추궁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은 범죄혐의자를 정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피심자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예심원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예심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기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해야 한다.<sup>34)</sup>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범죄혐의 입증 자료가 밝혀진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후 곧바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심원이 예심활동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결정할 수도 있다. 동 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날짜, 피심자의 이름, 적용할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동법 제158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변호인 선정권리를 공지해야 하며(동법 제 159 조), 형사추궁결정서등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등

34)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 확인되어야 사건 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8조). 증거의 종류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 등이 있다(동법 제89조).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93조).

본으로 통보해야 한다(동법 160조). 예심과정에서 피심자의 범죄사실, 적용 형법 조항이 변경, 취소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그에 따라 형사책임추궁변경(추가, 취소)결정서를 다시 작성하고, 피심자와 검사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다시 해야 한다(동법 제161조).

<그림 4-6> 형사책임추궁결정서예문

<p><b>형사책임추궁결정서</b></p> <p>1986년 10월 25일 평안북도 사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수집된 증거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백남건은 묘시와 사군 등지에서 수매원으로 일하면서 1983년 3월부터 1986년 6월까지의 기간에 개인재산 2,500여원분을 훔치거나 파손시켜왔다.</p> <p>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p>① 백남건을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 사건의 피심자로 확정하고 그에게 이 결정을 알려준다.</p> <p>② 이 결정서 등본을 사군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p> <p style="text-align: right;">예심원 최광선</p> <p>1986년 6월 25일에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피심자 백남건</p>	
---	--

<그림 4-7> 형사사건 제기결정서 예문

<p><b>형사사건제기결정서</b></p> <p>1986년 7월 5일 평안북도 사군 검찰소 소장 정호남은 사읍 40반 김연하의 신고조서 3매, 현장검증조서 5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1986년 6월 24일 15-16시사이에 사읍 40반 김연하의 집에서 부엌 출입문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마스고 방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자는 집이 비어있는 틈을 따서 데트론 양복 1벌을 비롯한 400여원분과 현금 1,500원을 훔쳤으며 피우던 담배꽂초를 방안에 버려 그로부터 불이 일어나 이불장과 벽체의 일부분을 파손시켰다.</p>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7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1986년 6월 24일 사읍 40반 김연하의 집에서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에 해당하는 범죄가 범해졌다는것을 인정하고 형사사건을 제기한다.

②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사군 안전부로 넘긴다.

사검찰소 소장 정호남

### 3) 예심사건의 이송 및 예심의뢰

예심원은 자기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예심해야 하는데(동법 제124조), 자기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은 긴급히 필요한 예심을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 예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피심자가 구류되어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53조). 예심원이 자기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sup>35)</sup>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하여야할 예심행위와 관련된 수색·압수문건 등 소송문건을 함께 보내야 한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55조).

### 4) 예심의 기간

예심의 기간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종결해야 한다. 예심기간의 산정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사건이 이송되어 이송받은 예심기관에서 예심시작결정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최초 예심시작결정일을 가산일로 한다. 노동단련형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sup>36)</sup> 예심을 연장하기 위하여 재판

35) 여기서 관할지역 밖의 개별적 예심이 필요할 경우란 제한지역이나 위수구역 안에서 예심을 하거나 관할 예심원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의미한다.

36) 북한이 2004년 4월 29일 개정된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로 기존의 '노동교화형'에 '노동단련형'이 추가됐다. 노동교화형은 우리의 징역에 해당된다. '노동단련형'은 불량배 등을 선도하기 위해 각 시·군 단위 인민보안서(경찰)에서 시행해 오던 '노동단련대'를 법적 형벌 조치로 끌어

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 안으로,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은 7일의 추가예심기간이 주어진다(동법 제151조). 재판소로부터 반송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예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예심기관은 예심원이 반송된 사건을 다시 접수한 날부터 가산한다.

예심을 2개월 내에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동법 제152조), 이 경우는 예심기일연장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sup>37)</sup> 즉, 예심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시(구역)·군 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더 연장(특히 복잡한 범죄사건)하기 위해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8조).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 확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동법 제150조). 특히 피심자 구류와 예심시작 날짜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구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피심자를 구류하지 않을 경우는 예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표 4-1> 신·구 형사소송법상 예심기간

구분	1999년 형사소송법 (제73조)	2004년 형사소송법 (제151·152조)	비고
■ 범죄사건	■ 2개월	■ 2개월	■ 동일
■ 노동단련형 범죄사건	■ 규정 없음	■ 10일 * 부득이한 경우 1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설
■ 예심을 더 하기 위해 재판소에 돌려보낸	■ 1개월	■ 20일(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사건)	■ 범죄사건 구분 ■ 기간 단축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일정 장소에 함속하면서 거리 청소, 건설 노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7) 예심기일연장결정서에는 날짜, 예심원의 직장과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형법 조항, 예심을 시작한 날짜와 연장사유, 소송법 조항과 결정내용, 단위책임자의 비준, 검찰소장의 승인정형, 공인과 명판을 날인해야 한다.

범죄사건		죄사건) ■ 10일(노동단련형에 해당되는 범죄사건)	
■ 복잡한 범죄사건	■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4개월까지 연장가능	■ 기간단축

\* 자료: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446면 재정리.

## 나. 예심의 실행

### 1) 심문

#### 가) 피심자의 심문

##### (1) 의의

피심자의 심문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요한 형사절차이다. 피심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 수집하지 못했던 증거나 예심원이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죄를 밝혀내는 수단이자, 피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심자 심문은 예심에서 지켜야 할 객관성, 과학성, 전면성과 완전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며 빼놓을 수 없는 예심행위라고 한다.<sup>38)</sup>

##### (2) 심문기간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통지 후 48시간 내로 피심자를 심문<sup>39)</sup>해야 하는데(동법 제162조), 피심자의 심문은 8시~20시 사이에 해야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sup>40)</sup> 외에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

38) 미상, 『형사소송법학』(출판사, 출판년도 미상), 235면.

39) 우리나라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는 사전상으로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 북한은 심문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40)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피심자의 심문은 22시를 넘을 수 없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

우 검사의 참가 하에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163조). 형사책임추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각각 이를 알려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하고, 필요시 형사책임추궁 전이라도 범죄자심문을 할 수 있다.<sup>41)</sup>

### (3) 피심자의 소환과 호송

예심원의 피심자에 대한 심문은 소환이나 구인절차를 통해 실시한다.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예심원은 소환장<sup>42)</sup>을 발부하거나 전화, 인편<sup>43)</sup>을 통해 예심장소로 나오게 한다. 소환장을 받은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데,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동법 제164조).<sup>44)</sup> 구류된 피심자의 심문은 예심장소<sup>45)</sup>에 호송하여 심문하는데,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구류장의 계호원이<sup>46)</sup> 피심자를 호송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 (4) 심문 방법 및 절차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의 피심자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준수사항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 유도의 방법 등의 강제적인 심문을 할 수 없다. 즉,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하며(동법 제167조), 강제적인 심문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사소송법해석』, 131면).

41) 위의 책, 130면.

42) 소환장에는 피심자의 이름, 난 날, 사는 곳, 직장직위, 소송법 조항, 소환이유, 피심자가 도착해야 할 날짜와 시간 및 장소, 소환하는 예심기간의 예심원에 대한 것 등을 기재한다.

43) 통상 인민반장을 통해 전달한다.

44) 이 경우 예심원이 구인결정서를 작성하여 직접 구인하거나 수사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구인수단은 체포의 수단과 같이 무기, 수갑, 포승의 사용이 가능하여 구인 이후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실에 억류할 수 있다.

45) 예심장소란 구류장에 속해있는 예심실을 말하며,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의 심문은 동 예심실에서만 할 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32면).

46) 계호원(戒護員)이란 계호라고도 하는데, 범죄자를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남한의 교도관에 해당한다.

수 없다. 강제적인 심문의 예로는 고문, 잠재우지 않기, 구금 또는 구류기일이 지나도록 석방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sup>47)</sup> 그리고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며, 피심자가 자수, 자백한 자료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제98조). 그러나 북한 인권백서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사원이나 예심원에 의한 고문, 폭행, 진술유도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북한 전역에 만연해 있다고 한다.

둘째,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했거나 사는 곳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체포의뢰 결정을 해야 하고,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영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66조).

셋째, 예심원이 피심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피심자 심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피심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피심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 즉, 개별 분리심문을 해야 한다(동법 제168조).<sup>48)</sup>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피심자의 신분을 확인(피심자의 이름, 난 날, 거주지, 직장직위, 경력, 가족관계 등)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169조).

넷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71조).

다섯째, 피심자 심문에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 예심원은 필요<sup>49)</sup>에 따라 피심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33-134면.

48) 심문은 예심원과 피심자 1:1 심문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피심자의 진술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나, 조서에 대한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울 수 있다. 피심자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입회인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증거물수집과 립회)의 절차를 참조한다.

49) 여기서 필요에 따른 경우의 예로는 피심자의 진술내용이 범죄사건해결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거나 피심자가 조서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거물이나 증거문서를 감추어놓았다고 진술하여 그 장소에 피심자와 함께 가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 심문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울 수 있다(동법 제172조).

여섯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인을 붙이고, 병어리, 귀머거리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동법 제173조).

#### (5) 피심자의 권리

예심원이 피심자를 심문하기에 앞서 피심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169조). 즉, 피심자는 ①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 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④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170조).

이외에도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소송관계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면서, 형사소송법 제16조(리해관계에 따라 참가할 수 없는 사유) 내지 제18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 수 없는 사유)에 규정된 배제사유를 말해주어야 한다.

#### (6) 심문조서

피심자를 심문한 예심원은 심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필요<sup>50)</sup>에 따라 피심자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36면).

50) 필요한 경우의 예로는 피심자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 그의 필적으로 고착시켜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피심자가 자필로 쓸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동법 제174조).

피심자의 심문이 끝나면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예심원이 직접 읽어준 후 피심자가 진술한 것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의 수정, 삭제, 보충에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그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아야 하는데,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을 것을 거부할 경우, 조서에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동법 제175조).

## 나) 증인심문

### (1) 증인의 자격

증인은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동법 제225조), 북한의 증인심문은 재판소보다 예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물론 범죄자의 가족, 친척도 증인이 될 수 있다.<sup>51)</sup> 다만, 14살 미만인 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동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와<sup>52)</sup>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22조).

###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

를 들 수 있다(위의 책, 138면).

51) 위의 책, 179면.

52) 형사소송법 “제17조(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취급한 형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으로 될 수 없다.”

확히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228조).<sup>53)</sup>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진술할 의무가 있다. 반면, 증인은 심문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229조).

### (3) 증인의 심문방법

증인심문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있는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동법 제226조).<sup>54)</sup> 증인은 예심원의 소환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으며, 구인결정은 예심원이 하고, 구인집행은 수사원이나 예심원이 할 수 있다. 구인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227조).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이나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이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 있는 범죄 사실을 먼저 진술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제233조).

또한 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농아자의 심문, 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등 증인심문의 절차와 방법을 피심자 심문의 방법과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말을 모르는 자, 농아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북한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농아자인 피심자에 대한 심문규정(동법 제173조)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30조). 증인심문의 경우에도 피심자 심문과

53) 북한형법은 증인이 범죄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36조).

54) 북한 형사소송법해석서는 증인이 있는 장소에서 심문하여야 증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증인들을 만나 증거를 제때에 찾아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해석』, 179면).

같이 개별적으로 하며, 증인의 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31조). 그리고 증인심문조서도 피심자심문조서(동법 제174조,<sup>55)</sup> 제175조<sup>56)</sup>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동법 제234조).

## 다)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북한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질심문과 식별심문이라는 별도의 절을 신설하고,<sup>57)</sup> 이에 관한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1) 대질심문

대질심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나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수사기법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235조).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여러 진술자들이 공모하게 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 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236조).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237조).

그리고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에게 상대방의 진술에서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55) 제174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예심원은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56) 제175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의 심문을 끝내면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아야 한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57) 1999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식별심문에 관하여 하나의 조문만을 두었다(1999년 형사소송법 제150조).

하여야 한다(동법 제238조).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조서’<sup>58)</sup>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피해자심문조서(동법 제174조, 제175조)에 따른다(동제 239조).

## (2) 식별심문

식별심문은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사기법이다. 즉,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동법 제240조).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식별하였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241조). 식별심문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동법 제242조).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예심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식별심문조서’를, 수사원인 경우는 ‘식별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동법 제143조 3항)에는 그 흔적을 굳건이 식별하게 되면 수사원이 굳건식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sup>59)</sup> 그리고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동법 제243조).

## 2) 검증과 감정

검증과 감정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수집과 과학적인 증명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예심수단의 하나이다.

58) 수사원이 대질조사한 경우는 ‘대질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89면.

## 가) 검증·검진

### (1) 검증·검진의 목적

검증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문건과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찾아내거나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실시하고, 검진은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있다.<sup>60)</sup> 즉, 검증·검진의 목적은 예심원이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 등 범죄증명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있다(동법 제192조).

### (2) 검증·검진의 종류

검증의 종류에는 범죄현장검증, 증거물 검증,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산 사람에 대한 검진의 4종류가 있다(동법 제193조).

첫째, 범죄현장검증은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194조 제1항). 현장검증은 집체적인 토의에 기초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현장 지휘자의 지휘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가 참가하여 검증의 위법성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시할 수 있다.

둘째, 증거물검증이나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sup>61)</sup>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 수 있다(동법 제194조 제2항).

셋째, 죽은 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동법 제195조). 시체검증은 사인(死因), 사망 시기와 사망 당시의 정형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체의 상처나 시체현상 등을 확인 고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시체검증은 예심원의 참가아래 법의학감정인이 수행하고, 검증

60) 위의 책, 155면.

61) 특별한 경우란 비나 눈이 오거나 어두워서 현장에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조서는 감정인이 작성하고 예심원이 함께 날인해야 한다.

넷째, 사람을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검진결정서에는 검진대상자와 검진이유 같은 것을 밝힌다(동법 제196조). 검진 받을 사람의 옷을 벗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진 받는 사람과 동성의 성년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이성의 나체를 검진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예심원의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검진은 예심원이 직접 할 수 있고 법의감정의사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동법 제200조). 여성을 검진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수사원이나 예심원과 법의감정기관 일군이 참여해야 한다(동법 제198조).<sup>62)</sup>

### (3) 검증 · 검진의 절차

검증, 검진은 원칙적으로 낮에 실시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할 수 있다(동법 197조). 검진 담당자는 신분확인 증명서와 검진결정서를 검진 받을 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동법 제198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켜야 할 경우에는 ‘검진말김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동법 제200조). 검증, 검진을 할 경우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하고, 여성에 대한 검진은 여성 입회인이 참여해야 한다(제199조).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작성해야 하며 약도와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가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작성한다(동법 제201조).

### (4) 심리실험

심리실험이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과거의 사실·사정들을 실험의 방법으로 재현하여 검토하는 심리행위를 의미한다. 즉, 심리실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형태의 검증으로서 확증할 필요가 있는 사건·사정들에 대한 증인, 피해

62)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 수사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경시풍조로 남자 수사원이나 예심원이 여성에 대한 검진을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증언하고 있다(손영조, 앞의 논문, 69-70면).

자, 피심자의 지각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sup>63)</sup>

심리실험은 범죄당시와 같거나 비슷한 장소나 시간, 환경, 조건 하에서 실행해야 하고,<sup>64)</sup> 그 결과는 실험조서, 약도, 사진 등으로 고착되어야 한다. 심리실험 결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혀야 한다(동법 제205조). 그러나 이러한 심리실험이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다(동법 제204조).

## 나) 감정

### (1) 감정의 의의

감정이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여 수사기간 등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일정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문제들을 밝혀내게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고 하며 감정인이 예심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동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감정결과라고 한다.<sup>65)</sup>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겨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06조).

### (2) 감정의 종류

63) 『북한법령용어사전(II)-형사법편-』(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9), 98면.

64) 형사소송법 “제 203 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는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첩회인을 세우고 여러 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65)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형사관계법-』(서울: 법무부, 1993), 671면.

감정에는 주검의 원인이나 상해정도 등을 감정하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 감정, 물질의 화학성분을 감정하는 법화학감정, 범죄와 관련이 있는 손흔적, 발흔적, 파괴흔적 등의 여러 흔적을 조사하고 원인을 내리는 흔적감정, 범죄와 관련된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밝히는 필적감정, 총기의 발사 여부와 발사시간, 사격거리와 방향, 사격장소, 발사 무기의 종류와 형태 등을 밝히는 탄도학감정, 기계, 설비, 건설분야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원인과 피해정도를 밝히는 기술감정, 회계계산 또는 결산의 정확성정도, 부족액 등의 해명을 위한 회계감정,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인물감정 등이 있다(동법 제207조). 이외에도 음성 감정, 문서감정, 문학예술작품 감정 등이 있다.<sup>66)</sup>

### (3) 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담당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비정상적인 주검이나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같은 인신침해사건과 관련된 감정은 국가법의감정기관이 담당한다. 국가법의감정기관에는 중앙과 도(직할시)법의감정기관, 시(구역)·군에 주재하는 도(직할시)법의감정의사,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무력부, 철도성에 조직되어 있는 법의감정기관(법의감정의사)이 있다. 또한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이나 범죄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은 전문정신병원감정기관에 맡겨야하며, 필적·탄도 및 흔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과 인물감정은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정기관에서 담당한다.<sup>67)</sup> 특히,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동법 제208조 제2항).

### (4) 감정절차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말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감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64-165면.

67) 위의 책, 166면.

정말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209조). 그리고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이 누구인지 피심자나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213조).

#### (5) 감정인의 권리와 의무

감정을 의뢰받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210조).<sup>68)</sup> 이때 감정인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12조). 그러나 감정인은 피심자, 피소자, 증인 등 사건관계자들을 만나 담화할 수 없으며, 사건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sup>69)</sup>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작성하여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보내야 하는데,<sup>70)</sup>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동일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11조).

#### (6) 감정인에 대한 심문과 재감정

감정을 의뢰한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sup>71)</sup> 또는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감정인의 심문절차는 증인의 심문절차(동법제233조, 제234조)를 따른다(동법 제214조).

그리고 감정 사실이 정확하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재감정을 의뢰하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68) 자신에게 감정을 할 자질이 없거나 시약, 설비, 조건불비 등으로 인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위의 책, 167-168면).

69) 위의 책, 169면.

70) 감정인은 감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감정의뢰기관에 송부해야 한다(위의 책, 168면).

71)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증인의 심문절차), 제234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에 따른다.

있다(동법 제215조).

### 다) 감정과 검증의 차이

감정과 검증의 차이점을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2> 감정과 검증의 비교

번호	차이점		내용
1	수단	감정	• 보통 사람의 눈으로 찾아내거나 구분하기 힘들므로 언제나 과학기술수단을 요구한다.
		검증	•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찾아내거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술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장소	감정	• 일정한 기계,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검증	• 임의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자격	감정	• 국가의 전문기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이나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다.
		검증	•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감정인 등이 할 수 있다.
4	결과	감정	• 감정서에 감정인의 견해와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검증	• 검증조사에 검증한 일군의 견해와 의견을 첨부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고착시킬 의무만이 있다.

\* 자료: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3(자체교제)』(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31면.

## 3) 체포와 구속

### 가) 의의

북한 형사소송에서 체포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행위 즉, 범죄자나 범죄혐의자를 붙잡는 행위이고,<sup>72)</sup> 구속이란 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행위이다.<sup>73)</sup> 체포와 구속처분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증거물을 없애는 등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동법 제176조). 즉, 체포 또는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72) 『조선말대사전(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646면.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41면.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동법 제179조).

이러한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sup>74)</sup>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8조).

#### 나) 체포·구속의 방법과 절차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이유를 밝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동법 제185조).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조항(제177조)을 신설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는 체포나 구속할 수 없고,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된 자를 발견했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즉, 법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체포와 구속(구금과 구류의 구속처분에 해당)은 금지되고 있다(동법 제177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43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제178조 2항(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못하였을 경우), 제179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동법 제144조(체포 후 48시간 내 검사승인, 10일내 예심회부), 제181조(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제186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규정을 어긴 경우이다. 이러한 비법적인 체포, 구속된 자를 검사가

74)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검사의 승인없이 체포 또는 구금한 자를 예심에 넘길 경우 구금기간이 다 되어 석방하여야 하나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79조의 체포 또는 구류구속처분 사유가 있어 석방하면 안 될 경우를 의미한다(위의 책, 142면).

발견할 경우 동법 제143조, 제144조, 제179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지시(석방지시서)로 석방해야 한다.<sup>75)</sup>

체포는 수사원 또는 예심원이 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동법 제180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143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원은 검사의 승인 없이도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구금하지 않는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동법 제180조).<sup>76)</sup>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구금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동법 제182조). 체포·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하며, 체포·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183조).<sup>77)</sup>

#### 다) 구속의 종류

구속처분은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류구속처분은 피심자를 구류장에 수감하는 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해당 한다. 자택구속처분은 피심자가 질병, 임신 등 구류구속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피심자 집에 억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75) 형사소송법 제143조, 제144조, 제179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나, 제181조, 제186조, 제178조 2항, 제88조(구류기간의 연장), 제263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제282조(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에 어긋나게 피심자나 피소자를 구금·구류시킨 경우, 형사사건기각결정과 판결, 사회적교양처분 결정·판결·판정, 무죄판결 받은 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7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체포하려는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의 특성으로 보아 일정한 기간 알려주면 안된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위의 책, 146면).

세우고, 보증인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피심자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89조).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피심자에 대해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역<sup>78)</sup>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90조). 자택구속처분이나 지역구속처분의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기간만큼 구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sup>79)</sup>

## 라) 구속의 승인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이유를 밝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동법 제185조).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의 승인은 공인이나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한다. 즉, 북한의 경우 남한과 달리<sup>80)</sup> 예심원은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기 위해서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구류할 수 있다(동법 제181조).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 할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 등본을 송부한다(동법 제182조). 임신한 피심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79조). 그리고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동법 제186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78) 정해진 지역은 리(읍, 구, 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심자의 경우는 병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79)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451면.

80) 남한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있다(동법 제191조).

**마)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sup>81)</sup>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한 피심자 구류기간은 20일,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한 피심자 구류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동법 제187조).

특히 2개월 이내에 예심(동법 제151조 제1항)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구류기간을 더 연장해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안으로 끝내야 하나(동법 제151조 제2항), 이 기간 내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88조).

<표 4-3> 형사사법처리 중 구류 기간

구분	형벌	기본 기간	구류 기간 연장과 승인	재판소에서 추가 예심 환송 시	비고
수사	10일(검사의 승인)				
예심	유기·무기로 동교화형, 사형	2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1개월(구 형소법 2개월)</li> <li>· 시(구역)·군 예심원,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장의 승인</li> </ul>	20일연장	최장 4개월 *구 형소법은 최장 6개월

81)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가 범죄자들을 구류장에 가두어 두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가 범죄자들을 구류장에 가두어두는 강제행위로 구속의 한 종류이다. 구류는 예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심자 또는 피소자가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범죄진상의 발견을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을 때 한다(북한법령용어사전(Ⅱ)- 형사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9, 30면).

			·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장의 승인 ■ 2차 1개월(구 형소법 2개월) · 중앙검찰소장의 승인		
	노동단련형	10일	20일(검사의 승인)	7일 연장	최장 1개월
기소	로 동 교 화 형, 사형	10일			*구 형소법 15 일
	노동단련형	3일			
제1심 재판	로동교화형	25일			* 구 형소법 1 개월
	노동단련형	15일			
항의, 항고	10일				
제2심 재판	로 동 교 화 형, 사형	25일			*구 형소법 1개 월
비상상소 심, 재심	1개월				*구 형소법 1개 월

\* 자료: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83면 재정리.

<그림 4-8> 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 예문

<p><b>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b></p> <p>1996년 10월 26일 함경남도 00군 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피심자 백남건의 사건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이름 백남건, 남자 생년월일 1945년 7월 3일(51살) 난 곳 함경남도 00군 잠지리 사는 곳 평안북도 00군 읍 35반 범죄수행당시 직장 직위 평안북도 00군 일용품수매상점 수매원 전과관계 없음</p> <p>피심자 백남건은 형법 제296조 제2항, 제300조 제1항에 해당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p>
--

제1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피심자 백남건에게 구류구속처분을 하고 이를 그에게 알려준다.
- ② 이 결정집행을 위하여 결정서 등본을 00군 보안서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00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1996년 10월 26일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피심자 백남건

## 바) 형벌집행기간의 산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시작하며,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었을 경우는 구속된 날부터 형기를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형벌집행기관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동법 제425조).

## 4) 수색과 압수

### 가) 의의

수색과 압수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는데 있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 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 데 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수행하는 강제적인 예심행위이다(동법 제216조). 즉, 수색은 예심원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하거나 신체·재산·주택 및 그 밖의 일정한 장소 등을 조사하여 증거물을 찾아내는 소송상 강제행위고, 압수는 예심원이 사건해결에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그것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불응할 때 수행하는 강제행위이다.<sup>82)</sup>

## 나) 수색·압수의 방법과 절차

북한은 수색과 압수에 대해 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예심원이 작성한 ‘수색·압수결정서’에 대한 검사의 승인 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17조). 이때 예심원은 수색·압수 장소에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 수 있고(동법 제219조),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압수결정서를 수색·압수 당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18조). 수색과 압수에 대한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심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sup>83)</sup>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3조의 경우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장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 대한 수색은 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84)</sup>

수색·압수결정서의 집행은 낮 시간(긴급한 경우 야간도 가능, 동법 제220조)에 2명의 입회인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해야 하는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체신기관에서 관리하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수색,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여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여성을 입회시켜야 한다(동법 제221조). 외국대표부 건물이나 주택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려 할 경우의 수색·압수결정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입회시키는 등의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동법 제222조).

그리고 수색과 압수를 집행하면 반드시 현장에서 수색·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날짜, 수색·압수한 자의 직장과 이름, 장소, 소송법 조항, 발견한 물건과 문서의 위치·상태·수량, 수색·압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게재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71면.

83) 북한 형사소송법해석에도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군이라하여 저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색 또는 압수를 하게 되면 주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사의 승인 하에 수색·압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위의 책, 172-173면).

84) 야산, 빈집, 공터 등이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장과 관련이 없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위의 책, 172-173면).

해야 한다(동법 제224조). 압수는 범죄와 관련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압수품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1부는 압수당한 자에게 교부(압수품목록등본)해야 한다(동법 제223조). 법일군(예심원)은 비법적으로 수색과 압수를 할 수 없다.<sup>85)</sup>

<그림 4-9> 수색결정서 예문

수색결정서	
1986년 7월 5일 평안북도 소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법 제174조 1항, 제18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범죄혐의자 백남건이가 도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름	백남건, 남자
생년월일	1935년 7월 3일(51살)
정당별	없음
난곳	함경남도 소군 잠지리
사는곳	평안북도 소군 읍 35반
직장직위	소군일용품수매상점 수매원
지식정도	중졸
가족관계	
처	김근산 49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소군 읍 35반
직장직위	부양
그밖에	미성년자 3명
친척관계	
형	백남창 54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함경남도 소군 잠지리
직장직위	소군 잠지협동농장 농장원
동생	백남호 49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함경남도 소군 잠지리
직장직위	소군 잠지협동농장 농장원
삼촌	백영만 62살
정당별	없음
사는곳	함경남도 소군 읍

85) 형법 “제 252 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직장직위 ㄱ군 식료공장 경비원  
 친우관계  
 친우 정남식 53살  
 정당별 로동당  
 사는곳 평안북도 ㄱ군 읍 5반  
 직장직위 ㄱ군 제약공장 로동자  
 친우 김명호 56살  
 정당별 로동당  
 사는곳 강원도 ㄴ군 삼상리  
 직장직위 삼상협동농장 농장기수  
 체격 및 인상의 특징  
 키는 1.74m, 몸은 약한편이며 얼굴은 긴형으로서 살색은 비교적 희고 코는 약간 들창코이며 이마는 좁은편이다.  
 의복은 아래우에 검은색 작업복을 입었으며 신은 의혁구두 41문, 걸음새는 뿔 때에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름거리다.  
 말은 함경남도 사투리를 비교적 많이 쓴다.  
 ① 이자를 수색체포하여 ㄱ군안전부에 구인한다.  
 ②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결정서등본을 ㄱ군안전부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ㄱ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그림 4-10> 수색결정서(증거물) 예문

**수색결정서(증거물)**

1986년 7월 7일 평안북도 ㄱ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범죄혐의자 백남건이가 읍 40반 김연하의 집에 침입하여 훔친 물건을 읍 5반 리충하의 집에 감추어두었다는 것이 이 반 인민반장 연혜성의 신고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평안북도 ㄱ군 읍 5반 리충하의 집을 수색한다.

예심원 최광선

이것을 승인한다.

ㄱ군검찰소 소장 정호남

&lt;그림 4-11&gt; 수색조서 예문

**수색조서**

1986년 7월 8일 평안북도 수군검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06-108조, 제112-113조의 절차를 지키면서 수군 읍 5반 김연옥과 차선애를 립회시키고 1986년 7월 7일 증거물수색결정서에 따라 리총하의 집을 수색하였다.

수색에는 집주인인 리총하가 참가하였다.

수색에서는 따로 불인 목록과 같은 물건들을 발견하였으므로 그것을 증거물로 첨부하기 위하여 압수하였다.

수색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수색은 9시에 시작하여 10시 30분에 끝났다.

이 조서를 읽어본바 옳게 기록되었다.

수색당한 사람 이총하  
립회인 김연옥  
립회인 차선애  
립회인 최광선

**5) 재산담보처분****가) 의의**

재산담보처분이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을 그 소유자 및 보관자가 임의적으로 이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상대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소송상 강제처분을 말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범죄피해자의 손해보상청구 규정(동법 제70조-제79조)을 두고 있다. 즉, 형사책임추궁결정 이후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예심원에게 재산담보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의 구 형사소송법은 재산담보처분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199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산담보처분제도를 신설하여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국가기관과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 주기 위

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sup>86)</sup>

### 나) 재산담보처분의 절차 및 방법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산담보처분에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재산담보처분 대상은 재산몰수형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이나 손해배상청구에 책임 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자와 그 연루자의 재산이 해당한다(동법 제245조).

둘째, 재산담보처분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sup>87)</sup> 앞 사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246조). 그리고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양만큼 해야 한다(동법 제247조).<sup>88)</sup>

셋째,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동법 제248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 당하는 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한다(동법 제249조). 그리고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

86) 서승완, 『북한법령용어사전(II) -형사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9), 121면.

87)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란 손해보상에 필요한 재산을 피심자로 확정되기 전에 숨기거나 소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91면).

88)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의 대상자가 노동자 또는 사무원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한 달 분 식량과 생활비를 재산담보처분해서는 안되며, 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 분배일까지 식량과 생활비, 소농기구와 가축(소와 말은 제외)을 재산담보처분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의류, 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어린이용품과 장학금, 사회보험금,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담보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축이 가족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을 경우에는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위의 책, 191면).

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250조).

넷째,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 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251조),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sup>89)</sup>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동법 제252조). 만약에 예심원은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253조).

## 다. 예심종결

### 1) 예심종결의 사유

예심종결은 예심을 끝마치는 소송행위이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해야 한다(동법 제254조). 이외에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 확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할 수 있다(동법 150조 제2항).

### 2) 예심종결처분의 종류

예심종결처분에는 예심중지, 사건기각 등이 있다. 예심중지는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동법 제43조), 사건기각은 14세미만이거나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거나 특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경

89) 이 경우의 예로는 범죄사건이 기각되었거나,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재산담보처분을 당한자나 그의 친척들이 재산피해를 전부 보상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재산담보처분이 잘못되었음이 확실히 인정된 경우의 예로는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처분이 필요 이상 많이 되었거나 피심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재산담보처분의 취소는 담보처분한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위의 책, 194면)

우,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예심기일 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범죄자·피심자·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등은 형사사건의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 3) 예심종결 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사실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sup>90)</sup>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해야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주어야 한다.(동법 제255조).

예심 예심종결절차는 검사의 참가 하에 종결수속을 밟아야 한다(동법 제256조).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게 되면 예심종결서를 작성하고, 피심자에게 예심종결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여준 상황, 제기된 의견의 처리상황 같은 것을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257조).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58조).

예심에서 종결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동법 제261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동법 제265조).

90) 사건 기록을 열람한 피심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며 예심이 종결되지만,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예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추가예심 기록을 보여주고 더 신청할 것이 있는 다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피심자의 이의 신청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심원의 결정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결정을 피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예심종결처분의 규정상 피심자는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도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소송제도로 선전하고 있다.

&lt;그림 4-12&gt; 예심종결조서 예문

**예심종결조서**

1987년 1월 20일 평안북도 사군경찰소 예심원 최광선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절차에 따라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 백남건에게 알려주고 사건 기록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제기할 의견이 없는가를 물어보았다.

피심자 백남건은 9시부터 11시까지 사건기록을 보고 예심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것이 없다고 하였다.

피심자 백남건  
예심원 최광선  
소장 정호남

**라. 검사의 예심감시**

검사의 예심에 대한 감시는 수사에 대한 감시 규정(동법 제147조)을 준용<sup>91)</sup>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예심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예심원이 송부한 각종 결정서 등본에 대한 승인 또는 의견 제시, 지시 형태로 준법여부를 감시한다.<sup>92)</sup>

예심과정에서 검사의 지시에 대해 예심원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때는 수사에서의 절차와 같이 우선 검사의 지시를 먼저 집행하고 난후,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156조). 다만, 예심의 종결에는 검사가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심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피심자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그 자리에서 취사여부를 결정한다.<sup>93)</sup>

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124면.

92) 손영조, 앞의 논문, 75면.

93) 위의 논문, 75면.

## 제5장 북한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

### 제1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

#### 1. 수령 교시와 당 정책 관철

##### 가. 수령교시에 기초한 노동당의 최고 법규성

북한의 최고법규는 김일성과 김정일 교시 및 이를 구체화한 노동당의 사법정책이며, 형사소송법 등 모든 실정법은 그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sup>1)</sup>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8)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을 헌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1980.10.3 제6차 당대회)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조 역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의 교시가 최고 상위규범이 되고, 그 밑에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위치하게 된다.<sup>2)</sup>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독재체제(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유일·합법적인 통치이념으로 헌법에 규범화하는 동시에 전주민

1)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가 최고 상위규범이 되고 노동당의 규약 및 헌법이 위치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 소련의 타스통신 특파원으로 평양에서 8년간 근무하다 귀국하여 『평양 서울 그리고 모스크바』라는 저서를 출간했던 알렉산더 제빈(A. Zhebin)은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제정과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소속 법률부장인 조연하에게 북한의 법제정과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니 조연하는 “북한의 법률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바탕으로 제정되며, 그 교시의 법률적 구현이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김태석,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35면).

2)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15면.

에게 유일사상 및 유일영도 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수사제도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방침을 받들기 위한 수령의 사상과 교시를 관철해야 할 의무를 지닐 뿐만 아니라,<sup>3)</sup>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리와 이익,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가치와 질서를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적 성격과 범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법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사회적 교육기능이 강조되고 있다.<sup>4)</sup> 결국, 북한의 수사제도는 김일성부자의 체제유지를 위해 집단주의원칙<sup>5)</sup>을 고수하면서 개인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정권이 지향하는 집단이익의 관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 나. 검찰의 사법감시를 통한 당 정책 관철

북한의 검찰은 검찰감시법에 따라 인민보안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고

- 3)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8)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을 헌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1980.10.3 제6차 당대회)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조 역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이 교시가 최고 상위규범이 되고 그 밑에 노동당규약과 헌법이 위치하게 된다.
- 4)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서울: 법무부, 2004.7), 5-6면 참조.
- 5) 북한은 집단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활의 기초이다.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만 넓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 체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의 리익을 전적으로 사회의 리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리익을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고상한 정치도의적 의무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인민과학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1973, 80-81면).
- 6) 198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제63조)해야 하고,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제81조)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있다.<sup>7)</sup> 즉,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원과 예심원의 비법적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각 단계마다 수사, 예심기관은 해당 결정서의 등본을 검찰에 사후 통보하고 검사는 이를 통해 수사원과 예심원들의 결정사항을 승인과 취소, 정정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이자 수사과 예심활동의 연장선장에서 기소업무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검사가 1주일에 한번정도 보안서 구류장 감시를 나오기는 하지만 피구금자들의 하소연이나 수사원과 예심원에 의한 고문과 폭행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검사는 없으며, 오히려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호되게 다그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한다.<sup>8)</sup>

이외에도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감시(동법 제11조)와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동법 제12조)하는 임무<sup>9)</sup>를 부여받고 있다.<sup>10)</sup> 다시 말해, 검사는 사건처리 과정에 참가하여 재판과 중재사건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검사가 판사를 감시하는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재판제도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검사가 재판에 대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사법기관 감시 기능은 형식적일 뿐이고, 그 목적은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검찰감시법 제2조) 하기 위한 ‘정치적 보위대’로서의 임무를 수

7) 검찰은 검찰감시법에 따라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검찰감시법 제9조).

8) 손영조, 앞의 논문, 91면.

9)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감시(동법 제11조)와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검찰감시법 제12조)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10) 이러한 북한 검찰소 검찰감시법은 재판의 독립과 상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검사는 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사법체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참조).

행하는데 있다. 즉, 수령교시에 기초한 노동당의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기관 감시기능은 ‘검찰기관들이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제기된 모든 사건이 당 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처리’<sup>11)</sup>되도록 지시한 김정일의 교시와도 무관하지 않다.

“사법검찰기관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이며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보위하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법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sup>12)</sup>

## 2. 형사처리의 모호성

### 가. 수사기관 및 심판기관과의 관계 불분명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재판준비 단계인 제 293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와 판결단계인 제 351 조(사건반송의 판정), 제2심재판 제 376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에 따라 범죄사건을 검사나 예심기관과 제1심 재판소로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판소는 예심과정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사건에 대한 ‘반송판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예심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나 변경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및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고 모호한 관계에 놓여있다.<sup>13)</sup>

11)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21면.

12) 위의 책, 312면.

13) 북한은 수사 및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어, 재판소는 사건을 검사

그리고 북한은 재판절차를 통해 재판기관간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첫째로 제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의 직무관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즉,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의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 저해, 상소권의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 둘째로 상급재판소가 일방적으로 하급재판소의 관할 사건을 다른 재판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중앙재판소 소장이나 중앙검찰소 소장이 제1심 재판소의 무죄판결 등에 의한 피소자의 석방을 일방적으로 집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로 비상상소와 재심을 통해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이외에도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사건에 대한 관할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기관 상호간의 독립성이 모호한 실정에 있다.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人民參審員)은<sup>15)</sup>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고(재판소구성법 제4조) 자기 사업에 대해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19조), 인민회의에서는 판사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동법 제8조). 수사기관의 하나인 검찰소의 경우에도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과 해임권한이 최고인민회의에 있고(사회주의헌법 제91조 11항) 자기 사업의 책임을 최고인민회의에 지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52조). 이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는 군중노선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사회적 교양처분 처리 담당 기능의 불분명

북한은 범죄자의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의 사회적 교양처분의 판단은 검사가 한다. 즉, 검찰감

또는 예심기관에 환송하는 권한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 등의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기소사실의 추가 및 변경에 관여할 수 있다.

14)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분단 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학술대회 자료집, 2005);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66면 재인용.

15)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심리해결하는데 직접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 재판에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성원으로 되는데 제1심재판에 참가한다(『조선말대사전(2)』, 1701면).

시법에서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이도록 제기할 수 있다(제36조).<sup>16)</sup> 그러나 사회적 교양처분은 실제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 판결서에 지적한 기관(판결판정집행법 제29조) 즉,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지고 교양하는 방법(판결판정집행법 제38조)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교양처분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제63조)은 검사와 재판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기능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즉, 사회적 교양처분의 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의 결정은 검찰감시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고, 재판소의 판정,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제29조)<sup>18)</sup>에 따라 집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 제2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 1. 수사·예심의 절차상 문제

16)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가운데서 재판에 넘길 대상은 재판에 넘기고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대상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짜고들어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19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7) 북한 형사소송법 제 63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절차)에서는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결, 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은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되어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2호로 수정된 후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되었다. 그러나 2004년 대중에 공개된 바 있는 법전에는 위법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존속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 가. 자백위주의 수사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예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의 고착 방법(동법 제95조)으로 진술서, 조서 등 문서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0조 제2항). 형사소송문건으로 고착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결과는 무효라고 한다.<sup>19)</sup> 즉, 형사소송행위는 문건으로 작성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동법 제80조 제2항).

이와 같이 북한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고착하는 방법에서 진술서, 심문조서, 감정, 검증, 수색, 압수조서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문건을 중심으로 검사의 통제와 안전위원회의 예심회부 결정, 판사에 의한 재판준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을 1심 재판기관화 한다는 의미이다. 재판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적용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의 확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기관 작성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남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범인을 밝혀내고 사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작업보다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을 통해서 보강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sup>20)</sup>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 “수사 받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8%가 “예”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북한 수사기관이 피심자 조사시에 자백을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58면.

20) 손영조, 앞의 논문, 86면.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표 5-1> 수사 받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22	51.2	56.4
아니오	17	39.5	43.6
합계	39	90.7	100.0
무응답	4	9.0	
총합계	43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85면.

## 나. 구속·체포의 용이성

일반적으로 법권에 의한 영장주의는 가능한 신속하게 법관의 면전에서 구속 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구속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자백획득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대부분 신체구속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속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검사에 의해 체포·구속의 영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sup>22)</sup> 체포·구속된 사람이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법관과의 면접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sup>23)</sup>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응답자

21)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85면.

22) 북한의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법관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검사에 의한 승인절차이며, 직접면접이 아닌 서면심사 방식이다(동법 제166조, 제178조, 제181조).

23) 체포·구속된 사람이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다른 법관에게 즉시 구인되어 면접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체포·구속 자체의 합법·합리성을 따지는 점도 있지만, 수사단계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데 있다.

들 중 43%(이 중 69.2%가 본인이 직접 수사를 받았음)가 본인 혹은 가족이 북한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중 89.7%가 체포·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범법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수사방식은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속에 대한 법정절차는 거의 지키지 않는 수사절차상의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sup>24)</sup>

<표 5-2> 수사를 받았다면 누가 수사를 받았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본인	27	62.8	69.2
가족	12	27.9	30.8
합계	39	90.7	100.0
무응답	4	9.3	
총계	43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663면.

<표 5-3> 체포, 구속 수사하였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35	81.4	89.7
아니오	4	9.3	10.3
합계	39	90.7	100.0
무응답	4	9.3	
총합계	43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663면.

## 다. 구속·체포의 장기화

북한은 예심 전단계인 수사에서조차 10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구속기간이 단축되었지만,

24)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88면.

체포·구속 기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수사단계에서 수사원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 수사원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4조).

예심 역시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예심과정에서 구금 기간이 가장 6개월(구 형사소송법 제73조, 제10조)에서 4개월(동법 제152조, 제188조)로 단축되었지만,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기간은 가장 1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체포·구속이 가장 4개월간 지속되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와 예심이 긴 시간에 비해 제1심 재판기간이 25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라. 구금시설<sup>25)</sup>

북한 형법에 규정된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형법 제27조, 제28조)이 있다. 이러한 형의 집행을 위한 구금시설로는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을 집행하기 위한 교화소가 있고(동법 제30조), 노동단련형은 일정한 장소에서 집행된다(동법 제31조). 이외에도 보안서나 보위부에 구류장이 있는데,<sup>26)</sup> 정치범들은 형법에 규정된 교화소라는 교정시설이

25) 인민보안성은 일반 형사범과 ‘비사회주의자’를 구속한 후 시·군 인민보안서 내 구류장에 수용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별도 수사를 한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수용시설로는 예심기관의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구류장과 도(직할시) 인민보안국의 집결소가 있다(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157면).

26) 북한의 인민보안서는 수사와 예심과정에서 인신을 수감하는 구류장(약 가로4.5m×세로 6m×높이4m, 남한의 유치장)을 운영하며 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와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교화소에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구류장은 형사소송법 제143조에 의한 현행법 및 준현행법 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구속 처분자와 1차 수사한 현행법 또는 범죄 미해명자 등을 길게는 90일까지 수용(예심기간 중에도 구류장에서 생활)하게 된다. 구류장은 보통 해당 인민보안서 내 별도의 단층건물에 위치하고 감방은

아니라 보위부가 관리하는 집단 수용소인 ‘관리소’에<sup>27)</sup> 수용된다. 관리소 내에는 구류장<sup>28)</sup>이 운영되는데, 수용소 규정위반자(절도, 연애 등), 지시 불복종자, 사회식에 관심을 갖는 자, 감독이나 보위원의 눈 밖에 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되는 수용소 내의 감옥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구류장은 체포된 범죄혐의자를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 또는 예심 단계에서 구금하는 구금시설이다. 국가안전보위부의 구류장은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면회가 허락되지 않고, 인민보안성 구류장의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sup>30)</sup> 이외에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구금시설로 집결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결소에 구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인민보안성에 넘겨지기 전 잠시 대기하는 곳이다.<sup>31)</sup>

10-2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구류장에는 독방, 사형수 감방, 사형대기감방, 공동화장실, 세면대, 일광욕장 등이 설비되어 있다. 구류장은 철창으로 되어있으며 보안원이 2교대로 근무한다. 특히 각 군(구역) 인민보안서 구류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용 감방 1개씩을 배정하고 있다. 이 감방을 통상 ‘3호 감방’으로 호칭하며 수감자를 ‘보위부 대상’이라 한다(위의 책, 158-159면).

27)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낙인찍어 투옥·처형하거나 산간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정치범수용소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로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주민들은 통제구역, 완전통제구역, 특별통제구역, 이주구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부른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각 관리소마다 체제유지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 번호나 지역 고유번호를 붙여서 ‘00호 관리소’로 부른다.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는 관리소는 정치범 가족들과 주로 상습범, 거액 경제사범 등 비정치범들이 수용대상이 된다. 인민보안성 제18호 관리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소 중 하나로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구에 위치하고 있다(위의 책, 160면).

28) 한국의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 김수암,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평화재단 제16차 전문가포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2007.11.21), 15-16면.

30) 위의 글, 22면.

31) 인민보안국 감찰처는 집결소(集結所)를 운영한다. 집결소는 각 시·군·구역 인민보안서에서 적발한 여행증명서 미소지자, 여행기간 초과자, 불법여행자와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 등 우범자나 경범죄자를 수용한다. 수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2-3일에서 6개월이다. 또한 직장에서의 무단결근, 총화학습에 빠지는 등 도덕적 해이 사건, 의사나 운전기사 등의 업무 수행 중 과실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교화소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경미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해당된다. 집결소에 수용된 인원들은 주간엔 채석장, 농장 등의 작업장에 동원되며 신분확인 등을 거쳐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자는 다시 인민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된다(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159면). 탈북자들은 집결소에 대해 ‘구류장에서 예심과정을 거치고 난 후 최종 수감시설에 이감되기 전에 임시로 머무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 인터뷰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 34명(34%)이 노동단련대<sup>32)</sup>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었고, 그 중 4명만이 재판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30명(88.2%)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3)</sup>

<표 5-4>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34	34.0	100.0
무응답	66	66.0	
합계	1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91면.

는 곳’, ‘증명서 없이 소속 직장을 무단이탈 했거나 통행증 없이 열차에 탑승했을 경우에는 수감되는 곳’, ‘탈북자들이 북송되어 처음 잡혀오면 넘어온 지역의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받고 자기 출신지로 인계되는데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곳’이라는 등 다양한 증언을 하고 있다 (김수암,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19-20면).

32)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03년 북한인권백서’는 500~2500명 수용 규모인 노동단련대가 도(道) 단위로 설치돼 북한 전역에 12~16개가 존재한다고 밝힌바 있다. 노동단련대는 죄를 지었지만 처벌하기 애매하거나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경범죄자들을 ‘육체적 부담을 가하여 교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15일~최고 6개월간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북한주민들은 노동단련대를 ‘꼬빠크’, ‘꽃바크’, ‘깡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감자는 주로 형기 1년 미만의 폭력배, 암거래와 절도자, 3~30일 이상의 기업소 무단결근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총화 3달 이상 불참자 등이다. 최근 식량난 등으로 범죄율이 증가하여 교화소나 집결소가 만원이 되자 일반적인 사회질서 위반자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법자들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도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관리는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서에서 맡고 있다. 책임자만 보안원일 뿐 나머지는 군 및 구역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나 군 특수부대 제대자 등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 노동단련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점호 및 청소, 7시 식사,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작업을 하고 사상교양과 인원점검 후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서는 집짓기, 농사일, 주변 탄광에서 석탄 캐기 등을 한다. 작업장을 오갈 때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데 삼과 곡괭이를 들고 줄지어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를 뿌리뽑자”라는 내용의 구호나 자신이 지은 죄를 외치게 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게도 한다. 노동단련대에서 탈주하면 교화소나 교양소로 보내진다. 처음에는 노동단련대의 수감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기록에 남게 된다. 하지만 교화소와는 달리 당중과 공민증이 유지된다.

33)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91면.

<표 5-5>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쳤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재판을 받았음	4	11.8	11.8
재판을 받지 않았음	30	88.2	88.2
합계	34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91면.

## 마.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미채택

우리 헌법의 경우 체포·구속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활동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법관의 영장발부에 앞서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영장신청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강제처분에 대한 합법성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sup>34)</sup> 즉,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따라 범죄 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신체 자유 제한을 사법의 통제에 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권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 피심자·피소자에 대하여 구인·구금·구류·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재판소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검사의 승인만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형사제도와 달리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과학적·객관적 증거재판주의 채택, 강압적 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구 등

34) 신동운, 『형사소송법 I』 제2판(서울: 법문사, 1997), 120면.

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석과 구속적부심제도 채택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전문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원칙이 미비하다. 재판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강제처분의 채택·준속·변경 또는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인권보장이 미흡하다.<sup>35)</sup>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 인터뷰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체포·구속될 때 구속결정서(영장) 등을 제시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체포·구속될 때 구속결정서(영장) 등을 제시받았다는 사람은 단 2명(유효비율 5.4%)뿐이었고, 94.6%(35명)는 영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65.1%(28명)은 체포·구속될 때 가족들에게 통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 5-6> 체포·구속될 때 구속결정서(영장) 등을 제시받았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2	4.7	5.4
아니오	35	81.4	94.6
합계	37	86.0	100.0
무응답	6	14.0	
총합계	43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664면.

<표 5-7> 체포, 구속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통지해 주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15	34.9	34.9
아니오	28	65.1	65.1
합계	43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664면.

35)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서울: 법무부, 2004.7), 6면 참조.

## 2. 기타 형사사법제도상의 문제

### 가.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북한 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형법 제59조 반국가범죄)나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형법 제67조 반민족범죄) 즉, 반국가범죄나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테러죄(형법 제60조), 조국반역죄(형법 제62조), 살인죄(형법 제278조) 등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즉, 김정일 체제유지에 장애가 되는 반국가범죄나 반민족범죄 등에 대하여 법정형이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재판을 통한 사형제도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공개재판

북한 형사소송법 제286조에는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인민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 일반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변은 15.3(13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지공개재판”(공개처형이 아니라 재판부가 현장에 나와 주민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어 본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중 56.5%가 “예”라는 응답을<sup>36)</sup> 하였고, 그 횟수는 1-2회

36) 2006년에 실시한 인터뷰조사결과에서 “예”라는 응답비율도 55.1%였다.

가 대부분이었다.

<표 5-8> 귀하는 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13	13.0	15.3
아니오	72	72.0	84.7
합계	85	85.0	100.0
무응답	15	15.0	
총합계	1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5면.

<표 5-9> 현지공개재판(공개처형이 아니라 재판부가 현장에 나와 주민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48	48.0	56.5
아니오	37	37.0	43.5
합계	85	85.0	100.0
무응답	15	15.0	
총합계	1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6면.

현지공개재판을 목격한 탈북자들 중 대다수인 71.2%(42명)가 현지재판은 재판당일에 처벌형까지 선고하여 단 1회로 종결된다고 응답하였고, 3.4%(2명)만 1회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현지공개재판제도의 목적 즉, 현지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미리 피소자(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여 처벌 형량까지 정한 상태에서 군중들을 각성시키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7)</sup>

37)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5면.

&lt;표 5-10&gt; 현지공개재판은 1회적으로 종결되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42	42.0	71.2
아니오	2	2.0	3.4
모름	15	15.0	25.4
합계	59	59.0	100.0
무응답	41	41.0	
총합계	1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6면.

## 2) 공개처형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 2006년에 실시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고, 공개처형되는 대상범죄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정치범은 물론 밀수, 사기, 횡령죄 등 경제범죄와 인신매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부화(간통)사건 등 아주 다양한 범죄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처형장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후(66%), 대부분 총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8)</sup>

&lt;표 5-11&gt; 범죄자가 공개처형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80	80.0	80.0
아니오	20	20.0	20.0
합계	100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7면.

38) 위의 책, 217면.

<표 5-12> 공개처형이 있을 때,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을 처형장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66	66.0	66.0
아니오	34	34.0	34.0
합계	100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7면.

북한뉴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데일리NK(Daily NK)’는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시장 인근(2005.3.1)과 회령시 유선동(2005.3.2)에서 열린 2건의 특별공개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피의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행위 전반을 ‘인신매매’로 취급하여 흉악 범죄로 묘사하며, 중국에서 벌여 온 외화를 북한 내부의 화폐로 교환한 것까지 범죄행위로 판결하면서, 재판정은 2건의 재판에서 10명에게 10년~15년의 노동교화형을, 3명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집행했다고 한다.<sup>39)</sup> 데일리NK는 2006년 4월 15일 회령시 공개처형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담은 14장의 스틸 사진을 입수해 사이트(www.dailynk.com)에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은 공개재판과 총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고 있다.<sup>40)</sup> 북한에서 공개총살을 진행하면 말뚝에 처형 대상자를 묶어놓고 전방 10~15미터쯤에 위치한 보안원들이 머리, 가슴, 복부에 3발씩 총 9발의 총을 쏜다. 이때 처형 대상자를 말뚝에 묶어둔 끈이 끊기면서 시체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 영상에는 이런 모든 광경이 기록되어 있다. 공개처형을 실시하기 전에 회령시 보안서 보안원들은 시내 곳곳을 지키며 수 천명의 주민을 공개처형 현장에 동원시켰다고 한다.<sup>41)</sup>

39) “북한 공개재판 판결문”,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5년 3월 18일자.

40) 회령출신 탈북자 김광희(32세, 2001년 입국) 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공개총살 현장은 함북 회령시 오봉리와 유선노동자구이며, 회령시의 경우 이곳에서 공개총살이 계속 있어왔다”고 확인해줬다. 이번에 처형된 북한 주민은 3월 1일 2명, 3월 2일 1명이며, 죄목은 ‘북한을 탈출한 죄’라고 공개총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중국 내 탈북자들은 전한다. 동영상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11명의 수인들이 끌려 나오고 ▲공개재판이 진행되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후 “즉시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들리며 ▲끈이어 말뚝에 수인을 묶는 모습 ▲총소리와 함께 말뚝에 묶여 있던 시체가 앞으로 거꾸러지는 모습 등 공개총살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 &lt;그림 5-1&gt; 북한의 공개재판 판결문

## 회령시 회령시장 인근 공개재판(2005년 3월 1일 판결)

\* 판사의 목소리가 부정확한 부분은 '\*\*\*'로 표시

박명길은 무작으로 방랑하던 자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사이에 돈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을 건너 비법적으로 중국국경을 넘어가면서 공모자 및 단독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수명을 외국으로 빼돌려 이익을 취한 흉악한 상습범이고 \*\*\* 수출입하는 범죄행위를 범하였다.

최재용은 \*\*\*생산협동조합의 노동자로 2004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이에 2회 도하하여 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수명을 중국에 빼돌려 중국돈 \*\*\*을 시작으로 다양한 물품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돈 3,7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위법적으로 바꾼 악질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리영철은 회령시 \*\*\*에 거주하는 자로 2001년 3월 윤남석과 공모하여 중국에 불법월경하여 방랑하고 있던 도중 중국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송환되어 왔음에도 반성하여 바뀌지 않고 2004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최재현을 시작으로 공모자에 넘겨 그 대가로 중국돈 6860원과 여러 물품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돈 3,800원을 위법적으로 교환한 범죄를 저질렀다.

김선화는 회령 \*\*\*목장의 노동자로 200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중국국경을 위법적으로 넘어 \*\*\*와 공모하여 수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으로 빼돌려 중국돈 2,000원을 받고 \*\*\*을 시작으로 다양한 물품을 밀수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리군별은 회령시 강안동에 거주하는 전 주부로 2003년 7월부터 작년 7월 사이에 금품을 목적으로 박명길을 포함한 공모자와 함께 중조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면서 수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으로 넘겨 중국돈 4,000원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돈 2,2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위법적으로 바꾼 범죄행위를 범했다.

변미옥은 이미 1999년 2월 중국에 불법 월경하여 \*\*\* 중국인과 2년 생활했고 중국 공안기관에 송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회하여 바뀌지 않고 2003년 6월에 남편과 이혼하고 회령시 금천동에서 \*\*\*를 하면서 2004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여성 11명을 \*\*\*를 포함한 공모자와 공모하여 그 대가로 우리나라 돈 \*\*\*원을 소비하였던 한편 불법 월경자에게 길 안내를 하고 또 중국돈 300원을 우리나라 돈과 위법적으로 교체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윤수용은 회령시 강안동의 무직자로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으로 데리고 가서 금품을 받는 것이 범죄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유인하였다. 그 후 공모자와 함께 도강하고 그 대가로 중국돈 300원을 받아 소비하였으며 불법 월경한 자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변미숙은 회령시 강안동에 거주한 자로서 2003년 8월부터 작년 7월 사이 수회에 걸쳐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에 넘겨 돈을 목적으로 며느리 리군별을 비롯한 공모자에게 수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강을 건너 중국돈 600원과 현금 2만원을 받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을 희망하는 자에게 외국으로 가도록 방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라이순은 은덕군에 거주했던 자로서 우리나라 여성을 외국에 넘겨 돈과 물품을 받는 것이 범죄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2003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변미옥을 비롯하여 공모자들에게 소개하여 현금 4만 원을 받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외국으로 가도록 방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41) 데일리 NK. 2006년 4월 15일자.

한영숙은 회령시 \*\*\*에 거주했던 주부로서 2004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걸쳐 금품을 목적으로 박명길에게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외국으로 가도록 하여 돈과 물품을 취하기 위해 소개하고 현금 3만 원을 받아서 외국에 불법 월경하려는 자를 도와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손창흠은 회령시 강안동에 있던 자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돈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수명을 현금 5만 원을 받고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하려는 자를 도와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피고 등이 범한 범죄행위는 극악한 개인 이기주의와 물욕에 빠져 사람을 물품과 같이 취급하는 대대손손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고, 인간의 인격과 목숨의 권리가 최고로 존중되고 철저히 담보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는 털끝만큼도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제국주의자와 반동의 나날이 엄중해지는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타도하여야 하는 백전백승 선군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엄혹한 시련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가져올 신념으로 진군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역사적 진군에 반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엄중한 범죄행위를 범한 피고 등은 응분으로 당연히 공화국법에 따라서 가장 준엄하게 징계되어야만 한다.

판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주체 94년, 2005년 3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 김병주를 재판장으로 하고 인민참심원 최주벽과 김일찬 3인으로 구성된 재판정은 검사 김주일, 변호인 김한, 재판서기 윤한설이 참가한 특별공개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손창흠은 노동교화형 10년에 처한다.
2. 한영숙은 노동교화형 11년에 처한다.
3. 라미순은 노동교화형 12년에 처한다.
4. 윤수용은 노동교화형 13년에 처한다.
5. 변미숙은 노동교화형 13년에 처한다.
6. 변미옥은 노동교화형 14년에 처한다.
7. 리군별은 노동교화형 15년에 처한다.
8. 김선하은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9. 라영철은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0. 박명길은 사형에 처한다.
11. 최재용은 사형에 처한다.

### 회령시 유선동 공개재판(2005년 3월 2일 판결)

\* 판사의 목소리가 부정확한 부분은 '\*\*\*'로 표시

금일 경성군 경성읍 \*\*\* 한복남, 회령시 오산덕 협동농장 전운숙 이자들은 부패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상에 깊이 오염되어 돈에 환장하여 작년 4월부터 수회에 걸쳐 공모하여 함께 18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유혹하여 외국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 대대손손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이자들이 범한 범죄행위는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에 오염되어 사람을 동물이나 물건과 같이 팔아 \*\*\*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고 사람의 이익과 목숨의 권리가 최고로 철저하게 보장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아래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제국주의자와 반동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인민의 장엄한 진군에 도전하는 반혁명적 범죄행위이다. 이자들이 범한 범죄행위는 과거 일제가 조선에 여성들에게 강요하였던 것과 같이 수치스럽고 여성들이 분노하는 \*\*\*\*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반혁명적 반인민적 행위로 적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이고 인민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금일 우리나라 앞에 놓인 정세는 나라의 관문인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침투를 막고 비법월경을 비롯한 모든 비사회주의 현상과 법적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우리에게 강한 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지 않으면 투쟁이 강화되지 않고 사회내부에 불법월경을 비롯한 비사회주의 범죄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지킬 수 없고 최후로는 적에게 먹히는 노예로 될 것이다.

판결! 형법 290조2항, 233조, 246조, 104조에 의해서 심리한다.

피고 전운숙에게 노동교화형 10년에 처한다.

피고 한복남에게 사형을 처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다소 주춤했던 공개처형이 최근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좋은벗들’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소식>에 의하면, 2008년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중국 친척들과 연계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강하거나, 도강하겠다는 이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도강자를 알선해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공개 처형되었다고 한다. 당국은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게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한데 이어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했다고 한다.<sup>42)</sup>

2009년 2월 18일 평성시 전력공업성 소속 부과장 2명이 공개총살 당했다. 이들은 함경북도 김책시에 위치한 성진제강소<sup>43)</sup> 전력차단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공개처형 되었다. 그리고 3월 말 사리원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한 가운데 보위사령부 해주 기지장 오금철(44세)이 공개총살 당했다. 공개 총살 현장에 모인 인원수는 17만 명 정도였으며, 오금철의 죄목은 풍기 문란죄로 황색바람(자본주의)을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죄목인 풍기 문란

4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 3.

43) 성진제강소는 철을 압연(壓延)하여 김책제철소에 넘기고, 김책제철소에서는 압연강판을 밀어 중국 쪽에 수출하는 곳이다.

죄 보다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장울화 자녀들의 돈을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4)</sup>

## 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법률가 참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준비절차 및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비법률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근로인민 중에서 인민참심원을 선출하여 재판에 관여토록 하고, 재판소 판사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주체사상과 당성에 충실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주체사상과 당성을 가진 비법률 전문가의 참여는 개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김일성부자의 교시와 당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준비절차 및 재판단계에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현지료해(了解), 현장검증 등 현지재판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소송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사건의 심리절차에도 노동자, 농민대표를 직접 참여시키는 등 균중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다. 형식적인 변호인 제도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외에 대표적인 사법감시로 변호인 제도가 있다. 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검사는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법률의 문외한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44) 장울화는 중국 사람으로 김일성의 혁명 동지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에서 조중 친선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의 자녀와 친척들을 9·9절이나 김정일 생일때 북한으로 초청하는 등 높은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해주 기지장 오금철이 이런 장울화의 자녀들 돈 180만 달러를 횡령했기 때문에 공개총살 당하지 않을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심리적 열등감에 빠져 있다. 특히, 신체가 구속·체포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방어력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으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sup>45)</sup>

북한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수사·예심단계에서 변호인은 배제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된 기소장이 최종적으로 작성되고 공판일이 지정된 후 비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sup>46)</sup> 변호인 제도의 도입은 199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큰 변화<sup>47)</sup>를 가져온 후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반영되어 형사사건의 취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피소자와 피심자까지 확대되었다.

북한의 경우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변호인이 될 수 있는데,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란 조선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를 의미한다.<sup>48)</sup> 조선변호사회는 상부기관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들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28조, 제29조). 변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려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변호사자격<sup>49)</sup>을 가진 자를 변호인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12조). 재판소는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선변호인 외에 당사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이 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116조), 공동피고인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있

4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서울: 박영사, 2008), 127면.

46) 북한의 1950년 형사소송법 제174조는 “검사로부터 사건기록이 재판소로 넘어온 이후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에게는 피소자와 협의를 기회를 주며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준다”라고 규정하였다.

47) 북한의 1992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7조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82면.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로 될 수 있다.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2. 법무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다.

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0조).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그 직무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각급 변호사회의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고(동법 제30조), 보수도 조선 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며(동법 제26조), 나아가 변호사 자격심사를 국가가 하도록 규정하여<sup>50)</sup>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 결국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자격 심사로부터 업무수행, 보수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당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어용 나팔수’라 악평<sup>51)</sup>하면서, 변호사는 피소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거나 무죄를 변론하기보다 오히려 피소자의 죄책(罪責)을 강한 어조로 질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회의 활동이 사실상 당과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재판소에 협력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 그리고 당의 정책에 따른 것이 우선’인 변호사의 임무와 역할 부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나 변호사회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제가 계속되는 조건 아래에서는 피심자나 피소자가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은 어려울 것이다.<sup>52)</sup>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 인터뷰 조사에서 형사재판을 직접 받아보았다고 하는 응답자들(3명) 중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명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은 3명 모두 사선 변호사를 선정한 적은 없었고, 1명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공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었으나, 선정된 공선변호사와의 면담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선정된 공선변호사는 피소자의 입장

50) 변호사법 제7조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51) “변호사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뭐 검사보다 더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검사가 말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당과 인민 앞에서 죄상을 사실대로 시인하고 비판 받으라는 식으로 말해 버리니 할 말 다한 거죠. 북한에서 변호사나 검사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2006년 8월 22일 탈북자 B씨에 대한 면접; 손영조, 앞의 논문, 94면 재인용).

52) 위의 논문, 95면.

을 이해하고 피소자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소자의 변호인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이 피소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표 5-13>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2	66.7	66.7
아니오	1	33.3	33.3
합계	3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3면.

<표 5-14> 귀하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0	00.0	00.0
아니오	3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3면.

<표 5-15> 재판소가 귀하를 위해 무료변호사를 선정해주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1	33.3	33.0
아니오	2	66.6	66.6
합계	3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4면.

53)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3면.

<표 5-16> 변호사는 귀를 직접 면담하였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0	00.0	00.0
아니오	3	100.0	100.0
합계	3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4면.

<표 5-17> 재판시 변호사는 귀하의 편에서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귀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0	00.0	00.0
아니오	3	100.0	100.0
합계	3	10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14면.

## 제6장 결론

### 1. 요약

지금까지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예심⇒기소⇒재판이라는 4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수사와 예심은 우리의 수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 북한의 수사제도는 수사와 예심을 포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북한은 해방이후 소련군정의 영향으로 스탈린 시대의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한 후, 모택동 시대에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일성체제가 공고화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주체’가 수사제도에 반영되어 오늘의 수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의 북한의 수사제도는 중국의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의 수사기관은 인민보안성(경찰),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인민무력부가 있는데, 인민보안성은 일반범죄 사건을,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죄(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인민무력부는 군(軍)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을, 검찰소는 행정경제부문과 법기관의 법준수 여부와 관련된 일반범죄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수사기관은 각 기관별로 형사처리 사건의 관할을 달리하고 있었다.

셋째, 북한의 수사는 수사원의 ‘수사시작결정’으로 시작된 후, 사건기록을 예심에 넘김으로써 종결된다. 수사원이 이첩한 사건을 배당 받은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서’를 작성한 후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김으로서 예심을 종결한다. 특히 예심원이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한 범죄사건 중 범죄혐의가 확실하여 곧바로 예심을 할 수 있는 일부사건이나 사법일

군이 저지른 일부범죄 등은 검찰소 예심원이 담당한다.

넷째, 북한의 수사기관의 수사(예심)제도는 소련과 중국 법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륙법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영미법계와 유사한 제도로 발전되었다. 북한은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가 채택되지 않고 검사가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수색·압수결정서 등은 검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수사(예심)원의 활동이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준법감시는 예심종결절차나 일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외하면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의 승인, 취소, 정정 등을 지시한다. 즉, 검사의 준법감시의 대부분은 사후통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수사(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상호 의견이 다르면 상급 검찰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소의 예심원은 사법일군들의 직무와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검찰은 수사(예심)활동을 서면 심사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직접 수사(예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섯째,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리의 일반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관철, 과학성·객관성·신중성·공정성의 원칙, 인권보장의 원칙, 범죄의 예방(미연방지)원칙, 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 사용의 원칙, 법에 규정된 절차방법의 준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러한 원칙은 형식상에 거치고 있을 뿐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곱째,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수사(예심)원이 작성한 진술서나 조서 등은 증거로 고착되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사(예심)원이 작성한 각종 서류를 담당 판사가 재판준비단계에서 사전 서면심사를 한 후, 재판에 회부하거나 검사에게 반송하는 관정을 한다. 결국 북한의 수사제도는 서면 또는 조서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북한의 수사제도는 기소전인 수사·예심 과정에서 최장 4개월간 체포·구금할 수 있고, 피소자나 피심자를 변호하고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변호사의 활동 역시 당적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당성과 주체사상에 충실한 비법률가인 인민참심원의 재판참여와 당 정책관철 여부를 감시하는 수사·예심에 대한 검찰의 감시 등은 수사·예심원으로 하여금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유도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2004년 형사법 개정을 통해 검사에 의한 영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한 사전통제나 제3의 감시자에 의한 감시는 거의 없다. 결국 북한의 수사제도는 인권침해의 시·공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아홉째,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상 인권침해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탈북자들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공개재판에 의한 공개처형이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백위주의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구속·체포의 용이성에 따른 인권침해, 구속·체포의 장기화에 따른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 법원에 의한 영장주의 미 채택과 비법률가의 참여에 따른 인권침해, 형식적인 변호인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외도 북한 법을 지도하는 기본요인은 주체사상과 수령론이다. 북한의 최고 법규는 김일성과 김정일 교시 및 이를 구체화한 노동당의 사법정책이며, 형사법 등 모든 실정법은 그 하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사제도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나 권익보다는 수령교시와 당 정책 관철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대해서 형사법 절차에 형식상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수사·예심에 그대로 적용되어 운용되기 보다는 대내외적인 선전수단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당 정책과 수령 보위를 법적으로 관철시키고자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에 놓여 있는 이중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 2. 정책적 과제

1998년 4월 20일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남북경협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 동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개시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등의 영향은 남북한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2006년까지 방북자는 10만명(금강산 관광객 제외)을 넘어섰다. 최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국민의 방북이나 체류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09년 3월 현재 101개 기업이 입주한 개성공단에는 1,124명의 남한 주민이 38,851명의 북한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금강산관광지구 내에도 상당수의 남한 근로자들이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다.<sup>1)</sup>

정부당국은 우리국민들이 방북할 경우 북한지역에서 지켜야할 준칙<sup>2)</sup>이나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가 급증하면 할수록 남북주민간의 의식구조나 사회문화적 차이와 북한 형사법 이해의 부족 등에서 비롯되는 범죄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sup>3)</sup> 그러나 범죄나 피해 사건에 대해 남북한 간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상호 충돌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법체계가 상대방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내국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의 적용범위가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와는 달

- 1) 2003년 12월 11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로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에 따르면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는 체류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16조 제1호), 이를 초과하여 90일까지 체류하는 자는 단기체류자로, 91일을 초과하여 1년까지 체류하는 자는 장기 체류자로 분류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거주자로 분류하여 각 체류등록과 거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위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참조). 북한은 그동안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3월 27일부터 위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한주민으로부터 실제로 체류등록과 거주등록을 받기 시작하였다(<조선일보> 2007년 4월 9일자).
- 2) ‘금강산관광에서 남조선관광객들이 지켜야할 행동준칙’ 제20조는 “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가 군사통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허용한 동포애적인 선의를 이용하여 정탐행위를 하거나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문은 법무부,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 분석』, 과천: 법무부, 2003, 109-11면 참조).
- 3) 볼로냐 대학의 형법교수 페리(Enrico Ferri, 1856-1929)는 범죄의 원인으로 인류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의 세 요소를 들고 있는데, 이들 요소가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다.

리 북한의 형사법 체계는 비민주적 비인도적인 것이라 할 때,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행사될 경우 기본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는 방북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조치 없이 북한의 정치적 신변안전보장이란 약속에 의지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sup>4)</sup>에 의해 신변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하나, 이마저도 지난 3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강제 억류 사건이나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2009.5.15)의 일방적 선언<sup>5)</sup> 등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의 정치적 입장의 변수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국민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연계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정치적 영향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이 북한 기관원이나 주민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사소한 언행으로 다양한 돌발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종속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형사법체도는 수령교시에 따른 당 정책 관철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방북자들의 의도되지 않은 사소한 빌미도 수사대상이 되어 강제 억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의 신변안전보장은 물론,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4) 2004년 1월 29일 남북한 사이에 ‘개성·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2005년 8월 5일 발효되었다.
- 5) 북한은 2009년 5월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존폐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년 5월 15일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주장하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북측)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북한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15일자)이라고 밝히며, 남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까지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첫째, 북한의 수사제도와 실태 등 수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축적이 이루어져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database)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관련한 정보나 문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이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 등의 관찰법이 사용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수사기관의 실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상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지역 근무경험이 있는 주변국 외교관이나 수사 종사자들의 전직 탈북자와 심층면접을 통해 지속적인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들을 수사요원으로 채용한 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심리적·조직생활 적응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선행체험 자료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연구 자료들을 관련 전문가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진일보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연구 자료들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수사제도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sup>6)</sup>

둘째, 향후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수사기관의 동질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남북분단 이후 남북한 수사기관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체계 하에서 극단적으로 이질화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동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인민보안성은 통일에 대비하여 수사업무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사제도 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찰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북한경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각종자료나

6)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86-187면.

현황을 입수해야 하고, 낙후된 북한의 수사제도와 치안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남한경찰은 선진화된 범죄신고 시스템 및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서 경찰관이나 전문가들의 상호교차 방문이나 파견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수사기관은 통일에 대비하여 상호교류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설협의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 중 북한의 형사법에 저촉된 자가 북한의 수사기관에 구속된 경우, 정부의 노력으로 신병을 인도 받은 후, 우리 당국이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이나 증거물 등을 북한당국의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남한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이나 북한주민의 증언과 진술 확보, 압수·수색의 요청, 사람이나 물건의 동일성 및 소재 파악 등의 협조를 위해서 북한의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를 대상으로 협의의 수사공조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여 우리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한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국가경찰은 통일과도기나 통일 후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통합과정이나 통합 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사상이나 이념적 갈등, 사회변화에 따른 경제범 급증, 문화적 격차로 인한 가치관 혼란 등으로 치안혼란이나 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치안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통일과정에서 치안

7) <대량탈북사태 대비 치안인력 소요 예상>

경찰 1인당 인구(명)	대량탈북규모에 따른 경찰인력 소요				
	11만명	22만명	100만명	200만명	400만명
509명(한국)	216명	432명	1,965명	3,929명	7,858명
450명(호주)	244명	489명	2,222명	4,444명	8,889명
350명(미국)	314명	628명	2,857명	5,714명	11,428명
300명(독일)	367명	733명	3,333명	6,666명	13,333명
250명(홍콩)	440명	880명	4,000명	8,000명	16,000명

\* 각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경찰청, 『2008 경찰백서』, 335면)를 참조하여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한 치안인력 소요를 판단한 것임(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120면).

수요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달려 있다. 그리고 남북경찰의 교류·협력과정에서 남북경찰간의 이질성과 갈등을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갈등은 쉽게 조성될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통합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갈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는데 경찰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과도기 통일경찰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하여 인적·물적(장비) 자원과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통일국가의 치안확보와 정보획득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sup>8)</sup>

다섯째, 북한 수사기관의 남한국민에 대한 수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북한 수사기관이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 등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우리의 수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북한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사 과정에 남북한 공동수사관제도를 도입하여 북한법 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남한의 근로자나 체류자들이 많은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지구에 남한의 수사관을 파견하여 실행한 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여섯째, 남북한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에 파견되는 남한의 근로자나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형사법제도가 북한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에 파견된 근로자나 체류자들에게 직접 적용되어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국민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수사제도에 대한 연구물을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하거나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8)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87-188면.

9) 북한에 수사관 파견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에서 최정에 요원을 선발하여 합동으로 파견할 경우 수사공조가 용이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형사사법제도는 자국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관할권에 대한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등을 채택하여 형사 재판권을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여 타국의 재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으로 보고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럼에도 국제정세의 세계화와 개방화로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와 사상을 초월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남북한의 수사기관 또한 국제적인 치안환경에 발맞추어 국제화, 정보화, 과학화로의 변모를 위해 상호 이해와 함께 교류·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통합을 위해 협력해가야 할 동반자이자, 아직도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인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북한자료 접근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기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미시적인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남북한 교류나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 연구자들에 의한 자료 수집은 제한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 북한 자료수집이 보다 용이한 정부당국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자료 확보와 공개로 연구자들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I. 북한문헌

#### 1. 단행본

-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6.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학보)』 제52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김정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2판,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미 상, 『형사소송법학학습참고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출판사 미상, 2004.6.29.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인민과학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1973.  
 『조선말대사전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06.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2. 논문 및 기타

-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9년 6월 30일”.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년 11월 2일) (서울: 돌베개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과업: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
- \_\_\_\_\_,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 \_\_\_\_\_,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 -창립 45돛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11.20.
-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학보)』 제52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 \_\_\_\_\_, “사회적교양처분에 대한 이해”(『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학보)』 제44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8.
- \_\_\_\_\_, “기소의 추가와 변경에 대한 이해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정치법률연구』 2005년 제2호), 2005.
- 심형일,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근로자』, 1985년 제11호 (통권 523호, 평양: 근로자사), 198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 <조선중앙방송>, 2009년 4월 14일자.
- <조선중앙통신>, 2009년 5월 15일자.

## II. 국내 문헌

### 1. 단행본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서울: 박영사, 1975.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리』, 서울: 법문사, 1997.
-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 서울: 집문당, 2004.
-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
- \_\_\_\_\_,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 \_\_\_\_\_,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 김재민 외, 『경찰수사론』, 용인: 경찰대학, 2008.
-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
-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서울: 박영사, 2004.
- 법무부, 『개정 북한형법 해설자료』, 서울: 법무부, 2002.
- \_\_\_\_\_,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서울: 법무부, 2004.7.
- \_\_\_\_\_,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서울: 법무부, 2005.
- \_\_\_\_\_,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서울: 법무부, 1996.
- \_\_\_\_\_,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 분석』, 과천: 법무부, 2003.
- \_\_\_\_\_, 『북한법연구(II)』, 서울: 법무부, 1985.
- \_\_\_\_\_, 『북한법연구(VII) -신형법-』 법무자료 제128집, 서울: 법무부, 1990.
- \_\_\_\_\_,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서울: 법무부, 1993.
- \_\_\_\_\_, 『소련법연구(V) -형법·형사소송법-』 (법무자료 제146집), 서울: 법무부, 1991.
-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편역,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 법무자료 제257집, 서울: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3.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 \_\_\_\_\_,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 법제처, 『북한법개요』, 서울: 법제처, 1991.
- 『북한법령용어사전(II)- 형사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9

-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서울: 북한연구소, 1992.
- 서승완, 『북한법령용어사전(Ⅱ) -형사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9.
- 서재진, 『북한인권백서 2003』,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4.
- 申東雲, 『刑事訴訟法 I (제2판)』, 서울: 法文社, 1997.
- \_\_\_\_\_, 『형사소송법(제4판)』, 서울: 법문사, 2007.
- 신현기 외,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7.
- 尹益洙, “北韓刑法의 反革命的 犯罪와 南韓의 國家 保安法上의 規定과의 比較考察”  
(『東北亞研究論叢』, 강릉: 關東大學校 東北亞平和研究所), 1995)
- 이덕구,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인천: 仁川大學校 平和統一研究所), 2001.
- 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2003.
- 李在祥, 『新刑事訴訟法(제2판)』, 서울: 博英社, 2008.
- 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장명봉(편),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 장명봉, 『북한법연구』 제11호, 북한법연구회, 2007.11.
- 최달근, 신영호 공저, 『북한법 입문』, 서울: 세창출판사, 1998.
- 통일교육원, 『2001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1.
- 통일부, 『북한법을 보는 방법』, 서울: 통일부, 2006.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통일부 통일정책국 정치사회분석과, 『2009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서울: 통일부, 2008.12.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Ⅰ) -기초 및 헌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255면).
- \_\_\_\_\_, 『한국법령용어사전(Ⅱ) -형사법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 9, 155면).
- 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 2. 논문 및 기타

-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역사비평』, 1994년 가을호), 1994.
- 국가정보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현황”(『북한동향』 2005.12.2-2006.1.13).
- <국민일보>, 2006년 7월 3일자.
-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연구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수원대박사학위 논문, 2003.
- \_\_\_\_\_,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 제15호, 용인: 경찰대학), 2007.
- 김일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1989.
- 김재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제4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서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김태석, “북한법의 본질과 역할”(『법학연구』 제17집, 서울: 정문사), 2004.
- \_\_\_\_\_,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박사학위논문, 1999.12.
- 김찬원, “중국경찰의 수사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6호,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2.12.
- \_\_\_\_\_, 중국경찰제도와 수사권에 관한 연구(경찰종합학교 교과논문집 제16집), 2001.1.
- 남궁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동아닷컴>, 2006년 1월 17일자.
- <동아일보>, 2009년 3월 31일자.
- <동아일보>, 1999년 6월 22일자.
-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5년 3월 18일자.
-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6년 4월 15일자.
- 류길재, “김일성·김정일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박세진,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2004.
- 朴永喆, “中國의 刑事訴訟節次와 檢察制度”(海外研修報告書), 울산: 蔚山地方檢察廳, 2006.7.5.
- 백원기, “북한 형사법체제에 관한 연구”(『북한·통일 연구논문집(V)』, 서울: 통일원), 1991.
- “북한 공개재판 판결문”,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5.3.18.
- 孫 燕, 중국경찰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서울: 한길사), 1997.
- \_\_\_\_\_, “북한 연구에 있어서 ‘내재적 방법’ 재론”(『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도서출판당대), 1995.
- 송영조, “북한 수사제도 연구”, 북한대학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신동운, “일제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적 기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法學』 제27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 신현호, “경찰수사권 독립의 범위”(『수사연구』 1992.11), 1992.
-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연합뉴스>, 2009년 5월 15일자.
- 오세인, “북한 형법체제의 특수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4.
- 尹益洙, “北韓刑法의 反革命的 犯罪와 南韓의 國家 保安法上의 規定과의 比較考察”(『東北亞研究論叢』, 강릉: 關東大學校 東北亞平和研究所), 1995.
- 이백규, “북한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북한법연구』 제8호,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 \_\_\_\_\_,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분단 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학술대회 자료집), 2005.
- 이덕구,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인천: 仁川大學校 平和統一研究所), 2001.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 정찬성,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논문, 1999.
- <조선일보> 2007년 4월 9일자.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 3.
- 최영택, “북한법이론과 지배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검토 -92년의 개정헌법을 중심으로-”(『서경대학교논문집』 제20권), 1992.
- <한국경제>, 2001년 1월 6일자.
- 韓寅燮,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 한증섭, “러시아경찰, 러시아의 범죄현황”(『경찰학연구』 제9호), 2005.
- \_\_\_\_\_, 「러시아연방헌법」(모스크바국립대학 법학부 형사법전공), 2005.
- \_\_\_\_\_, 「러시아연방 경찰법」(모스크바국립대학 법학부 형사법전공), 2005.

### III. 외국 문헌

- 公安教材編審委員會 <刑事案件偵察>編寫組, 『刑事案件偵察上·下』,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5.7.
- 公安大學教材編審委 編著, 『豫審業務教程』,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4.7.
- 嚴勵 외 2인 편저, 『中國公安業務全書』,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6.
- <豫審學概要>編寫組, 豫審學概要, 北京: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1993.
- Michael J. Palmiotto, Criminal Investigation, Nelson-Hall Publishers. 1994, p.2.
- Paul B. Weston & Kenneth M, Wells, Criminal Investigation,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6, p.1.

## 【부 록】

###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
- 1954. 6. 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차 개정)
- 1954. 12.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2차 개정)
- 1978. 1.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제3차 개정)
- 1992. 1.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제4차 개정)
- 1995. 4.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9호로 수정·보충(제5차 개정)
- 1996. 1. 1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7호로 수정·보충(제6차 개정)
- 1997. 9.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5호로 수정·보충(제7차 개정)
- 1999. 9.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996호로 수정·보충(제8차 개정)
- 2004. 5.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제9차 개정)
- 2005. 7.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제10차 개정)

####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 제 1 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
- 제 2 조(계급로선의 관찰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으로 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 제 3 조(균중로선의 관찰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 제 4 조(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 5 조(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 제 6 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 7 조(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말로 하도록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자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 제 8 조(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 제 2 장 일 반 규 정

**제 1 절 형사소송관계자**

제 9 조(형사소송관계자)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제 10 조(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 12 조(기소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 13 조(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 14 조(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 15 조(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같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 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절 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자**

제 16 조(리해관계에 따라 참가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7 조(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취급한 형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으로 될 수 없다.

제 18 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7조의 요구를 어기어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 수 없다.

제 19 조(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 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감시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 수 없다.

제 20 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 수 있다.

제 21 조(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 22 조(증인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 23 조(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 24 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시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하려는 자는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수사, 예심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형사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것을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한다.

제 27 조(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중지하고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 28 조(형사사건취급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 29 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은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이나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이 있을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 30 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기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 31 조(범죄에 대한 신고 및 증거보존의무)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곧 인민보안, 경찰,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하고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32 조(범죄의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글로 써낸다. 말로도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33 조(범죄의 신고접수방법)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접수자는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거짓신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34 조(범죄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이송) 인민보안, 경찰, 안전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자료는 곧 해당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35 조(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와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 36 조(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인민보안, 경찰, 재판, 안전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하여야 한다.

### 제4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 37 조(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예심원, 검사, 제1심재판소는 공모하여 범조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야 한다.

제 38 조(공모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한 기관에

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공모사건은 상급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사민이 군인과 공모하여 군사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사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철도종업원과 일반사민이 공모하여 철도운수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철도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 39 조(단독범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 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군사, 철도부문 법기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상급법기관 또는 군사, 철도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 40 조(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 41 조(형사사건 분리사유) 예심원, 검사, 제1심재판소는 공모하여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으로 앓고 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 수 없거나 관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 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

제 42 조(형사사건 분리절차) 공모하여 저지른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 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53조에 따른다.

#### 제 5 절 형사소송의 중지

제 43 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 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사협의회가 한다.

제 44 조(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 45 조(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법 제46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곧 알린다.

제 46 조(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특별격리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일반격리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 자에 대한 지역의료처분

제 47 조(의료처분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48 조(의료처분 받은 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 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병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증거를 없애거나 그에 공모하는 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9 조(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 50 조(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51 조(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한 경우 의료처분 받은 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결정내용과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52 조(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형사사건 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 제 6 절 형사사건의 기각

제 53 조(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 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제 54 조(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공모하여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자에게 이 법 제53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 55 조(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5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검사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4.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 56 조(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신고자, 피해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57 조(형사사건기각과 특별격리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이 법 제46조 1호에 따라 특별격리의료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 58 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어 있는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곧 놓아준다. 이 경우 증거물처리는 이 법 제105조에 따른다.

제 59 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형사사건을 기각한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앞 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기각결정서, 판결서, 판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 60 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 61 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제 7 절 사회적교양처분**

제 62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63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절차)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결, 판정을 할 수 있다.

제 64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의 처리)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곧 놓아준다.

제 65 조(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105조와 제349조에 따른다.

제 66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제 67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제 68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한다.

제 69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68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 8 절 손해보상**

제 70 조(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1 조(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72 조(손해보상 책임있는 자) 손해보상 책임있는 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 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책임을 질 자가 된다.

제 73 조(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 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 74 조(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 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 75 조(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과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6 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의 심리는 재판심리에서 함께 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판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

제 77 조(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그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8 조(손해보상청구와 수수료) 범죄로 인한 손해보상청구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제 79 조(손해보상금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손해보상 책임있는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해당 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 9 절 형사소송문건

제 80 조(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는 문건화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 81 조(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결서, 판정서 같은 것이 속한다.

제 82 조(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여한 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삭제, 보충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 83 조(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어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다.

### 제 10 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제 84 조(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 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 달 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 85 조(형사소송문건의 효력기간) 상소장, 항의서, 결정서 같은 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어줄 수 있다.

제 86 조(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 수 있다.

제 87 조(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 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 또는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그를 부른 기관에서 로력 보수와 려비를 부담한다.

## 제 3 장 증 거

제 88 조(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어야 사건 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

제 89 조(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 90 조(증거물) 증거물로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썼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의 대상으로 된

- 물건 같은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 확정,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물건이 된다.
- 제 91 조(증거문서) 증거문서로는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된다.
- 제 92 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 제 93 조(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 수 있다.
- 제 94 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수집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의 제출과 수색, 압수, 검증, 검진, 심리실험, 식별 같은 형사소송행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 95 조(증거의 고착) 수집한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녹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 제 96 조(증거의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 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 97 조(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 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 98 조(피심자, 피소자 진술의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제 99 조(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로 등록, 고착시킨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시킨다.
- 제 100 조(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 제 101 조(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의 보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현금, 귀금속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 제 102 조(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증거물과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은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준다.
- 제 103 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씌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 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 제 104 조(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5 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증거물을 몰수하며 그밖의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판결서, 판정서, 사건기각결정서, 사회교양처분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장 변호

제 106 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 107 조(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8 조(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할 수 있다.

제 109 조(변호인의 선정권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 110 조(변호인의 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제 111 조(재판소의 변호인 선정권) 재판소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를 기소하였을 경우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112 조(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려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3 조(변호인의 선정신청)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재판소에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재판소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3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 제111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려는 재판소는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을 선임할데 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 114 조(변호인의 선정통지) 변호인의 선정신청이나 선임의뢰를 받은 자 또는 변호사회는 그 동의 여부에 대하여 3일 안으로 해당 예심원, 재판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변호인의 선정, 선임동의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재판소는 곧 변호인의 선정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5 조(변호인의 재선정)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인의 선정신청, 선임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재판소가 변호인의 선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의 재선정은 이 법 제113조에 따른다.

제 116 조(사선변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 117 조(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또는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제 118 조(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 변호인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119 조(변호인의 증거수집)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인할 수 있다.

제 120 조(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있다.

제 121 조(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

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장 관 할

- 제 122 조(수사관할)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한다.
- 제 123 조(특별수사기관의 관할)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이 한다.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이 한다.
- 제 124 조(예심관할)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밑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 제 125 조(특별예심기관의 관할)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철도부문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 제 126 조(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 제 127 조(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고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 제 128 조(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 제 129 조(중앙재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 제 130 조(지역관할) 재판소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다.
- 제 131 조(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관할에 속한 사건의 재판관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재판은 그 사건심리를 먼저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
- 제 132 조(관할이 다른 사건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소자 또는 관할이 다른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 제 133 조(관할분쟁의 금지)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범죄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범죄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겨준다.

## 제6장 수 사

제 134 조(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이다.

제 135 조(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 136 조(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7 조(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8 조(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앞 항의 행위는 이 법 제7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 139 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

제 140 조(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제 141 조(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집할 수 있다.

제 142 조(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어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143 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 144 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3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 145 조(구금하지 않은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날자, 사유 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구금된 자에게 이 법 제43조의 사유가 나타날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제5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146 조(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 147 조(수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제 7 장 예 심

### 제 1 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 148 조(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제 149 조(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원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과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는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 150 조(반복조사의 금지)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검토확인하는 경우 그대로 쓸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 확증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

제 151 조(예심의 기간)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 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 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 152 조(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1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8조 1,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1조 2항에 지적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53 조(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을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어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154 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

제 155 조(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하여야 한다.

제 156 조(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을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을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제 2 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 157 조(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다른 범죄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58 조(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일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할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이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59 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 160 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결정서등본을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 161 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곧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제 3 절 피심자의 심문

제 162 조(피심자의 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제 163 조(피심자의 심문시간) 피심자의 심문은 8시~20시 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 항에 규정된 시간 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밀에 한다.

제 164 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 165 조(피심자의 호송) 구류한 피심자의 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 166 조(피심자의 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경찰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제 167 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8 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연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 169 조(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70 조(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1 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제 172 조(피심자심문의 립회)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 수 있다.

제 173 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병어리, 귀머거리피심자의 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병어리, 귀머거리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 174 조 (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예심원은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 175 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의 심문을 끝내면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아야 한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 제 4 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 176 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예심원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77 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어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 178 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79 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 180 조(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제 181 조(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82 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증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 183 조(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

제 184 조(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 185 조(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 186 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 187 조(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제 188 조(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1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감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감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중앙감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1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까지 늘일 수 있다.

제 189 조(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 190 조(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하여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 191 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 제5절 검 증

제 192 조 (검증, 검진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제 193 조(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진

제 194 조(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 수 있다.

제 195 조(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수 없을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196 조(검진결정서의 작성) 사람을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검진결정서에는 검진대상자와 검진리유 같은 것을 밝힌다.

제 197 조(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 수 있다.

제 198 조(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맡은 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를 검진을 받을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199 조(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여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여성을 시킨다.

제 200 조(검증, 검진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진말감결정서를 만든다.

제 201 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가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 202 조(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를 검토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제 203 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는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 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 204 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 수 없다.

제 205 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제 6 절 감 정**

제 206 조(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겨야 한다. 비정상적인 주경,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제 207 조(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 것이 속한다.

제 208 조(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 209 조(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말감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이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감정말감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힌다.

제 210 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 211 조(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2 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3 조(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214 조(감정인의 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이 법 제233조, 제234조에 따른다.

제 215 조(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 제 7 절 수색과 압수

제 216 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 217 조(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8 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219 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 220 조(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 221 조(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체신기관에서 관리하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수색,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 222 조(외교적 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 223 조(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 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 224 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 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 제 8 절 증인의 심문

제 225 조(증인의 자격)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제 226 조(증인의 심문장소) 증인의 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 227 조(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구인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 228 조(증인의 의무)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229 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0 조(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병어리, 귀머거리증인의 심문) 조선말을 모르는 자, 병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3조에 따른다.

제 231 조(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의 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

인의 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연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2 조(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의 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 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 233 조(증인의 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234 조(증인신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4조, 제175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 9 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 235 조(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 236 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7 조(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8 조(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 239 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4조, 제175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 240 조(식별심문의 방법)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 241 조(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42 조(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 243 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 10 절 재산담보처분**

제 244 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이 법에 따라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제 245 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몰수형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 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제 246 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 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47 조(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양만큼 한다.

제 248 조(재산담보처분의 절차)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249 조(재산담보처분의 방법)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 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 250 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251 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252 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 253 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 제 11 절 예심의 종결

제 254 조(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제 255 조(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 256 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수속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 257 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258 조(사건기록과 증거물의 이송)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9 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260 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의 처리) 예심원은 이 법 제259조 제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 제 8 장 기 소

제 261 조(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제 262 조(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3일 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 263 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까지이다. 그러나 로동 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3일까지이다.

제 264 조(범죄의 사건기록검토내용) 범죄의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 265 조(피심자의 기소) 검사는 예심을 충분하고 옳게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

제 266 조(기소장의 작성)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조항과 기소할 재판소를 밝혀야 한다.

제 267 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와 구속되어 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 268 조(예심의 반송)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것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제 269 조(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 제9장 제1심 재판

### 제 1 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 270 조(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법에 따라 재판관계자의 참가밑에 범죄사건을 심리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제 271 조(재판의 공개)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 272 조(재판의 독자성 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273 조(확정사실의 인정)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 274 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은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 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제1심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 275 조(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 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 재판소 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 276 조(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 277 조(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 278 조(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 279 조(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0 조(재판정의 좌석배치) 재판소성원은 재판정의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은 서로 마주한 자리를 차지한다. 재판서기는 재판소성원의 옆에, 피소자는 재판소성원과 마주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 281 조(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류하여 재판한다. 피소자의 구인 또는 구류절차는 이 법 제164조, 제182조~제185조에 따른다.

제 282 조(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까지이다. 그러나 로동 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5일까지이다.

제 283 조(재판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재판정에서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제 284 조(피소자의 의무) 재판심리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장의 승인없이 재판정에서 떠날 수 없다.

제 285 조(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286 조(현지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

제 287 조(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내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88 조(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재판준비

제 289 조(재판준비의 담당자)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는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재판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 290 조(사건기록의 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6.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피심자의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291 조(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판사는 현지에서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 제 292 조(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어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긴다.
- 제 293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 재판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 제 294 조(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사건이송 판정을 한다.
- 제 295 조(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할 경우에는 재판일자,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겠는가를 정한다.
- 제 296 조(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293조, 제294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보내야 한다.
- 제 297 조(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2조에 따른다.
- 제 298 조(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 제 299 조(재판심리날자의 통지)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야 한다. 증인,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 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7조에 따른다.
- 제 300 조(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만이 해결한다. 재판심리가 있기 전에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준비를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 제 3 절 재판심리

- 제 301 조(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 제 302 조(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정형과 체포(구류)날자를 묻고 재판에서 그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 제 303 조(재판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피소자와 재판관계자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 제 304 조(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소환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피소자와 재판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 판정을 한다.
- 제 305 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이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검사가 기소장을 읽는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가 기소장을 읽는다.
- 제 306 조(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 제 307 조(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재판정에 알린다.
- 제 308 조(피소자의 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

- 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 제 309 조(피소자의 개별심문)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범죄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소자를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 제 310 조(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의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한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 제 311 조(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 제 312 조(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 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 항에 지적된 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 제 313 조(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의 심문절차는 이 법 제232조에 따른다.
- 제 314 조(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판소를 떠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재판소에서 내보낼 수 있다.
- 제 315 조(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 수 있다.
- 제 316 조(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은 감정을 시킬 경우에만 사실심리에 참가시킨다. 필요에 따라 감정인을 처음부터 사실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제 317 조(감정의뢰와 감정인의 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의 심문절차는 이 법 제213조, 제214조에 따른다. 감정인에게는 감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다.
- 제 318 조(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 수 있다.
- 제 319 조(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조사검토할 수 있다.
- 제 320 조(예심조서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 제 321 조(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 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제 322 조(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중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 제 323 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 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 제 324 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

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 325 조(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326 조(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조항의 형벌을 적용할 것을 제기한다.

제 327 조(변론의 내용) 변론은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목적, 위험성정도, 피소자의 개선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 328 조(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29 조(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330 조(피소자의 마지막 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는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 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 331 조(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제 332 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 4 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 333 조(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 밖에 피소자에게 형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형벌을 무겁게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 334 조(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제1심재판의 준비에서 한다. 재판심리에서도 기소의 추가를 할 수 있다.

제 335 조(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발견한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사건반송판정서에 지적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돌려보내며 범죄는 밝혀져 있으나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재판심리를 계속한다.

제 336 조(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 337 조(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제1심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심리에서

도 기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 338 조(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 수 있다.

제 339 조(새 범죄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수사 또는 예심에 넘기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다른 제재를 주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 수 있다.

### 제5절 판결

제 340 조(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 341 조(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 342 조(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의 채택은 재판소 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 판정을 할 때 읽지 않는다.

제 343 조(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으로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 344 조(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 345 조(사회적으로양에 넘기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으로양처분을 하는 판결을 한다.

제 346 조(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가 없었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 347 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 348 조(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어 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으로양처분을 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곧 놓아준다. 중앙검찰소 소장과 중앙재판소 소장은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제외한 앞 항의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49 조(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105조에 따른다.

제 350 조(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51 조(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 352 조(사건반송의 금지)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 수 없다.

제 353 조(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에게 범죄가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 354 조(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 355 조(재판조서작성기간과 조서의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재판조서 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수정, 삭제, 보충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 356 조(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가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 357 조(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제 358 조(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경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경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 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경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 중앙경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경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경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59 조(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 360 조(집행의 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361 조(상소의 제기 및 수속)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곧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 항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어줄 수 있다.

제 362 조(항의의 제기 및 수속)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곧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내야 한다. 항의서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63 조(판결, 판정의 확정) 판결, 판정이 확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 제 10 장 제2심재판

제 364 조(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제 365 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 366 조(제2심재판의 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심리 해결하여야 한다.

제 367 조(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 368 조(사건기록의 발송,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1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제 369 조(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370 조(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검토한다.

제 371 조(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 이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 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 372 조(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실에서 협의한다.

제 373 조(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조항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 374 조(판정의 채택)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은 재판정에서 그것을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도 참가한다.

- 제 375 조(제1심 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 제 376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조항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이 경우 범죄사건을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것을 지적한다.
- 제 377 조(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 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 제 378 조(범죄사건의 기각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 제 379 조(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재판소가 적용한 형법의 조항보다 가벼운 조항으로 고치는 경우
  2. 제1심재판소에서 정한 형벌보다 형벌을 가볍게 고치는 경우
  3. 제1심재판소에서 부가형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 제 380 조(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제 381 조(불리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 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항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 수 있다.
- 제 382 조(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제 383 조(재판결과와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 제 11 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 제 1 절 비상상소심

- 제 384 조(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 제 385 조(비상상소심 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 제 386 조(비상상소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심리 해결하여야 한다.
- 제 387 조(판사회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판사회의 판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회의에 참석한 성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한다.
- 제 388 조(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 389 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390 조(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 391 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긋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났을 경우에 한다.

제 392 조(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한 형벌이 낮다는 이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높이 주어야 할 형벌에 해당하는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93 조(비상상소의 제기신청)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394 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 395 조(판결, 판정, 집행의 정지)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 396 조(비상상소의 제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 397 조(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 398 조(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 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 399 조(비상상소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 400조(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375조~제379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 401 조(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 402 조(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 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 제 2 절 재 심

제 403 조(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범죄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제 404 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 405 조(재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심리해결 하여야 한다.

제 406 조(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 407 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408 조(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 수 있다.

제 409 조(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 410 조(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제기의 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 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 자료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재심제기를 검사가 할 경우에도 앞 항에 따른다.

제 411 조(판결, 판정 집행의 정지엄금)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중앙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412 조(재심의 제기와 거부)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 413 조(재심기일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 414 조(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범죄를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리해결한다.

제 415 조(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 416 조(재심사건의 처리) 중앙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예심원에게 돌려보내어 다시 예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판정을 한다.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48시간 안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 417 조(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 418 조(재심결과와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 제 12 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 419 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제 420 조(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421 조(판결, 판정집행의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 422 조(사형의 집행기관)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해당 재판소가 발급한다.

제 423 조(사형집행결과와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 424 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판결, 판정확정통지서를 보내어 한다.

제 425 조(형기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 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고 있는 자가 형벌집행기관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 기간으로 계산한다.

제 426 조(선거권박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 (구역)군인민위원회가 한다.

제 427 조(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 428 조(재산물수형의 집행) 재산물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재산물수목록은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 자에게는 재산물수목록등본을 준다.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 429 조(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제 430 조(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물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 431 조(형벌집행의 정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형벌집행을 정지받은 자의 관리는 이 법 제43조 ~ 제52조에 따른다.

제 432 조(만기전석방의 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만기전에 석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 유기로동교화형과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한다.

제 433 조(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의감정을 한다.

제 434 조(형벌집행의 정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집행을 정지,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한다. 검찰소 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435 조(형벌집행의 정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집행을 정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 것은 해당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 436 조(형벌집행정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의 형벌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정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437 조(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정지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정지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다.

제 438 조(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439 조(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2호로 채택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사회안전단속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
- 제2조 온 사회에 혁명적 질서를 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광범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 제3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유해로운 행위이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 단속을 강화하여 온갖 위법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4조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옹 계 결합시키도록 한다.
- 제6조 사회안전단속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국가는 사회안전기관이 사회안 전단속에서 세도를 쓰거나 직권을 랑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 이 법은 사회안전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지시키며 형사범을 제외한 범위 반자를 조사, 처리하는데 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절차를 규제한다.

### 제2장 사회안전단속대상

- 제8조 사회안전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안전단속사업의 첫공정이다. 사회안전기관은 사회질 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 제9조 사회안전기관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0조 사회안전기관은 설비와 원료, 자재, 생산물을 되는데로 관리하여 못쓰 게 만들거나 그것을 류 용, 량비, 비법처분하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위법행 위와 관련이 없는 경제조직사업에는 간섭할 수 없다.
- 제11조 사회안전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수매가격을 어 기는것 같은 상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2조 사회안전기관은 외화벌이기지가 없이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를 팔고 사는것 같은 외화벌이, 외화관리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3조 사회안전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거나 정해진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로동행정질서를 어기는 행 위를 단속한다.
- 제14조 사회안전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 록음물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그것을 만들거나 복사, 류포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 제15조 사회안전기관은 패싸움, 불량자적 행위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 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사회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 속한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속은 할수없다.
- 제16조 사회안전기관은 비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 위를 단속한다.
- 제17조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 한다.

- 제18조 사회안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와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 질서를 어기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19조 사회안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0조 사회안전기관은 공민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1조 사회안전기관은 른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른전기재를 운전하는 것 같은 교통안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2조 사회안전기관은 승인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막거나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3조 사회안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를 막기위한 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4조 사회안전기관은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 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5조 사회안전기관은 내압설비와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루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6조 사회안전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7조 사회안전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토지를 람용하는 행위, 산림을 람도 벌하는 행위,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 같은 국토관리, 환경보호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 제28조 사회안전기관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공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 제3장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

- 제29조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어기는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바로할 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사회안전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30조 사회안전원은 범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위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분이나 범위반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자의 증인에게 다른 장소 또는 사회안전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인은 사회안전원의 요구에 응하며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 제31조 사회안전원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 록화할 수 있다. 녹음, 록화한 범위반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사건 취급과 처리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제32조 사회안전원은 범위반자를 단속한 경우 24시간안으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를 범위반자와 증인의 자필로 받을 수 있다. 조서에는 작성자와 진술자, 립회인, 해석인, 통역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 제33조 사회안전원은 범위반행위가 엄중하거나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범위반자를 한 장소에서 한번에 여러명 단속하였을 경우 억류할 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트랙도르, 배를 비롯한 운수수단도 억류할 수 있다. 범위반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안으로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억류된자에게 로동을 시킬 수 없으며 억류된 운수수단은 리용할 수 없다.
- 제34조 범위반자의 억류기간은 3일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사회안전원은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사회안전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같은 사회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투기술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사회안전원은 위법행위로 단속된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 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3.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과학기술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 사회안전원은 사회안전단속에 군중을 인입할 수 있으며 도주하는 범위 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이 가지고있는 운수수단, 기술기재를 리용할 수 있다.

#### 제4장 범위반자의 처리

제38조 범위반자의 처리는 범위반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안전기관은 범위반자의 개준성과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범위반자의 처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범위반자를 단속한 사회안전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범위반자의 처리는 각종 조서와 증거물, 해당 증명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41조 범위반자의 처리기간은 단속한 때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42조 범위반자를 단속한 사회안전기관은 그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범위반자가 사는 지역이나 일하는 직장을 관할하는 사회 안전기관에 그를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범위반조서와 증거물 같은 것 을 함께 넘겨야 한다.

제43조 사회안전기관은 위법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범위반자의 보호자나 그 의 교양을 책임진자로부터 해당한 담보를 받고 교양처리할 수 있다.

제44조 사회안전기관은 해당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에 대책적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대책적 의견에는 범위반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그것 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위법행위에 리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있다.

제46조 위법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우거나 해당 기관에 넘긴다.

### <부록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5호로 채택  
1997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8호로 수정보충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 제1조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이다. 검찰감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급 검찰기관이 한다.
- 제2조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제3조 검찰기관은 공화국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대상에 게 차별이나 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감시 활동을 조직 진행한다.
- 제4조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
- 제5조 검찰기관은 감시결과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6조 검찰감시는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 제2장 감사의 감시임무

- 제7조 감사는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이다. 감사는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모조리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야 한다.
- 제8조 감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9조 감사는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
- 제10조 감사는 수사, 예심 기관이 수사, 예심 활동을 바로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감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감사는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감사는 재정, 설비, 물자, 품질 감독기관을 비롯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이 검열, 단속, 통제와 처리 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감사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감사는 공민이 헌법적 의무와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감사는 법해설을 비롯한 준법교양사업을 적극 벌려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아야 한다.

#### 제3장 검찰감시관할

- 제17조 시(구역), 군 검찰소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특별검찰소의 감시관할에 속하지 않는 자기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개별적인 수사,

- 예심 활동, 재산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해당 지역의 시(구역), 군 검찰소가 한다.
- 제18조 도(직할시)검찰소는 도(직할시)급기관과 도(직할시)안의 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 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다.
- 제19조 중앙검찰소는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그에 직속된 기관, 기업소가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 감시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직접 감시할 수 있다.
- 제20조 특별검찰소의 감시관할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21조 개별적 공민이 국가의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할지역의 시(구역), 군 검찰소가 조사한다.

#### 제4장 검찰감시방법

- 제22조 검찰기관의 감시방법은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이 법에 따라 한다.
- 제23조 행정경제감시는 담당감시와 집중감시를 융게 배합하여 법준수집행정형을 늘려 해장악하고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방법으로 한다.
- 제24조 기관에서 채택한 결정, 지시에 대한 감시는 해당기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5조 수사, 예심 활동에 대한 감시는 사건별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예심 활동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 제26조 재판, 중재에 대한 감시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판사, 중재원은 사건심리날자를 정한 기일안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 중재 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재판소의 판결, 판정과 중재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기록을 요구하여 볼 수 있다.
- 제27조 확정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직접 집행에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 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해당 문건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8조 검찰감시과정에 범죄와 위법 행위를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조서를 만들 수 있다.
-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안으로 정확히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적 또는 민사소송, 중재 절차로 처리할 자료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준다.
- 제30조 검찰감시를 신속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공민에게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설명과 문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회의에 참가하거나 회의록을 볼 수 있다.
- 제31조 범죄와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받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 또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 일군에게 감정을 시키거나 필요한 전문일군과 기자재를 동원할 수 있다.
- 제32조 범죄사건에 관련되어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따라 부르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 구인결정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보내어 집행한다. 범죄형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확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0일까지 억류할 수 있다.
- 제33조 검찰감시과정에 범죄 및 위법 행위를 제때에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방법에 따라 검증, 검진, 수색, 압수, 재산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수색, 압수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 제34조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사는 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일반범죄사건일 경우 그것을 예 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반국가범죄사건은 해당 예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36조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항의할 수 있으며 중앙검찰소 소장은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에서 내린 재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중재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검사는 침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에서 감시과정에 적발한 범죄자료가 특별검찰소감시관할에 속한 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하여 특별검찰소에 넘겨야 한다.

제40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

1. 수사, 예심 기관의 부당한 수사, 예심 시작결정 또는 수색, 압수 행위를 취소하거나 수사, 예심 사건을 기각시키려 할 경우
2. 수사일군 또는 예심원을 바꾸거나 침해된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려 할 경우
3.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자를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

제41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지시를 한다.

1. 뒤로 미룰 수 없는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고치게 하려 할 경우
2. 위법적인 수사, 예심 행위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수사, 예심 행위를 하게 하려 할 경우
3. 체포장이 없이 체포되었거나 갇혀있는 사람을 놓아주려 할 경우

제42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의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의를 한다.

1. 법에 어긋나는 기관의 결정,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시켜야 할 경우
2. 위법행위를 낳게 한 조건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3. 침해당한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시키거나 동원 리용하려 할 경우 또는 국가에 회수시켜야 할 경우
4. 법을 어긴 일군에게 벌금을 물리게 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준 재산 상 손실을 보상시켜야 할 경우

제43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는 해당 검찰소의 이름으로 낸다.

제44조 검사의 결정, 지시, 제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공민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상급검찰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20일안으로 심 의해결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견처리와 관련한 중앙검찰소의 결정은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검사는 결정, 지시, 제의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공민이 제때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조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부록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 국가는 변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3조 변호사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당과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한다.
- 제4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송 및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데서 자기를 방조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도 변호사의 법률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은 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 제6조 국가는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 제7조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8조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

###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 제9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형사사건기록을 볼 수 있으며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다.
  2. 종인, 감정인과 담화할 수 있다.
  3. 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하며 증거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에 앞서 재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변호에 필요한 증거문서,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의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6. 말은 사건의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를 심리하는 제2심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0조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석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제12조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위임에 따르는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법률고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청에 따르는 법률상당과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 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제15조 변호사는 직무집행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16조 변호사는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

는다.

제17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의 위임절차,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 대리권의 소멸과 같은 것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8조 변호사는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 또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변호할 수 있다.

제19조 변호사는 법률상 방조를 신청하는 자가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3장 변호사자격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로 될 수 있다.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2. 법무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21조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법학학위, 학직 소유자는 겸직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제22조 변호사자격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변호사자격심사는 따라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나라 변호사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다. 공화국변호사자격을 가진 다른 나라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다른 나라 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24조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변호사자격 박탈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 제4장 변호사보수

제25조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는다.

1.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3.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을 작성, 심의하였을 경우

제26조 변호사 보수기준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7조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 제5장 변호사 조직

제28조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제29조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들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와 해당 부문들에 조직된 위원회 밑에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30조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한다.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한다.
4. 아래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한다.

5. 변호사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

제31조 조선 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지 위한 사업을 한다.

## <부록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 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를 둔다.

제4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선거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제5조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6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판사로 될 수 없다.

제7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8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제9조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0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 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2조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 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에서 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 이 참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17조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회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 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도(직할시)재판소와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는 아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 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 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책임연구보고서 2009-08

##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